



복간사 민주변론을 다시 시작하며 · 백승헌 회장 _2 **칼럼** 경계(境界)에서 말한다 · 박성호 회원(한양대 법대) _2 **초점** 촛불은 말한다 1.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법리적 검토 · 김갑배 회원 _2 / 국민소송 참가 시민들이 아고라에 남긴 글 중에서 _2 / 2. 촛불과 함께 한 민변-인권침해감시단 · 설창일 회원 _2 / 촛불들의 응원메시지 _2 **시론** 변혁의 존재이유 · 류재성 회원 _2 **연재** 한국 현대법자료 산책(5) ·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대) _2 **민변의 활동** 1. 월례회:6월 거리월례회-촛불집회 1달 '집단지성을 말하다' _2 / 2. 공부모임: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그리고 숨겨진 치매' -콤 캘러허(Colm A. Kelleher) _2 / 3. 참관가: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참가기 · 장영석 회원 _2 **지부이야기** 1. 지부동정 가. 부산지부 · 이철원 회원 _2 / 나. 대전충청지부 _2 / 다. 전남광주지부 _2 / 라.대구경북지부 _2 / 2. 우리 한마당:민변 20주년, 행복충전소 1년 · 김상훈 회원 _2 **회원동정** _2 **성명서/보도자료** _2



복간사

민주변론을 다시 시작하며

재탄생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론은
과거보다 나아진 모습이어야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임이 과거보다 더욱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간을 결정하였다 것은 모임이
더 나은 활동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론을 복간합니다 지난 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의 휴간을 결정할 때 많은 망설임이 있었고, 여러 차례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결국 많은 주저함이 있었지만 휴간을 결정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방법을 통하여 회원들과 소통할 수 있음을 기대하였고 절약되는 수고와 예산을 좀더 유용한 곳에 사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잠정적인 휴간 후에 다시 평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휴간 기간 동안 민주사회를위한변론을 받아보지 못하는 회원들의 아쉬움을 수없이 들어야 하였고 새로운 통신방법을 통한 소통만으로는 고전적인 종이매체가 가지는 장점을 온전히 대신하기 힘들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모임의 활동 내용과 자료의 공유, 토론 등 기관지 고유의 특성은 다른 통신방법을 통하여 확장,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지 선불리 대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열독율의 문제는 민주사회를위한변론이 가지는 종이매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를위한변론의 내용과 그 내용을 채우는 모임의 활동성이라는 당연한 결론을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번 새로운 집행부는 휴간과 인터넷 통신만을 이용한 대체실험을 끝맺고 다시 종이매체로서 민주사회를위한변론을 복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간을 결정하는 것은 휴간을 결정하기보다 더 힘든 것이었습니다. 복간을 하면 이제는 다시 휴간을 하는 등의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탄생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론은 과거보다 나아진 모습이어야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임이 과거보다 더욱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간을 결정하였다 것은 모임이 더 나은 활동을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라고 생각합니다.

휴간 기간동안 모임을 둘러싼 현실은 매우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촛불집회 과정을 통하여 민변은 이제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존재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민변의 은둔성(?), 폐쇄성을 질타하는 시민들이 민변에게 자신들과 소통할 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하여 모임은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작업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복간되는 민주사회를위한변론 역시 단순히 회원들이나 관련 단체의 구성원들만이 둘러보는 잡지로 머물러서는 안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론의 구성이나 내용 그리고 편집방향의 진보가 요구되는 지점이고 꾸준히 변화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복간의 첫걸음부터 이러한 목표가 충분히 실현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회원여러분이 같이 하신다면 회를 거듭하면서 목표는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와 활동가 그리고 시민이 같이 보고 공감하는 잡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회원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복간을 위하여 수고하신 편집회의 구성원들과 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글 백승현 회장

휴간 기간 동안 민주사회를위한변론을 받아보지 못하는 회원들의 아쉬움을 수없이 들어야 하였고 새로운 통신방법을 통한 소통만으로는 고전적인 종이매체가 가지는 장점을 온전히 대신하기 힘들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쇠고기 부실 협상으로 초래된 '춧불정국' 속을 통과하는 중이다. 이 정국의 한 복판에서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전근대의 퇴행적 유습과 독재의 망령이 곳곳에 남아 출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대의제의 한계를 정면에서 거론하는 포스트 모던적 정치이론과 같이 탈근대적 관점이 뒤섞여 공존하기도 한다. 요즘처럼 우리 사회에 내재된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뼈저리게 실감한 적도 없다.

전근대와 근대, 그리고 탈근대가 기이하게 만나 동거하는 '세계체제'의 변방, 그 경계에 서서 마르크스의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을 펼쳐본다. 그 첫 머리는 이렇게 시작된다. “헤겔은 어느 부분에선가 세계사에서 막대한 중요성을 지닌 모든 사건과 인물들은 말하자면 두 번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는 한 번은 비극으로, 다음 번은 희극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이는 것을 잊었다.”(임지현·이중훈 옮김, 『프랑스 혁명사 3부작』, 소나무)

위 문장은 너무도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기회에 자주 인용하는 대목이다. 우습지 않게도 작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던 박형준 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조차 이회창 씨의 대선 출마를 과거 이인제 씨의 경선 불복 출마에 빗대 비판하면서 위 구절을 인용한 적이 있을 정도다. 하긴 그는 과거 제법 진보성을 띠던 사회학자 출신이니 그럴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그의 인용이 레토릭 차원에서 그럴 듯하게 들렸는지 몰라도, 마르크스의 말마따나 “이와 같이 피상적으로 역사적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그 핵심을 잊어버리는 처사이다.”(브뤼메르 18일)의 핵심은, 거칠게 말하자면 국민적 이해(利害)가 왜곡되거나 무시되는 정황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당시 프랑스 국민들 머리 속에 파리 틀고 있던 허위의식(소위

나폴레옹 환상)이었다는 점을 풍자적으로 비판하는 데 있었다. 온건하게 표현하자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논리적 모순을 설파한 글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브뤼메르 18일〉이 우리에게 유의미한 것은 그 표현의 수사(修辭)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이 언제나 눈을 부릅뜨고 깨어있어야 하고 늘 스스로를 비판하고 거듭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있다.

경계에서 말하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떤 형식으로든지 국민 여론이 일상적으로 무시되는 퇴행적 정치체제의 그늘 속으로 내몰릴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민의를 배반하는 대의제의 모순에 일상적으로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미간 쇠고기 협상의 졸속 타결 이후 전개된 춧불 정국의 핵심도 따지고 보면 간단명료한 것이다. 현 정부는 앞뒤 재지 않고 마치 공기(工期)를 정해둔 토목공사 강행하듯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했다. 그 결과 과거 우리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 문제를 방패삼아 미국에 맞서온 온갖 수입조건들이 대폭 양보되거나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이쯤 되면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닥쳐올 건강의 위기에 대해 모종의 불안감을 가졌을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협상의 내막과 진상마저 제대로 알리는 데 소홀히 했다. 게다가 일부 보수 신문들은 작년 이즈음 자신들이 펼쳤던 논조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면서 광우병 우려를 축소·은폐하였다.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대의민주주의 시스템 아래에서라면, 이 단계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정파적 이해를 떠나 주권자인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씻어주기 위해 발 벗고 나섰을 법하다. 또한 정부의 졸속 협상을 비판하고 그 진상을 파헤치고 알리는 데 힘을 모았을 듯하다. 게다가 언필칭 ‘민족지’를 표방하는 신문들이라면 아무리 미 정부 당국자가 “미국 소는 안전하니 마음 놓고 드시라”고 강변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일말의 우려도 놓치지 않고 심층 보도하는 것이 ‘정론지’다운 처신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 정부와 ‘민족지’ 등은 그런 일을 게을리 하거나 시늉내기로 일관했다. 그러니 미국 측 입장만을 대변하는 듯한 정부 당국자의 자세와 일부 신문의 보도태도에 불만이 쏟아져 나왔을 것임은 정한 이치다. 오히려 정상적인 시민사회 구성원이라면 이런 정부의 처사에 대해, 그리고 이런 신문들의 보도행태에 대해, 불만의 목청을 돋우며 시정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춧불 집회가 연일 개최되고, 왜곡보도를 규탄하는 일종의 언론 소비자운동이 벌어진 것은 정부와 일부 신문들이 자초한 것이다.

문제는 현 정국을 난마처럼 영키게 만든 이슈 제공자들의 그 후의 태도다. 영킨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자신들의 원인제공을 온전히 반성해도 국민들의 반감이 풀릴까 말까 한 마당에, 잠시 반성 모드에 접어드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쟁점 흐리기, 뒤집어씌우기 등 과거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이것은 실로 우려스러운 역사의 반복이고 민주주의의 후퇴이다.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는 국민들의 의사표출행위를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이름 아래 범법시 하려는 것이다. 신문은 신문대로 인터넷상에서의 일부 일탈행위만을 부풀려 탈(脫)중앙적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상의 여론형성 자체를 불온시하고 있다. 게다가 춧불정국이 마치 일부 방송의 왜곡·선동으로 초래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이것은 엄연한 논점 일탈이다. 시험답안으로 치자면 과락감이다.

물론 법치주의는 우리 헌정체제의 핵심가치 중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작금의 ‘춧불정국’은 본질적으로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된 쇠고기 부실 협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법치의 상위원리인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를 법치로 제약하고 재단하려는 행태는 법치의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하책 중의 하책이다. 요즘은 한 술 더 떠 ‘민주주의’란 말은 아예 실종되고 ‘법치’라는 단어만이, 보수단체가 내놓는 온갖 성명서와 광고문안의 행간을 뒤덮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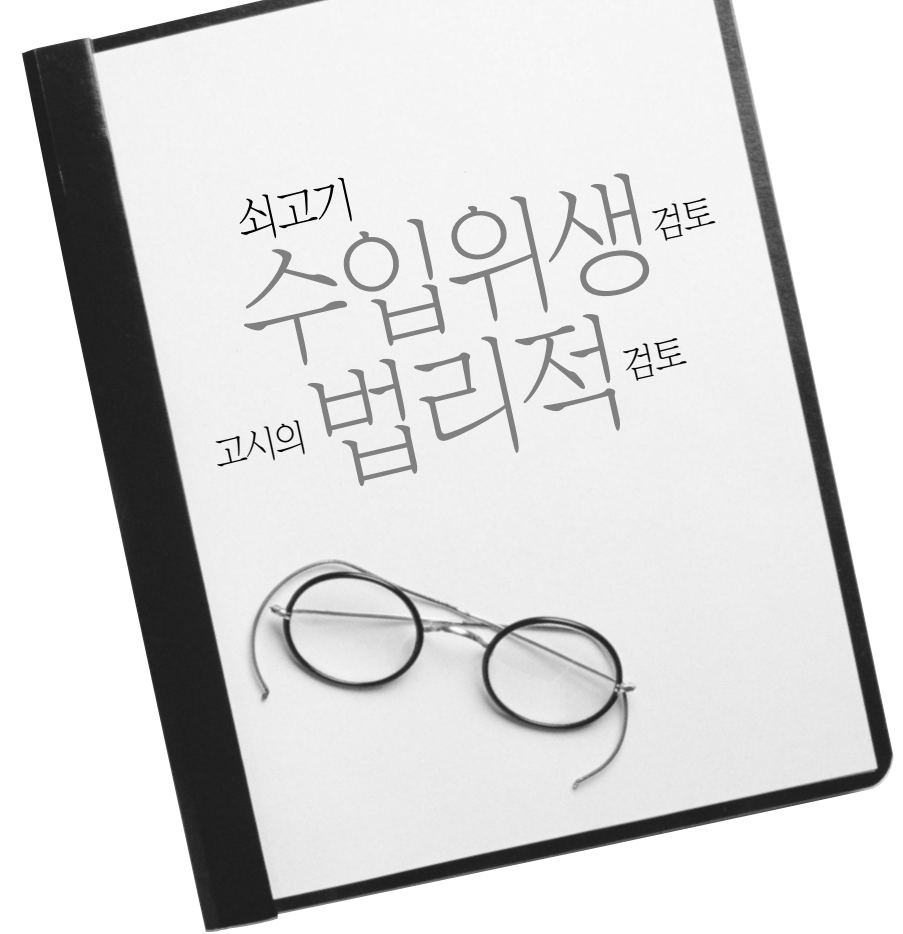
특히 걱정되는 것은 일부 법률가들과 그들이 속한 직역의 과거 회귀적 행태이다. 일부 법률가들이 이러한 시대착오적 역사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 역사의 희극은 ‘시즌 2’ ‘시즌 3’으로 되풀이 될 것 같다.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글 박성호 회원(한양대 법대)

“헤겔은 어느 부분에선가 세계사에서 막대한 중요성을 지닌 모든 사건과 인물들은 말하자면 두 번 나타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는 한 번은 비극으로, 다음 번은 희극으로 나타난다고 덧붙이는 것을 잊었다.”



초식동물은 말한다



I. 합의문 서명 및 고시 공포 경위

1. 인간광우병의 발생

영국에서 광우병이 1985년 최초로 발생한 이래, 유럽 22개국에서 18만건이 넘는 광우병이 발생하였고, 일본(34건), 캐나다(14건), 미국(2건)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하였다. 2006년 114건, 2007년 67건, 2008년 10건이 발생하였다. 캐나다는 2007년 7월 OIE로부터 미국과 같은 광우병 등급을 받고, OIE 권고대로 모든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고 있는데 2008년 6월 광우병이 발생하였다.

광우병 발생 초기만 하더라도 이 질병이 종(種)의 장벽을 뛰어 넘어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안전성 검증도 없이 쇠고기를 대량 소비를 한 영국에서 1994년 광우병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최초로 발생하였다. 연구결과, 단백질의 변형물질인 prion이 들어 있는

소의 부위를 섭취하여 사람에게도 감염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계속하여 영국(167건), 프랑스(23건) 등 유럽 8개국에서 203건, 일본(1건), 미국(3건), 캐나다(1건)에서 모두 208건의 인간광우병이 발생하였다.

한국은 2001년부터 동물성 사료 사용을 금지하였고, 1996년부터 2007년까지 27,223두를 검사하였으나 광우병 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2. 쇠고기 수입 중단조치

2006년 수입이 중단되기 전까지 미국에서 연간 20만톤 정도의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었다. 유럽에서 발생한 광우병이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발생하고, 2003년 12월 미국 위

싱턴 주에서 발생하자, 정부는 대량으로 수입하던 캐나다 및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하게 된다.

수입이 중단된 상태에서 미국의 요구로 2006년 3월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하게 되어 그해 10월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하게 되었다. 당시 수입위생조건을 보면 뼈와 7가지 특정위험물질(SRM) 등을 제외하였고, 수입이 허용되는 부위는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에 한정되었다. 수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 지침에 광우병 발생 유무와 상관없이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는 자유로운 교역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2006년 10월 수입재개 이후 수입검역 과정에서 수입위생조건에 위반되는 뼈조각이 2차례 발견되고 12월에는 뼈조각 외에도 다이옥신까지 검출되자 정부는 즉시 수입을 중단시켰다. 그런데 정부는 2007년 5월부터 한미 FTA 협상과 연계하여 수입을 재개하였다. 그 후 수입검역 과정에서 이물질이나 뼈조각이 계속적으로 발견되다가 7월 29일에는 특정위험물질인 등뼈가 발견되자 정부는 수입검역을 중단시키게 된다. 정부는 미국의 재발방지 약속을 수용하고 8월 27일부터 수입검역을 시작하였는데 갈비통뼈가 3차례 발견되더니 10월 4일에는 등뼈가 다시 발견되어 정부는 수입검역을 전면 중단시키게 된다.

3. 수입위생조건 '합의문'에서

2007년 10월 미국은 OIE로부터 광우병통제국가 지위를 획득하자 한국 정부에게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을 요구하여, 1차 협상을 가졌지만 결렬되었다. 미국은 OIE의 기준에 의하면 광우병통제국가의 경우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 회장원위부 2개 부위를, 30개월 이상의 경우 두개, 뇌, 눈, 척수, 척주를 추가하여 7개 부위를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면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2008년 2월 25일 현 정부가 들어선 후 4월 10일 한미 양국은 재협상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한 후 그 다음날인 11일 과천청사에서 협상을 시작하여 협상시작 8일 만인 18일 민동기 농업통상정책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미국 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내

용의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하 '합의문')에 서명하게 된다.

4. 고시 연기

'합의문'은 서명만으로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부칙 제1조(영문: This notice will go into effect on the date of its notification)에서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국문)고 규정되어 있다. '합의문'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를 통해서 시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장은 4월 22일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하 '고시')을 5월 15일 공포한다고 입안예고를 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 80% 이상이 검역주권 및 건강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협상에 반대하고, 대대적인 촛불집회에 나서자 정부는 공포를 연기하기에 이른다.

5. 양국 서신 교환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협상에 반대하자 정부는 미국 정부와 협의하여 5월 19일에 수잔 슈왓 미무역대표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건강이 위협에 처한다고 판단되는 때, GATT 20조와 WTO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미국 특정위험물질에 대한 규정 위반 시 검역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서신을 보내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잔 슈왓 대표에게 한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귀하의 확인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서신을 보내는 방식으로 일부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합의문' 자체를 수정하지는 않았다.

6. 관보게재 의뢰 및 연기

국민들은 위와 같은 '서신교환'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

다고 반대하였으나 5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장은 위 서신내용을 고시 부칙에 추가하여 고시를 확정된 내용 및 이것을 공포하기 위해 관보게재를 의뢰하였다고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더욱 확대되자 6월 3일 고시를 또다시 연기하기에 이른다.

7. '추가합의'와 고시 공포

그 후 정부는 미국 수출업자 및 한국 수입업자들이 결의하고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국민들은 이것은 구속력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였고, 6월 10일에는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반대집회는 더욱 확대되었다. 정부는 추가협상은 재협상이나 마찬가지로 하면서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협의를 하였고, 6월 21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추가합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미국 농무부의 인증이 없는 경우 당해 제품을 반송 조치하며, 정부가 현지 작업장을 특정해 점검할 수 있으며, 강화된 검사기간 동안 최소 2회의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정부가 해당 작업장의 작업 중단을 요구하면 미국과 협의를 거쳐 미국이 수출작업 중단 조치를 한다는 것이었다. 또 수입주문을 하지 않은 경우 뇌와 눈, 척수, 머리뼈 부위가 발견되면 한국 정부는 이 제품을 반송 조치한다는 내용이었다.

국민들은 이것은 구속력 없는 미봉책이라며 반대를 하였으나 6월 25일 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고시 부칙에 명시하여 관보게재 의뢰를 강행하였다. 그러자 미 무역대표 수잔 슈왓과 미 농업부장관 에드워드 샤프는 통상교섭본부장 및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합의사항을 기재하여 서신을 보내게 된다.

이 내용은 고시 부칙에 명시되었으나 '합의문' 자체를 수정하지는 않았다.

고시는 다음날인 6월 26일 관보에 게재되어 발행됨으로써 공포되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8. 무엇이 문제인가

2006년 수입위생조건을 보면 검역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정했다.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는 것으로 정하면서도 수입중단 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을 하여 주권이나 건강권 침해라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이번에 한미 간에 협상시작 8일 만에 졸속으로 합의한 내용은 미국의 사료강화조치 공포를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을 30개월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30개월 미만의 경우 특정위험물질을 축소하고, 쇠고기 부산물까지 수입하며, 검역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대표가 4월 18일 합의문에 서명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전권위임에는 위헌적인 내용에 서명을 할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협상에 나선 정부대표가 전권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서명해서는 안 되는 헌법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대표는 건강권 및 검역주권 제약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지도 않았다.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취하지도 않았다. 정부가 조약체결, 비준 등 헌법절차를 무시하고 합의문에 서명을 한 다음 장관의 고시로 강행하는 것은 중대한 법치주의 훼손에 해당한다. 국민들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자, 일부 추가합의를 하였지만 여전히 2006년도 수입위생조건에 비하여 불리한 내용으로 위헌성의 문제가 남아 있다. 향후 미국에서 광우병의 위험성이 증대하더라도 한국은 미국 내에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자료수집조차 할 수 없고, 전적으로 미국 측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향후 과학적 증명을 요구하는 수입중단 등 적절한 조치나 위험성 평가에 기초한 잠정조치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폐해는 권력기관이 민의를 무시하고 자의적,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우려가 있다는 데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합의문을 체결할 권한까지 정부에 위임된 것은 아니다. 국민의 권리의 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권력자가 강행하는 경우, 국민에게 바로잡는 사법절차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원리이다.

이하에서는 합의문 및 고시의 법적 성격과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II. 합의문 및 고시의 내용

1. 4. 18.자 합의문 내용

가. 수입 범위

- 쇠고기의 범위에 대해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제품을 포함(1조(1))
- 미국이 강화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시 쇠고기 수입 30개월로 확대(부칙 1항)
- ※ 2006년 조건: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지육으로부터 뼈를 제거한 골격근육으로 한정
- 선진 회수육,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 포함, 기계적 회수육/기계적 분리육은 제외(1조(1))
- ※ 2006년 조건: 횡격막·잡육·혀·볼살·분쇄육·기계적회수육·설육 및 육가공품 제외
- 도축 전 최소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가축화된 소과 동물도 수입허용(1조(3))
- ※ 2006년 조건: 멕시코에서 수입된 후 도축일 기준으로 최소한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
- 미국 정부 작성 수출검역증명서 의무적 기재사항
 - 2조, 10조, 15조~20조에 명시된 사항
 - 2조 구제역 등 전염병 미발생, 예방접종 미실시,
 - 10조 미국 내 사육조건
 - 15조 수출 육류작업장, 생체 및 해체검사 합격
 - 16조 도축방법
 - 17조 SRM 등 오염방지
 - 18조 잔류물질 기준
 - 19조 위생적인 포장 재료
 - 20조 가공·저장 및 수송 과정 가축전염병 병원체 오염방지.
 - 품명(축종 포함), 포장 수량 및 최종 가공작업장 별로 기재한 중량(순중량)
 - 도축장, 식육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작업장번호
 - 도축기간 그리고/또는 가공기간(일/월/년 - 일/월/년)

-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 주소
- 검역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자의 성명·서명
-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 부칙: 첫 180일 동안 티본스테이크와 포터하우스스테이크 수출 시에는 이들 제품이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되었음을 한국정부 관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어떠한 표시가 상자에 부착(4항)
- ※ 2006년 조건: 30개월령 미만으로 판정된 것 기재, 광우병 감염의 의심이 되지 않는 소 기재

나. 특정위험물질(SRM) 범위

- 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 및 회장원위부(1조(9))
-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눈·척수·머리뼈·등배신경절 및 척추(단, 꼬리뼈, 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의 날개는 제외)(1조(9)),
- ※ 2006년 조건: 모든 연령의 소의 뇌·눈·척수·머리뼈·척추·편도·회장원위부 및 이들로부터 생산된 단백질 제품

다. 수입중단권

- 미국에 BSE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OIE가 미국 BSE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5조)
- ※ 2006년 조건:
- BSE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을 중지
- 한국정부는 다음의 경우에는 수출쇠고기의 수입을 중단
 - 가) 미국의 방역조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미국내 BSE 위험이 객관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1) 사료규제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98년 4월)된 이후 출생한 소에서 BSE가 발생한 때

- (2) BSE에 감염된 소에서 유래된 육골분에 오염된 사료가 유통되어 추가 발생의 위험이 증대될 때
- (3) BSE에 감염된 소의 생산물이 식품으로 유통되어 공중위생상 위험이 증대될 때
- (4)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급여금지 등 사료규제 조치가 광범위하게 준수되지 않고 있음이 판단되는 때
- (5) 도축장에서 SRM의 제거 등 안전조치의 위반이 심각한 때

나) 새로운 과학의 발달로 골격근육에서도 BSE 감염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등 BSE 위험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다) 수출 쇠고기 작업장에서 이 수입위생조건의 위반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되거나 광범위하게 발생한다고 한국정부가 판단하는 경우

라. 육류작업장 승인권 및 조치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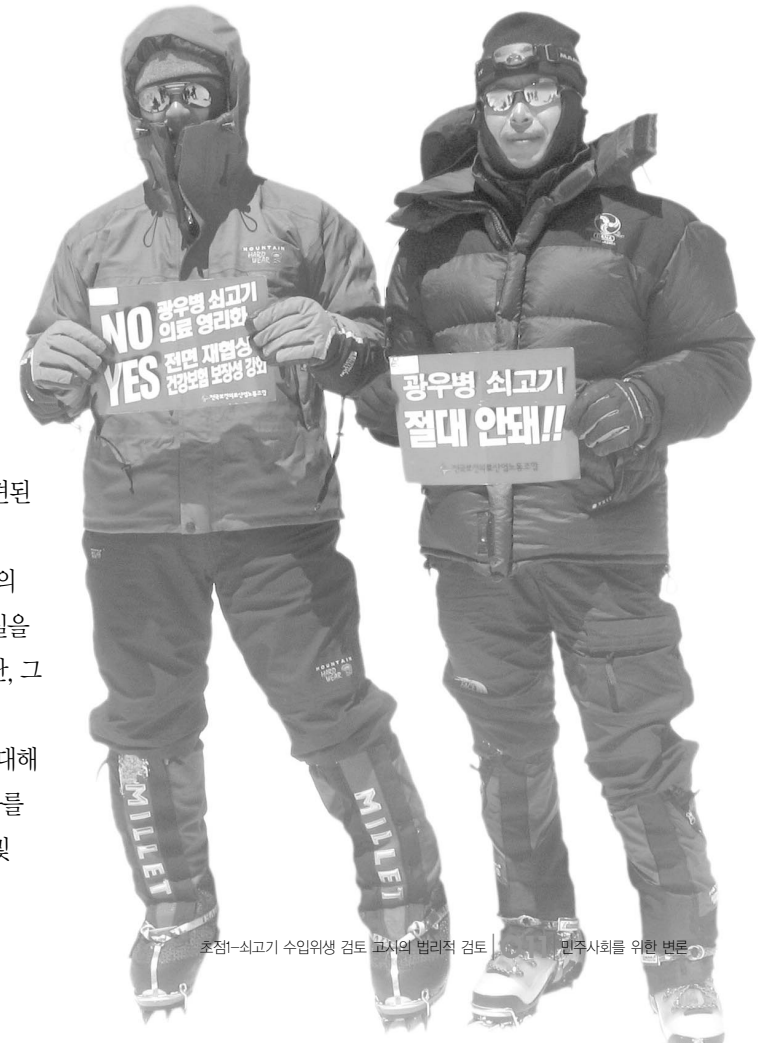
- 미국 농업부의 검사 하에 운영되는 미국의 모든 육류작업장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생산할 자격(6조)
- ※ 2006년 조건: 한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승인한 작업장
- 육류작업장에서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미국이 통제, 계속 진행시 공정중단 및 해제, 육류작업장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미국이 중단조치 및 해제(7조)
- ※ 2006년 조건: 미국정부는 수출쇠고기 작업장의 점검결과 이 수입위생조건 중 중대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한국으로 수출검역을 즉시 중단, 그 내용과 이유를 한국정부에 통보
- 한국 정부가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점검, 중대한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 그 결과를 미국정부에 통보하고, 미국정부가 적절한 조치 및

해제(8조)

※ 2006년 조건: 한국정부는 수출쇠고기 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 중대한 위반사실을 발견, 미국정부에 해당 작업장 쇠고기의 한국수출 중단을 요구

마. 수입검역 조치권

- 검역 검사 과정 중 한 로트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로트를 불합격 조치,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이에 관하여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며 적절한 경우 개선조치를 요청(23조)
- 검역과정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미국이 조사를 실시,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23조)



한국정부는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23조) 동일 제품의 동등 이상 물량 5개 로트에 대한 검사에서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한국정부는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을 적용 (23조)

·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 중단될 수 있음(24조)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되고 중단일 이전에 인증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24조)

※ 2006년 조건: 한국정부는 수출쇠고기에 대한 검역중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6항)

3. 추가 합의(합의문은 그대로 두고 고시 부칙에 규정)

· 부칙 2항(‘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은 미국 연방 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모든 식용부위에서 생산된 제품을 포함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경과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협의를 한다. 양국 정부가 4주 이내 적절한 개선 조치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한국 정부는 비록 해당 작업장 제품에 대한 수입 검역검사 과정에서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다섯 차례 선적분에 대해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검사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본 수입위생조건 제24조의 해석과 관련, 상기 강화된 검사기간 동안 또는 일반적인 검사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면,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해당 작업장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는 대로 미국 정부는 해당 작업장을 중단시켜야 한다. 한국 정부는 차기 시스템 점검시 해당 작업장을 재점검할 수 있다.(9항)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제법적 차원에서 국가의 책임이며 국내법이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에 있어서, 많은 국가는 자국의 헌법에 조약 관련조항을 두고 있다.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발생에는 특정한 입법적 편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헌법에서 체결된 조약이 별도의 편입이 없이도 국내법원을 구속하는 원칙을 규정하기도 한다.

대다수 국가는 국제법보다 국내법이 우선한다. 미국에서는 차후 제정된 연방법이 조약에 우선한다. 국제관습법의 많은 규범이 국내영역에서 적용될 만큼 세밀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제법상 의무의 이행에 대해 국제적 관계에서 국가는 국내법의 존재 유무로 항변할 수 없다. 입법부의 행위와 국내



Ⅲ. 합의문의 무효 여부

1. 합의문의 법적 성격

가.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

먼저 학설을 보면, 일원론에 의하면 국내에서 국제법이 우선한다. 국제법도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위와 복지를 다루며 최선의 중재자 역할을 하지만, 국제법은 국가의 법적 존재를 설명해주는 논리적 조건이며 국가의 권한 내에서 형성되는 국내법 체계의 논리적 조건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이 우선한다는 이론이다.

이원론에 의하면 국제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면 국내법원은 단순히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제법은 주권국가 간의 법체계인 반면, 국내법은 국가 내에 적용되며 개인 상호관계 또는 개인과 정부 사이의 관계를 규율한다. 국제법과 국내법은 서로 다른 사안을 규율하므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절충론에 의하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적용되므로 각 영역에서 충돌하지 않는 최고의 규범이라는 것이다. 다만, 국가가 국내에서 국제법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규칙이나 의사결정들은 결국 국가가 책임지지는 영역에 속한다. 만약 이 원칙이 없으면 국제법상 의무를 회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는 가입한 국제법이나 조약이 부과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국의 법률을 타국에 원용할 수 없게 된다.

국내법원 판결의 대외적 효력을 보면, 국내법원의 판결은 국제적 관할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분쟁의 핵심 사안이 동일하더라도 당사자가 동일하지 않고 논점도 상이하기 때문이다. 국내법원에서 청구인은 개인이나 법인이지만, 국제법원에서는 자국민에게 보호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된다. 국제법원에서 국내법은 조약이나 관습법 위반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국내법은 국제법원 판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불요증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자국법에 대한 국내법원의 해석은 국제법원을 구속한다.

한편, 원칙적으로 국제법원의 판결은 국내법원에 기판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국제법원의 결정이 국내법에 의하지 않고는 국내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이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수출쇠고기를 반송 또는 폐기처분, 당해 수출쇠고기를 생산한 작업장에 대하여 한국으로의 수출선적을 잠정 중단, 미국정부와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때에는 한국정부가 해당 수출작업장의 승인을 취소

2. 양국 서신교환 (합의문은 그대로 두고 고시 부칙에 규정)

· 미국 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로부터 현행 미국규정에 정의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한다. 한국정부는 수입검역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된 경우에는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5항)

· 한국 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SPS 협정에 따라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이 허용된다. 이 경과 조치 기간에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발견될 경우, 해당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반송한다.(7항)

·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8항)

· 본 수입위생조건 제8조의 해석과 관련,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한 현지 점검시 한국 정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점검단이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점검단은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즉시 미국 정부 관계관과 협의한다. 이 기술적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양국 정부는 고위급

나. 조약 여부

국가 간에 체결되는 조약에 대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조약법’) 제2조 제1항(a)은 하나의 문서로 작성되든 둘 이상의 문서로 작성되든 또 문서의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가 간의 국제적 합의가 문서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조약의 체결과 발효 방식은 당사자들의 의도와 합의에 의한다. 뚜렷이 정해진 형식 요건이 없고, 서신 교환이나 회의록에 합의가 기록될 수도 있다. 실제로 국가 사이에 체결되는 것인지, 정부 차원에서 체결되는 것인지, 관료 차원에서 체결되는 것인지에 따라 형식이 달라진다. 행정협정은 국제법적으로 조약과 비슷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취급한다. 이러한 형태의 정부간 협정은 국내법적으로 법률보다 낮은 수준의 효력을 갖는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합의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의문에 양국의 대표가 서명을 하였고, 별도의 합의요록을 보면 양국이 합의하였으며,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고시로 공포하여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였는데, 고시는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갖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합의문은 조약보다 낮은 수준의 효력을 갖는 정부간 협정이라 볼 수 있다.

다. 서명의 의미

국가가 부여하는 조약 체결을 위한 전권위임은 협상, 서명, 체결의 권한을 내포한다. 조약에 서명을 하는 것이 비준이나 승인을 요하는지, 비준 없이 서명만으로 지속적인 동의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도에 의해 좌우된다(조약법 제14조).

먼저, 서명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에 따라야 하는 경우 그 서명은 지속적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서명은 당사국에게 비준, 수락 또는 승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며, 조약의 당사국이 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할 때까지 조약의 발효 전에 그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한 의무를 부담시킨다(제18조). 그러나 서명이 비준의 의무를 창설하지는 않으므로 당사국이 비준이나 승인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조약에 대해 지속적 동의가 성립한다(제13조). 조약의 발효 방식과 시기는 조약이 정하게 된다. 조약이

특정한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으면 조약에 지속적 동의가 표명된 때 발효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합의문’에는 양국 대표가 서명한 다음, 부칙에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합의문’에 서명한 것이 지속적 동의를 표시한 것인지 여부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도가 우선인데 합의문은 국내법 절차에 따라 공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영문 ‘합의문’을 보면 부칙 제1조에 “This notice will go into effect on the date of its notification”이라고 정하여 이 고시(告示)를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면 고시의 공포일은 그 고시를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이다.

이와 같이 ‘합의문’은 비준이나 승인을 예정하지 않고 있으며, 또 서명만으로 발효되는 것도 아니다. 별도의 합의요록에는 “양국 대표단은 위생조건에 관하여 합의 하였다.”고 하면서도, 세부설명에서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고(예고)를 할 것”이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수렴 기간이 종료된 후 조속히 확정된 규정으로서 공포된다.”고 적고 있다.

쇠고기에 관한 한미 협의 합의요록

“양국 대표단은 위생조건에 관하여 합의 하였다.”
“한국은 농림수산물부가 본 위생조건에 포함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08년 4월 22일까지는 공고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수렴 기간이 종료(공고 후 20일)된 후 조속히 확정된 규정으로서 공포된다. 미국이 동의권 수렴 기간중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경우, 한국은 새로운 위생조건의 적용범위를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도 허용하도록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은 2008년 5월 15일 법적 절차가 종료되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였다.”

서명 후에 공포하는 것이 비준과 같은 정도의 의미를 갖

는다면 정부는 조약법 제8조에 의거 합의문의 당사자가 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할 수 있다. 공포에 앞서 양국은 합의문에 포함된 내용을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 여기서 의견수렴 절차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지가 문제이다. 행정절차법은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제출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안은 국민들의 의견수렴 결과에 의해 시행이 보류될 수도 있고, 그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합의문’은 미국 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공포하여 시행하는 것이면서도, 행정절차법상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것이므로, 정부는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게 합의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미 정부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수용하였으므로,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의견수렴결과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절차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①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제42조 (예고방법) ①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44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 서신교환 및 추가합의의 법적 성격

서신교환을 통해 합의한 내용은 미국의 대표가 서신을 보내 ‘합의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한국의 국제법상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추가합의는 수입범위를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는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및 일부 위생조치에 관한 합의문 규정을 보충하는 내용이다. ‘합의문’

을 수정하거나 하나의 문서로 작성하여 서명한 합의문이 아니다. 고시의 부칙에 반영한 것으로써 의미를 갖는다. 이들 합의의 법적 성격은 ‘합의문’의 해석과 관련한 양해각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 자율규제의 성격

WTO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 제2항은 일반관세로 전환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수입수량제한, 임의적인 수입허가, 수출자율제도 포함된다. 정부가 나서 유도하는 것은 자율규제라 보기 어렵다. 자율규제는 구속력이 없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자율규제 위반 시 제재에 나선 것 자체가 국제규약에 저촉된다.



2. ‘합의문’의 무효 사유

가. 조약의 무효사유

합의문은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약법에 의거하여 무효 여

부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조약의 무효에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다.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일반 국제법의 절대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여기에는 무력사용의 금지, 인종차별금지, 제노사이드법, 인도에 반하는 죄, 노예매매와 해적 금지, 천연자원에 관한 영구주권의 원칙, 국민자결의 원칙 등에 위반하는 경우이다.

조약법 제48조 내지 제50조에서 정한 상대적 무효에는 헌법위반, 착오, 사기, 매수 등이 있다. 중요부분에 대한 기망은 착오 규정을 적용한다. 상대적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국가가 조약의 무효를 원용할 수 있다. 조약의 전체의 무효를 원용할 수 있고, 당해 조항만의 무효를 원용할 수도 있다. 피해국가의 사후 동의 또는 묵인이 있으면 하자가 치유되어 이후에는 무효를 원용할 수 없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6조(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 ① 조약

는 조약에 대한 자신의 기속적 동의를 부적법화 하는 것으로 그 기만을 원용할 수 있다.

제51조 국가 대표에게 정면으로 향한 행동 또는 위협을 통하여 그 대표에 대한 강제에 의하여 감행된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표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52조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제 원칙을 위반하여 힘의 위협 또는 사용에 의하여 조약의 체결이 감행된 경우에 그 조약은 무효이다.

제53조 조약은 그 체결 당시에 일반 국제법의 절대규범과 충돌하는 경우에 무효이다.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반 국제법의 절대 규범은 그 이탈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 국제법의 추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는 규범으로 전체로서의 국제 공동사회가 수락하며 또한 인정하는 규범이다.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89조③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조건부 규정

합의문 부칙 제2항은 미국의 일방적인 사료금지조치에 의해 합의문이 개정되는 조건을 두고 있다. 민법상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의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행정법상 인허가 등 행정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나 조약이나 법령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다. 합의문은 조건의 내

시'로 발효된다. 법률보다 하위의 행정입법인 부령, 훈령, 예규, 고시 등이 있는바, 국내에서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내용이 농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라는 형태로 시행되는 셈이다. 고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위임에 의한 것이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한미 간의 '합의문'을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식품부장관 고시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면 고시는 향후에 효력을 잃게 된다. 수입검역 절차가 계속될 근거가 없게 되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고시가 헌법위반일 경우 합의문도 헌법위반에 해당한다. 헌법위반은 합의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부는 합의문이 무효라고 원용할 수 있다. 헌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제법원을 구속하게 된다.



IV. '고시'의 위헌성 검토

1.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문제점

가. 관련 규정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 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가축전염병"이라 함은 다음의 제1종가축전염병·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을 말한다.

나. 제2종가축전염병 : 소해면상뇌증(해면상뇌증).

31조 (지정검역물) 수출입검역대상물건은 다음 각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 명백하며 또한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 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는 조약에 대한 그 기속적 동의를 부적법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의가 그 국내법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되었다는 사실을 원용할 수 없다.

② 통상의 관행에 의거하고 또한 성실하게 행동하는 어느 국가에 대해서도 위반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에는 그 위반은 명백한 것이 된다.

제48조(착오) 조약상의 착오는 그 조약이 체결된 당시에 존재한 것으로 국가가 추정할 사실 또는 사태로서, 그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본질적 기초를 구성한 것에 관한 경우에 국가는 그 조약에 대한 그 기속적 동의를 부적법화 하는 것으로 그 착오를 원용할 수 있다.

제49조(기만) 국가가 다른 교섭국의 기만적 행위에 의하여 조약을 체결하도록 유인된 경우에 그 국가

나. 헌법위반

합의문은 국내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합의문의 시행은 고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국회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이 아니다. 합의문은 실질적으로 쇠고기 수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및 검역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국회의 결재를 거쳐야 한다. 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비준을 거치는 절차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합의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 정부는 미 정부에게 조약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헌법위반을 이유로 합의문이 무효임을 원용할 수 있다.

헌법

제60조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용인 사료금지조치 내용도 확정하지 않았다. 그러한 조건부 합의는 입법체계에 반하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4월 18일 합의문에 서명할 당시 입법예고된 동물성 강화 사료금지조치를 그대로 공포하지 않고 미국은 4월 23일 완화된 내용의 조치를 공포하였다. 정부는 미국이 강화사료금지 조치를 입법예고한 내용대로 공포한 것으로 발표하기까지 하였다. 강화사료금지조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에 대한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 정부는 조약법 제48조에 의거 착오를 이유로 무효임을 원용할 수 있다.

3. 합의문과 고시의 관계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합의문'에 서명을 하고, 시행일을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양국 정부 사이에 '합의문'에 서명을 하였으나,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고

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동물과 그 사체
2. 뼈·살·가죽·알·털·발굽·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3. 그 밖에 가축전염성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기구·깔짚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제34조(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①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농림수산물부장관은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관련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2조 (농림수산물부장관의 지시) ②농림수산물부장관은 가축전염성질병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중단, 검역시행장 등에 보관중인 지정검역물의 출고중지 등 수입 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5. "지정전염병"이라 함은 제1군 내지 제4군 전염병외에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7. "인수(人獸)공통전염병"이라 함은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염병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지정전염병 등의 종류(보건복지부고시 제2006 - 45호, 2006. 6. 12)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전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목으로 한다.
 - 가. 환자 감시 대상 지정 전염병
 - 9)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3.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수공통전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목으로 한다.
 - 아.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나. 불안전 입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는 광우병(소해면상뇌증)을 가축

전염병으로 정하고 있고,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 보건복지장관 고시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을 환자감시대상 지정 전염병 및 인수(人獸)공통전염병으로 정하고 있다.

국민은 보건권에 의거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에 보호를 위한 입법을 구할 권리가 있다. 가축의 전염병이 사람에게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이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prion을 소량만 섭취하여도 발병하고, 치명적이다. 치료법이 없으므로 예방만이 최선의 대책이다. 헌법 제36조 제3항이 보장한 보건권의 예방적 성격에 비추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광우병 예방 및 검역 대책을 정할 헌법상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동법은 광우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검역 및 위생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동법 제34조 제2항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은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관련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헌법 제75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하위 법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1. 7. 8. 91헌가4 결정). 또 법률은 명확한 용어로 규정함으로써 적용 대상자에게 그 규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장래의 행동지침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집행자에게 객관적 판단지침을 주어 차별적이거나 자의적인 법해석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2. 4. 28. 90헌바27 결정).

행정입법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임입법에서 위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법령을 명확한 용어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민주주의·법치주의 원리의 표현으로서 모든 입법에 요구된다. 포괄적인 위임은 국회의 입법권의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금지된다.

그런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

생조건'을 장관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다. '위생상황'이라는 개념은 추상적, 포괄적이어서 고시로 정할 사항에 대해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장관은 자신이 판단하는 또는 원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 직무 범위 위반

헌법 제96조가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정부조직법 제25조에 의하면 외국과의 교섭은 외교통상부의 직무범위에 속한다. 쇠고기의 수입의 확대 및 검역주권에 관한 사항은 외교통상에 관한 사항이다. 그런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이 농림수산물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역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여 정부조직법이 정하고 있는 직무범위와 배치된다.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7호]

제25조 (외교통상부) ① 외교통상부장관은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지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국제정세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1조 (농림수산물부)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농산·수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어촌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고시'의 법적 성격

가. 법규명령

위임명령은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따라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



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법규명령이란 법령상의 수권에 근거하여 행정부가 정하는 규범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구속력을 갖는 규범을 말한다. 법규명령 중에서 처분적 법규명령은 실질적으로 관련자의 개별성과 사건의 구체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집행적 법규명령은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일반적, 추상적인 것을 말한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집행명령은 위임명령과 달리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 의거 상위 법률의 수권이 없이도 직권으로 발령될 수 있다. 집행명령은 집행에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새로운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정할 수 없다. 법규명령은 권한 내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의 요건에 따라 제정하고 문서에 의해 법조문 형식을 취하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포하여야 한다.

행정규제기본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법령등"이라 함은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등을 말한다. 제4조 (규제법정주의) ①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8997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령 등의 공포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공포·공고절차) ①헌법개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예산 및 예산외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 이를 한다.

제12조 (공포·공고일) 제11조의 법령 등의 공포 또는 공고일은 그 법령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나.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 추상적인 명령을 말한다. 외부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실정법상 행정규칙은 고시 또는 훈령의 형식으로 발령된다. 양자는 법적 성격이나 효과에서 차이가 없다.

고시란 행정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협의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으로 세분된다. 훈령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지시란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로 개별적으로 발하는 명령이고, 예규는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 고시의 법규명령 여부

대법원은 고시에 대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여 법규성을 인정한다(대법원 2002. 9. 27. 2000두 7933 판결). 헌법재판소는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헌법재판소 2006. 12. 28. 2005헌바59 결정)고 하여 고시의 법규성을 인정하면서도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헌법상 보건권은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라는 의무를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헌법상 국민의 건강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정하고 있어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라. 헌법소원 대상 여부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0. 9. 자 2003무23 결정).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이른바 보충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 자체에 의한 기본권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 자체의 효력을 일반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다투는 길이 없으므로(대법원 1994. 4. 26자 93부32 결정)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1992. 11. 12. 91헌마192 결정).

따라서 법규명령에 의해 그 법률이 보호하려는 구체적인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3. 고시의 입법체계 위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 제1항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동조 제2항은 수출국의 검역증명서의 내용 및 위생 상황을 고시로 정할 것을 위임하고 있고, 고시는 제22조에서 검역증명서 기재내용을 정하고 있다.

고시는 수출국의 검역증명서의 내용 및 위생상황에 한정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시는 위임하고 있지 않은 쇠고기의 수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 건강권 및 검역주권을

제한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권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위헌성이 있는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함으로써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국민들의 보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또한 고시 제1조(1)은 쇠고기의 범위에 대해 미국 '연방육류검사법'에 기술된 대로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제품을 포함한다, 부칙 제2항은 미국이 '강화사료금지조치'를 공포할 시 제1조(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항은 미국 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로부터 현행 '미국규정'에 정의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한다고 각각 규정하여 외국 법령을 그대로 고시 규정에 명시하여 그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하였다. 이는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 및 법률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행정입법을 인정하는 헌법체계에 반한다. 미국 법령의 기재를 법령이 아닌 사실이라 보더라도 그 내용 자체를 기재하지 않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4. 검역주권 제약 여부

가. 검역주권의 의미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하여 민족자결권을 견지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라고 국민주권을 천명하고 있다. 주권은 국가가 지닌 법적 권한이나 그 권한의 특정한 기능을 말한다. 또 주권은 자국 영토내의 입법권을 포함하는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라고 표현될 수도 있다.

유엔헌장 제1조제2항은 "사람들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에 기초하여 국가 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제1항은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평등 원칙에 기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조약법은 전문에서 "제 국민의 평등권과 자결, 모든 국가의 주권 평등과 독립, 제 국가의 국내 문제에 대한 불간섭, 힘의 위협 또는 사용의 금지 및 모든 자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그 준수의 제 원칙 등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의 제 원칙에 유념하며"라고

규정하여 주권평등과 민족자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모든 국가는 자국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 위하여 동식물, 식품 등의 수입에 있어서 위생검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각국의 위생검역은 WTO(세계무역기구)체제의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b) 및 SPS 협정(위생 및 식품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이하 'SPS 협정')이 보장하고 있다. 위생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가가 무역자유화보다 국민의 건강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SPS 협정은 각국이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제2조 제1항),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에 이에 기초하도록 하며, 이 권고 등에 합치하는 위생조치는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간주한다(제3조 제2항).

SPS 협정은 과학적인 정당성이 있거나, 위험성 평가에 기초하여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의 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도입 또는 유지할 수 있다(제3조 제3항)고 하여 각 국가의 검역권을 인정하고 있다. 국가의 주권에는 영토와 국민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 타국의 배타적 관할권 분야에 대한 불간섭 의무를 포함하는바, 자국의 위생검역 기준을 수입 절차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권을 검역권이라 한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검역권은 민족자결권이나 주권평등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주권의 국제적인 발현을 의미하므로 검역주권이라 할 수 있고, 국제사회를 규율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보장의 실질화를 위하여서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할지라도,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헌법재판소 2001. 3. 21. 99헌마139 결정)고 하여 영토권을 인정하면서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검역조치권의 필요성

GATT 패널 기준에 의하면 수입제한 조치는 인간 및 동식물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및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GATT 제20조(b)에 의한 조치 및 SPS 협정에도 해당하는 경우 SPS 협정에 따르게 된다. 위생조치를 위해서는 건강관련 필요성이라는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SPS 조치는 과학적 원리에 입각해야 하고(제2조 제2항), 일관성 요건(자의성 금지)을 갖추어야 한다(제5조 제5항). SPS 협정 제2조제2, 3항은 회원국은 위생조치가 '과학적 원리에 근거' 하고, '자국과 타국 간에 차별적용하지 않도록 '하며,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회원국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에 의하면, 위생조치가 위험평가에 기초하고(제1항), 위험평가에 있어서 가능한 과학적 증거, 관련 가공 및 생산방법, 관련 검사, 표본추출 및 시험방법, 특정 병해충의 발생율, 병해충안정지역의 존재, 관련 생태학적 및 환경조건, 검역 또는 다른 처리를 고려하며(제2항), 위생보호의 적정수준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을 갖고 그 수준이 국제무역에 대한 차별이나 위장된 제한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5항). 수입국은 덜 무역제한적인 대체조치의 존재여부를 검토해야 한다(제6항).

동조 제7항에 의해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입수가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위생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즉, 건강상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회원국은 잠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입수가 가능한 적절한 정보에 의해 취해지고,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국제규약에 의해 향후 미국에서 광우병의 위험성이 증대될 때 한국이 SPS 협정에 의거 수입중단 등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쇠고기 수입으로 광우병 감염물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중단조치가 위험성 평가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 그런데 미국 내에 조사권도 없는 한국이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제규약이 국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각국의 독자적 검역권을 인정하는 바이므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검역조치권을 확보하여야 효과적 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검역주권 제약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수입을 함에 있어 현재의 검역권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에서 광우병 위험성이 증대할 것에 대비하여 수입중단 등 조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부는 수입범위를 확대하면서도 2006년 위생조건에 정해진 검역권을 포기하고, 다음과 같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미국의 조치에 의존하였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검역권은 별로 없다.

2006년 조건에 의해 갖고 있던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권 및 구체적인 조치권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 시 OIE가 미국의 지위를 부정적으로 변경하였을 때 수입 중단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제한하여 향후 미국에서 광우병 위험이 증대하였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서신교환으로 WTO 규정에 따라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정했으나, 이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야 하고, 잠정적 조치도 위험평가에 의해야 하므로 사실상 신속하

고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다.

2006년 조건에서 수입국이 보유하고 있던 육류작업장 승인 및 위반 시 행사할 수 있었던 조치권과 한국의 현지 점검권을 포기하고, 육류작업장에서 증대한 위반이 적발된 경우 미국 정부가 중단 등의 조치 및 해제를 결정하도록 하고, 한국은 표본에 대해 점검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추가합의로 현지점검 시 한국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해 점검이 가능하고, 증대한 위반사항 발견 시 미 정부와 협의를 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해당 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다섯 차례 선적분에 대해 검사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육류작업장에 대한 승인 및 조치권이 없는 상태에서 효과적인 안전성 확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검역검사 과정 중 한 로트(하나의 수출증명서로 수출하는 물량)에서 식품 안전 위해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해당 로트만을 불합격 조치할 수 있고,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에도 미국이 조사를 실시하며, 한국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계속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5. 건강권 침해

가. 건강권의 보호 영역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건강생활을 소극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지고 있다. 국민은 권력에 의한 건강침해에 대하여 그 배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대하여 적극

적 배려를 청구할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는 도달가능한 최고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인정하고, 당사국은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 등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PS 협정 제3조 제3항은 과학적인 정당성이 있거나, 위험성 평가에 기초하여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관련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고의 수준보다 높은 수준을 도입 또는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권은 최상의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권이며 예방적 성격을 가지므로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보호받는 권리이자, 국가의 보호의무를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보건권이 위험성으로부터 보호받는 기본권임을 확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에 의하여 확인되고 검증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는 항상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로서는 이러한 위험발생을 미리 막기 위하여 법적으로 이를 규제할 수밖에 없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방법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의한 약간의 부작용도 존

별개의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되면 한국 정부는 해당 작업장의 작업 중단을 미국 측에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조치될 수 있다는 것이고, 추가합의로 강화된 검사기간 동안 일반적인 검사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면,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해당 작업장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이 요청을 받는 대로 미국 정부는 해당 작업장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정했으나, 한국은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되고 중단일 이전에 인증된 물량에 대해 수입검역 검사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 검사가 연간 4만두라 정도로 극히 미미한 마당에 수입검역 시 전수조사를 못하고 일부에 대해 ‘표본조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에 대한 광우병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정부는 수입중단권 등을 포기하고 오히려 수입검역의무를 부담하는 등 검역권을 제약하고 있다. 이는 검역권 제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실검역으로 인해 광우병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게 되고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엄과 가치를 지닌 인간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2. 12. 18. 2001헌마370 결정 참조)고 판시하여 보건권은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다음의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금치 수형자에 대하여 일체의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수형자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 “징벌의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수형자의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안전성이 훼손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하는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헌법재판소 2004. 12. 16. 2002헌마478 결정)

“마약매수행위는 마약매수자금의 제공을 통하여 마약의 공급원을 새로이 창출하거나, 기존의 제조 및 판매조직을 확대시키고 마약의 확산을 촉진함으로써 공중의 건강까지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다.”(헌법재판소 1995. 4. 20. 91헌바11 결정)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는 수용자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며 더욱이 수용자는 국가의 보호 하에 있으므로 국가는 수용자의 보건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5. 4. 19. 2005헌마331 결정)

헌법재판소는 “흡연자들의 흡연권이 인정되었듯이, 비흡연자들에게도 흡연을 하지 아니할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혐연권)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흡연이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비흡연자들의 건강과 생명도 위협한다는 면에서 혐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과 생명권에 기하여서도 인정된다.”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 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흡연은 비흡연자들 개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흡연자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사익을 넘어서는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된다.” “국민은 헌법 제36조 제3항이 규정한 보건권에 기하여 국가로 하여금 흡연을 규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흡연에 대한 제한은 국가의 의무라고까지 할 수 있다.”(2004. 8. 26. 2003헌마457)고 보건권이 국가에게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청구권임을 확인하였다.

대법원도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3219 판결 참조)이며,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관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도2190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보건권이 위해가 발생할 우려로부터 보호하는 취지임을 밝히고 있다.

나아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은 헌법 체계에서 최고 규범적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모든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다. 이는 법과 제도화 문화, 윤리의 정당성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는 허용이 되며, 이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소극적으로는 고통이나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 적극적으로는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인 행복추구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 규정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건강권은 신체적, 정신적인 최상의 상태가 보장되는 것을 추구하며, 이것은 곧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실현하는 길이므로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은 곧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침해에 해당된다.

나. 건강권 침해

1)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

광우병은 prion이 들어 있는 소의 부위를 소량만 섭취하여 사람에게도 감염이 가능하며 치료법이 없고 치명적이다. 특정위험물질(SRM, Specified Risk Material)은 소, 양, 염소 등 가축의 부위 중 prion 질병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정한 것이다. SRM의 사용을 규제하는 이유는 광우병을 포함한 prion 질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prion은 SRM 부위에 99% 분포하여 있다. 소의 특정위험물

질을 돼지나 닭에게 먹이게 될 경우 prion에 감염될 위험이 있고, prion감염된 동물들을 다시 소에게 먹이게 되면 prion에 감염되는 식으로 교차감염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하여 국제기구들은 각국이 동물성 사료규제조치 및 충분한 광우병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OIE는 2007년 5월 미국의 예찰이 OIE 육상동물 위생규약의 Type A 예찰의 최소조건을 충족하며, 실험실 검사가 OIE의 최소조건을 충족한다는 OIE 과학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미국에게 광우병 통제국가의 지위를 부여하였으나, OIE 과학위원회는 '미국에 대해 광우병발생국가로부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가 완전하지 않았다. 미국으로 첫 번째 광우병 세대가 유입되었을 수 있다, 1997년 이전 사료금지 조치 부재, 1997년 이후 부분적으로 이행된 사료금지조치와 특정위험물질 동물사료 사용을 허용하는 조치로 미국내 특정위험물질 재순환과 증폭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특정위험물질을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권고하였다.

농림부 전문가 검토보고서(2007년 5월)에 의하면, 미국은 1997년 8월 이후 반추동물에게 반추동물유래 단백질 사용 금지하였으나, 소 이외 돼지 및 가금에는 특정위험물질이 혼입된 육골분 사용이 가능하며, 혈액, 혈액제품, 젤라틴, 검사된 육제품, 유제품, 돼지 또는 말 유래 단백질 제품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OIE의 특정위험물질을 동물사료로 사용금지하라는 권고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4월 공포한 강화 사료금지조치 의하면, 광우병 소,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를 동물성 사료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주저앉은 소라 하더라도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만 제거하면, 모든 부위가 다른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위 사료조치는 2009년 4월에나 시행된다. 종전 사료규제조치로는 물론이고 강화사료조치에 의해서도 교차감염의 위험성이 있다.

위 농림부 전문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주저앉은 소 등을 대상으로 광우병 예찰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 1986년부터 광우병을 신고대상 질병으로 지정, 1990년부터 5월 광우병예찰 개시, 2002년부터 연 2만두 검사, 2004년 6월부터 연 268천두 검사 목표로 강화된 예찰을 실시, 2006년 8월부터는 연 4만두 검사 목표로 수정

운용하고 있어 광우병 검사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광우병 통제국가 지위를 받는 캐나다에서 2008년 6월에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 원래 광우병 통제국가라는 의미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24개월 이상 된 소가 1백만 두 이상인 국가이므로 예찰결과 소의 수에 상관없이 7년 동안 누적점수가 30만점 이상이면 광우병 통제국가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농림부 전문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2006년 기준 사육두수 총 95백만두(육용우 65, 젓소 13 등), 성우 42백만두(육용우 33, 젓소 9 등), 도축두수 33.6백만두(육용우 29.8, 젓소 2.4 등)로 성우를 보면 위 기준 1백만 두보다 42배라는 많은 소를 사육하고 있으므로, 1백만 두 이상이라는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것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여 신뢰하기 힘들다.

Farm Sanctuary의 광우병 총수사관을 역임한 의학박사 Michael Greger는 논문 'U.S. Continues to Violate World Health Organization Guidelines for BSE' (2004년)에서 1996년 WHO가 광우병에 대해 '다른 동물에게 감염된 동물을 사료로 사용하지 말 것' '국가는 충분한 검사를 수립할 것' '소의 뇌?눈?척수?내장을 식용이나 사료로 사용하지 말 것' '가축의 조직을 사료로 사용하지 말 것' 이라고 한 4가지 권고를 모두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1990년 이래로 미국 농림부는 이런 쓰러진 소들의 2%에도 미치지 않는 소들만을 검사하였다." "이런 소수의 검사들은 도축되는 소들에게만 행해졌다." "그렇게 해서 이런 쓰러져 죽어가거나 죽은 소들을 다른 동물들에게 먹일 수 있게 된다."고 썼다.

광우병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prion을 발견하여 의학부문의 노벨상을 수상한 Stanley Prusiner 박사는 "나는 모든 쓰러진 소들을 검사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쓰러진 소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 소들을 검사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소들을 검사한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모든 쓰러진 어른 소들을 검사하고 건강할 지라도 식품으로 소비될 소라면 모두 검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 검사하지 않은 소의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폐기된다."고 말했다.(위 논문 참조)

일본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사례는 21개월, 23개월, 유럽에서도 28개월, 29개월밖에 되지 않은 소였다. Greger 박사

는 "어린 가축들도 감염되고 전염성을 가질 수 있지만 증상을 보이기 전에 쇠고기 식품으로 판매된다." "4마리 중 1마리를 검사하는 유럽에서도, 수백 개의 광우병 케이스가 완벽하게 건강해 보이는 소들에게서 발견된다."고 지적했다.(위 논문 참조)

미국은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회장원위부 등 2개 부위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경우 뇌·눈·척수·머리뼈·등배신경절·척추(단, 꼬리뼈, 흉추·요추의 횡돌기, 천추의 날개를 제외함) 등 7개 부위로 특정위험물질을 정하였다. 국가마다 특정위험물질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 유럽은 미국보다 강화된 특정위험물질을 정하고 있으며, 미 농무부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의하면 일본은 20개월 이하 살코기를 수입하며, 홍콩·대만·태국은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를 수입하고, 모두 월령 구분 없이 특정위험물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위 농림부 전문가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개별식별 시스템을 2004년 이후 시행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며, 2007년 5월 등록농장수 395천건으로 전체 추정농가의 약 25%에 불과하며, 2005년 6월 1건, 2006년 3월 1건 광우병 소에 대한 역학조사가 실패한 것처럼 대부분 소의 이력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소의 영구치가 2개월 경우 24개월~30개월, 영구치가 3개월 경우 30개월로 판정하고 있는 것이나, 영구치 개수에 의해서는 월령을 확인한다는 것은 확률에 입각한 것으로써 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어 30개월령 이상의 소가 그 미만으로 오인되어 도축될 가능성이 있게 된다. 더구나 특정위험물질이 30개월 이상과 그 이하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어 30개월 이상의 소가 30개월 미만으로 오인되어 판매되고, 특정위험물질까지 유통될 위험성이 있게 된다.

SPS 협정은 각국이 국제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위생조치를 도입하는 것을 인정(제3조 제3항)하고 있고, 국제기준이나 권고에 합치하는 위생조치는 생명 또는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간주(제3조 제2항)하는바, 이것은 최소기준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광우병 검사,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 등에 있어 국제기구의 권고에 미달하고 있어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위험성 있는 쇠고기 부위 수입

2006년 수입위생조건에 의해 수입을 재개하면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는 30개월 미만 뼈 없는 골격근육에 한정하고, 7개 특정위험물질 및 이들로부터 생산된 단백질 제품의 수입금지하였다. 수출증명(EV) 프로그램에 따라 승인된 수출작업장에서 생산하고, 미 농림부 식품안전청의 검사, 승인과 농업마케팅청의 수출적합 확인 후 검역관이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급하여 수출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런데 불과 1년 사이에 수입검역시 수입금지물질이 발견되어 수입 중단과 재개가 수차례 반복되었다.

따라서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가라는 이유만으로 쇠고기 수입을 30개월로 확대하고, 선진 회수육, 분쇄육, 가공제품, 그리고 쇠고기 추출물의 수입을 허용하였으나, 광우병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입확대를 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힘들다.

추가합의로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30개월 미만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이 허용된다고 정했으나, 영구치 개수에 의한 월령확인 방법이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며, QSA 프로그램은 그 작업장에서 생산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며 개별 수출증명서에는 30개월 미만임을 표시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QSA 프로그램이 30개월 미만 쇠고기임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특정위험물질을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경우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질 및 척추(단, 꼬리뼈, 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의 날개는 제외)로 규정하면서도 30개월 미만의 경우 편도 및 회장원위부로 축소하였고, 서신교환으로 미국규정에 정의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추가합의로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으며, QSA 프로그램에서 이들 위험물질이 제거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도 않다.

추가합의로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고 정했으나 미 농무부 규정은 이에 대해 언급이 없어 도축과정에서 이들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한다는 보장이 없다. 주문 여부는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주문 여부에 따라 제거하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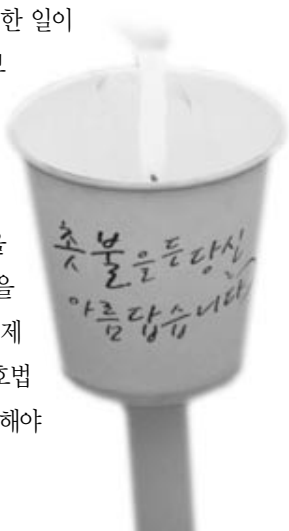
으로부터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는 도달가능한 최고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각국이 외국에서 식품을 수입할 경우 국민은 최고수준으로 안전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것이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수입품은 외국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고 사는 것이므로 조금이라도 안전성이 의심이 되는 식품을 수입할 이유가 없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생명이나 건강에 미치는 위협이나 불안을 감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더 큰 목적이 없는 이상,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식품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하게 수입을 할 경우 안전한 것으로 증명된 부위에 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부위까지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헌법 및 국제규약상의 모든 형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또, 광우병 위험성에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의 정신

하여 유통시키는 것 자체가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국민들의 보건권을 위협하는 일이다. 이것은 반사적으로 야기되는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수입과정에서 검역기관에 의한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가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검역절차는 고시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단순히 사실적으로 집행하는 절차이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검역작업은 기계적, 기술적 후속 절차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쇠고기 수입은 고시에 의해 이미 결정되는 것이다. 개인의 생명권 및 건강권 침해가 발생한 다음에는 그 회복은 불가능하다. 그와 같은 위협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개개의 수입절차, 검역, 유통 등에 대한 사법심사를 통해 건강권이라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너무 우회적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수없이 발생하는 하나하나 후속절차를 심사하는 것은 소송경제에도 맞지 않는다.

국민들로 하여금 미국산 쇠고기 섭취를 강제하고 있지 않

썬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본권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직접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엄격히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시는 외국의 식품을 수입함에 있어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한 검역 및 공중위생을 위하는 방향으로 규정하여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고시는 건강권 보호라기보다는 그 목적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에 있어 그러한 목적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위험성 논란이 계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최소화하려하거나 적절한 검역수단을 강구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검역권을 제약하고 있으며, 보호해야 할 더 큰 보호법익도 존재하지 않는 등 건강권을 제약해야 할 아무런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V. 결론

포함하거나 하는 방식으로는 특정위험물질이 수입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내장은 유럽이 특정위험물질로 정하고 있으며, 미 농무부 EV 프로그램에 의하면, 내장은 홍콩·이집트 등이 수입을 금지하고, 척추는 일본·홍콩·대만·태국·싱가폴·베트남 등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선진회수육은 일본·홍콩·태국 등이 수입을 금지하고, 미국 농무부도 학교 급식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위험성이 높아 유통되어서는 안 될 내장, 척추, 선진회수육을 제한 없이 수입, 유통시키고 있다.

3) 건강권 침해

이상과 같이 미국의 광우병 검사 및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특정위험물질범위 등이 미흡하거나 불합리하며 이력추적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적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자기관련성 또는 현재성이 없거나 침해내용이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것에 불과하여 주장 자체로 보아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없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적법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는바(헌법재판소 2001. 3. 21. 99헌마139 결정),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쇠고기를 수입, 유통시키는 것은 헌법이 보호하려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이 된다.

수출국인 미국의 위생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입업자의 권리의무에 관련될 뿐 수입국 국민들은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것에 불과한가? 수출국 식품이 수입되면 수입국의 국민들이 섭취하는 것이므로 수입국의 국민들의 보건권에 직결되는 것이다. 보건권은 국가의 보호의무를 정한 것이며, 예방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만 한다. 이러한 보건권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볼 때 건강에 해로운 식품의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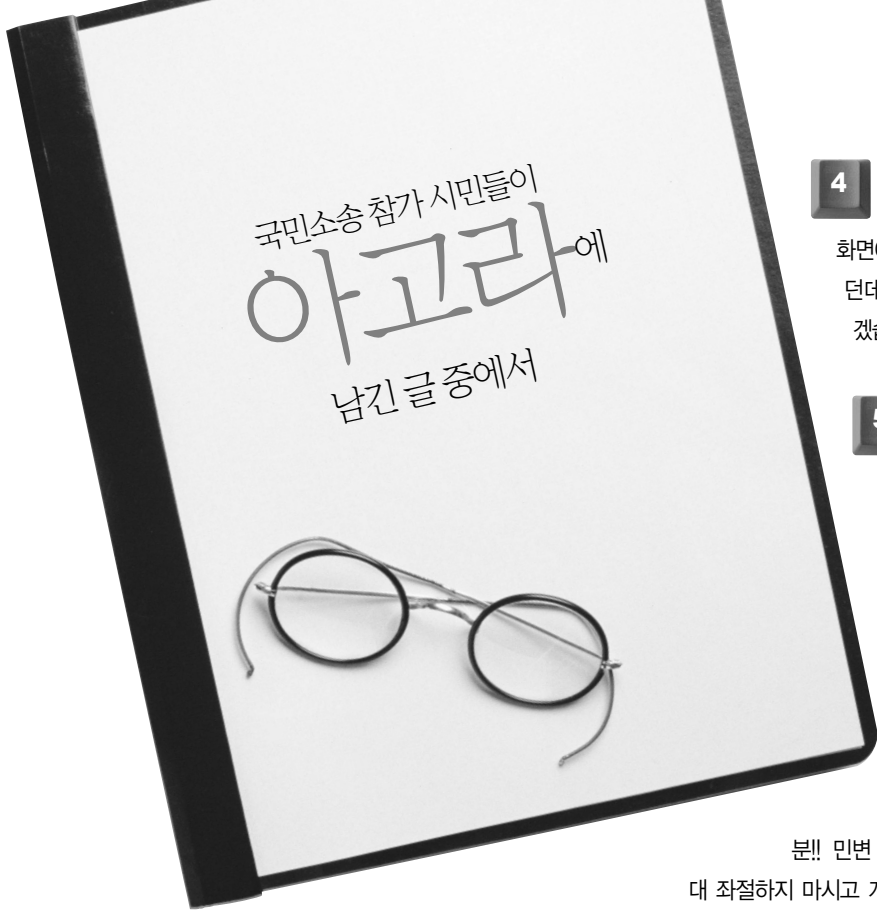
으며, 급식을 담당하는 업체에게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권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가? 쇠고기 음식은 국민들의 식생활과 떼어 놓을 수 없도록 문화적, 역사적으로 관습을 형성해 왔다. 미국산 쇠고기는 국민들 각자의 선택권에 의해 섭취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쇠고기로 만든 음식뿐만 아니라 수많은 모든 식품의 첨가물로 사용된다. 정부가 모든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쇠고기 음식, 쇠고기 첨가 식품에 원산지 표시를 완벽하게 시행한다는 보장이 없다. 광우병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쇠고기 음식 및 쇠고기가 첨가된 식품을 피해야 하는데 이는 기대가능성이 없다.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있지 못한 현실은 관습에 해당한다.

건강권을 제약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보면,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와 그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로

건강권은 모든 형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 예방적 차원의 기본권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최상의 수준으로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이 보장되고 있지 못한 만큼, 이를 수입함에 있어 한국의 실정에 맞는 위생기준을 수립하고 검역주권을 행사하여 국민들의 건강에 전혀 위협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함에 있어 광우병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까지 수입하고, 검역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제약함으로 인해 광우병의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권에 위협을 주고 있다. 이는 민족의 자존과 생명을 경시하여 발생한 중대한 헌법위반의 문제이다.



1 purealex

방금 민변에 전화해보니까 아주 힘차게 받으시더군요!!! 저도 참여하고 입금 시키고 왔습니다. 내가 진짜 살다 살다 국민소송이라는거 다해보고.. 나도 이젠 진짜 이 나라 국민이 된 것 같습니다. 눈물이 나는데 왠지 꼭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2 최희○

저도 서명했어요.. 아무것도 못해서 가슴이 아팠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며 합니다.저도 서명했어요. 아무것도 못해서 가슴이 아팠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며 합니다.

3 차차

민변이 돈안되는 일로 주로 시간빼앗겨서 형편이 않좋은 말을 들었어요,,,소송비내는김에,,,여유있게,,,넵시다

4 foundit

맞아. 이분들이 너무고생이 많으십니다. 화면에서 보니까 엄청 피곤해보이고 안되보이던데.. 빵하나 덜 사먹고 좀 더 넣어드려야겠습니다.

5 최진○

항상 행동으로 참여 못하는 죄스러운 마음입니다. 예비군 7년차라 올해는 훈련도 없었는데, 주말에는 예비군복 입고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군복 안 입을줄 알았는데, 결국 입게 되네요 ㅎㅎ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송금하였습니다. 이렇게라도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자주 참여할 수 없어서 정말 죄송해요ㅠㅠ 우리 국민들 사랑합니다. 특히 아고라인 여러분!! 민변 변호사님들 국민들이 뒤에 있습니다.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화이팅입니다!!

6 최영○

저도 신청하고 입금했습니다. 지방이라서..무서워서..또는 다른 피치못할 사정으로 출발집회 못가시는 분들.. 5000원 아까워하지 마시고 꼭 참여해주세요. 우리 함께 삽시다.

7 모니

신청했습니다 제발 꼭 국민의 뜻을 이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8 master

떡볶이 김밥사먹을돈 한번 애끼면 됩니다. 동참해주세요!!

9 악개비

회사직원 모두 동참시켰습니다. 비록 적지만...^^

10 Joono

저도 오늘 국민은행 왕복 40분 거리 감수하면서 입금했습니다, 헉헉~ ^^;;

11 백만송이장미

저희가족 모두 서명했구요~~~~~ 주변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총 10명이구요 소송비용은 한사람이름으로 한꺼번에 입금시키기로 했어요 여기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렇게 해도 된대요~~ 입금자 명단으로 해서 메일 한통 보냈구요~~ 번거로우셔도 모두 동참합시다~~ 간식꺼리 한번 안먹으면 되잖아요~~~~!!!!!!

12 김기○-너른벌

저를 포함해서 마누라... 그리고 종3과 종1인 아들 두명까지 해서 4명 모두 완료했습니다...

13 더좋은세상을위해

서명하고 입금했습니다. 부디 저희들의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14 플로디

서명하고 돈도 부쳤습니다~ 아 게으른 내가 이렇게 신속하게 움직일줄이야 --,-- 대단하다 명박아...

15 나

아...드디어 베플에 올랐다...저도 글을렸지만 말주변이 없어서 베플엔 못올라서 발만 동동구르고있었는데 다행히...널리널리퍼져라~~~ 많이동참해주세요!!!

16 플래티넘

민변 쇠고기 소송에 참가합니다
제 개인정보 기꺼이 드립니다 간단한 입력만으로 소송에 힘을 실어줍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하다가 잡혀가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나온 변호사분들이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됐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분들에게 믿음이 갑니다.
육선 피해 소송한다고 하며 카페 열고 돈받는 분들에게는 주민번호 드리기가 꺼림칙하더니, 이 분들이 "국민소송"을 하신다고 하니, 저는 넬름 주민번호와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소송비에 쓰시라고 적은 돈이지만 보탬입니다. 만약 저나 제 친구가 집회에 참여하다가 잡혀가면, 분명히 도와주실 분들이니까요.
국민소송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소송에 참여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오거나 하진 않습니다. (오면 대박입니다만.. ^^)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한국의 과학자보다 미국 쇠고기 수

출업자의 말을 더 신뢰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우리들의 목숨을 가버이 여기는 조치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적극 반대합니다.

17 별나라

지금보니 돈내는게 필수는 아니네요..잘못알고 올려서 죄송..여하튼 연행자까지 다 소송해야되니까 민변에 후원해주시면 좋지요.

18 지나

[비폭력] 전 공동소송참가 신청했구요... 작지만 짜금 보태드렸어요..^^ 저.. 조금은 보태드릴수 있는게 있어서 기뻐요..^^

19 부산갈매기

고생많으십니다. 작지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입금했어요.

20 차차

막대한세금평평싸가며,,국민에게 달려드는 정부와,,싸우는 국민변호사들이,,돈이없어서,,자기돈으로 털어서,,아껴 가면서 일해야할가여,,,앞으로 무슨일이 전개될지,,모릅니다,,많은소송이 기다릴것같은데,,,우리의 모든걸 해줄,,유일한 법적 대변인단체입니다. 저도 막퍼날랐어요,,,수십번,,민변이 그래도 정부가 명문오역한거도 찾아주고,,,법적근거로 정부를 조이는 유일한희망입니다,,촛불같은 감성적인,,,방법만갖곤않되여,,법적논리로 무장해야됩니다,,,민변이 저녁마다,,인권침해현장자료조사하느라,,여자변호사님이 구타도 당했다던데,,,그분들에게 힘을 실어주자구요,,,그분들은 땅파면 돈나온답니까) 주로 돈안되는 일에 매달려서,,저분들 형편안좋다 말들었어요,,,,국민소송과,,,연행자석방을위해 힘스는 저분들에게 니돈으로 하라,,,는식은,,정말,,,싸가지없는 행동입니다

21 bl24sun

말로만 하기보다 이런거에 적극 서명합니다.돈과 상관 없다고 하던데 그리고 해봐야 몇만원 들어서 고시 철회되기만 한다면야.

22 애플소다

명하고 동생까지 포함해서 만원 입금했습니다!! 파이팅!!!

23 playha

만원밖에 못낸게 부끄럽습니다.

24 mimymeemy

민변분들 시위참가자들 보호하시라 이번 소송일 진행하시라 힘드시죠, 거기다 진행비용까지 부담하시려면 힘들겁니다. 비용부분이나마 조금씩 힘이 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변님들 정말 수고하십니다.

25 작은손

저도 입금과 서명은 별개라고 침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명 후 입금계좌가 밑에 있길래 거리낌 없이 바로 송금했습니다.(송금수수료 500원 추가로 내고...) 사기라도 좋다고 생각했구요. 다행히 사기는 아닌걸로 밝혀져서 다행이구요. 암튼 많은 관심 주셔서 기쁘네요.

26 kimrokho

저도 입금을 했지만... 그런거 생각안했습니다.민변이 대다수 국민을 대신해서 진행하시는데... 더 못보내드려 죄송합니다.이글을 읽었다고 해서 민변이 국민을 이용한다고 생각 안합니다.다른분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5월 한달동안 민변의 활동을 보신분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하지 않을 것입니다.

27 길드림

서명했습니다.그리고 송금했습니다.적은 금액이지만 가슴이 뿌듯합니다.이명박 하야,퇴진 하라..

28 이성질체

그따위 글 올린 최초인간 누군가요? / 돈입금안하면 소송 취소된다는 부분 ...이건 심각한 사기입니다. 분명 밝혀야하고 이런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네요./ 저도 민변분들 그냥 후원해야겠다는 생각이지고 있다가 소송소식듣고 작지만 입금했는데.../ 이따위 발상으로 시작한분은 분명히 책임소재를 따져야할듯 합니다. 명박스러운 방법에 당한듯한 ...명박같은 더러운 기분입니다

29 세르주

저도 폼질 했다가 지웠는데.. 다른 사이트들도 소송 위기라고 도배되어 있네요. 민변에서 많이 난처하시겠어요. 쉽사리 수습힘들 듯. 너무 많이 퍼져서요. 정말 최초로 확인 없이 올리신분 반성하세요..

30 대차게살자

올린사람이야 도움되자고 그렇게 열심히 날랐겠지요.. 이해합니다. 명박이만큼만 안하면 세상모든것 용서할 수 있는 관용이 생겼읍니다. 명박아 고맙다..

31 이용0

민변에 입금한 돈만원, 아깝지 않습니다. 잘못 알려진 정보에 의해 입금한 돈이라도 도리어 가슴 뿌듯합니다. 소송에 그 돈이 필요치 않다면, 연행자들을 돕는데라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2 뷰티풀피플

침엔 너무 강압적으로 돈 보내달라는거 같아서 좀 구렸는데..그래도 이제 오해의 소지가 좀풀린거같고...해서..저도 5000방금 송금했습니다...통장에 7000뿐이어서..ㅋ 암튼 여러분들도 오해풀렸으니 बैं킹되시는분들...5분만 투자하세요..^^

33 피브리조

입금은 좋은 일에 쓰실 테니 제가 보낸 오천원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돈을 버는 입장이 아닌 지라 많이 못 보내서... 그게 오히려 죄송하네요 ㅠ

34 네오

알바는 무섭지않은데, 건전한 시민들이 의심하는 것 같네요. 지난주 전화확인하고, 인터넷 통해 또 확인하고, 통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고 찍혔습니다. 민변...우리가 지켜야할 민주사회 최후의 보루입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이곳을 의심해선 안됩니다.

35 삶의 나무

숙제하고왔읍니다.더 많은 참여바랍니다.



36 인생다그래

민변도 땅파서 일하는 곳 아닙니다. 금번 촛불집회 연행자들의 소송진행, 실비지출 등 재정상의 어려움이 분명 있을텐데 모두 십시일반하여 돕는 측면도 있고요, 무엇보다.... 국가의 주인인 우리들이 나서서 소송인이 되는 것이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달랑 몇명이 소송제기하는 것하고... 20만이 소송인이 자기 돈 내고 진행하는 소송... 여러분이 판사라면 부담 느끼지 않으시겠습니까?

37 가이아

국민소송은 기본이고 연행된 분들이나 시위에 참가해 다치신 분들의 소송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참여합니다.

38 메롱

저 20살인데 생년월일이 89년생이라 미성년자드라고요 확인안하구 서명하고 입금했는데 어찌쵸? 민변에 전화하는게 빠르려나요?

39 쥐뺨이내려와

명박아 10만이 만원씩내서 소송을 벌인다. 너내려오면 내가 십만원 주고 적어도 10만이 내면 얼마까요? 백억인데 그거받고 그냥 그만둬라 각설하고 민변 변호사님들 감사합니다.

40 간장게장

만원으로 이렇게 뿌듯할 수가 !!! 만원의 행복입니당 ^^

41 음아흠

국민 헌법소원청구서 뉴스 나올때 마다 속으로 한마디 합니다.. 저거 나도 했어 (왕따 아님 혼자 삼^^;)

42 김데렐라-하영

나도 만원~~~ 최고로 옳은일을 한것같아 제자신한테 칭찬하고 싶어호~~~

43 마법정령

국민 헌법소원청구에 참여 했다는 제가 자랑스럽네요. 이번에 많은 것을 느낍니다. "실천하는 자의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44 현아

뺏듯... 저희 가족 5명 친구들 3명 동참...

45 뭐하니

저도 만원 냈었는데 그게 드디어 접수되었구나~

46 하늘바람노리터

참여라는게 참 행복감을 주는군요 ^^

47 babydoll

미국사는데요. 미국서도 참가해서 돈 냈답니다.그리고 올 부모님 민증번호 알고 있기 땀에 것도 다 서명하는데 이용했구요..ㅎㅎㅎ..

48 승

아싸 나도 했다~~~~~ }_< 너무 뿌듯~

49 공공이

히히 내 이름도 저기 있어요~ *.*V

50 행복한아이

저 안에 나도 있다는게 자랑스러움..웁트트~~

민변, 촛불과 함께 거리에서 타오르다!

부제 / 민변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돌아보며



민변 거리에 서다

민변은 한미 FTA 소위를 중심으로 한미 쇠고기협상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까지만 해도 쇠고기 협상은 거스를 수 없게 된 한미 FTA 협정의 일부에 대한 비판적 감시 수준으로 머물러 있었다.

그런데 언론매체를 통해 광우병쇠고기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더불어 정부의 쇠고기협상의 문제점이 속속 알려지면서 5월 2일부터 청계광장은 촛불 든 중, 고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정부는 아직 미성숙하여 공중파에 현혹되고, 인터넷 공간을 떠도는 괴담의 진실여부를 판단할 지적 능력 없는 어린 학생들의 치기로 여기고 그리 대수롭지 않게 보았다. 심지어 시민단체들도 그때까지는 그다지 적극적으로 주도할 생각도 못했고, 뒤늦게야 알게 된 것이지만 이런 현상의 함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

촛불의 열기는 갈수록 뜨거워져만 갔고, 청계광장은 7시 이전에 가지 않으면 소리광장은 엄두도 못 내고, 시민들의

기발한 '자유발언'을 제대로 듣기 어려울 무대 먼발치에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르렀다. 민변도 이때까지는 이전에 그랬듯이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몇몇 사안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는 정도의 참여에 머무는 듯했다.

그러나, 갈수록 열기가 뜨거워지는 촛불의 힘은 정부를 비이성적으로 만들어 인터넷공간에서 형성되고 있는 여론을 '괴담'으로, 촛불문화제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네티즌에 대한 수사를 공언하게 만들고, 학교까지 방문하여 학생들을 수사하는 등의 인권침해상황이 벌어지면서 민변은 광우병쇠고기수입항의운동에 대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게 이르렀고, 결국 5월부터 타오르기 시작한 촛불의 열기는 민변을 거리로 나서게 했다.

마침내 백승현 회장이 촛불연단에 올라 '민변이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던 5월 24일, 민변은 집회현장에 처음으로 공동변호인단이 새겨진 몸 벽보를 입고 조사대응지침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하면서 기나긴 촛불항쟁에 조직적으로 합류하기 시작하였다.

민변 인권침해감시단, 빛을 밝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민변은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준비 때문에 민변사무실 내에서의 역할을 넘어 집회현장에서의 활동을 진행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 5월 30일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열린 종로 수운회관에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고, 젊은 변호사들 중심으로 뒤풀이 참석을 뒤로 한 채 곧바로 집회현장에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루어진 활동이 인권침해감시활동의 최초 모습이다. 이즈음 집행부는 집회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종 다양한 인권침해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감시단을 구성할 필요를 느끼고, 광우병 항의운동에 대한 법률지원단의 소속 분과로서 인권침해감시단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민변이 인권침해감시단을 구성해서 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4년 평택미군기지이전반대투쟁 당시 평택 대추리 분교 강제철거와 그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권력의 물리적 폭력을 목도하면서 민변은 인권침해감시단을 구성하여 평택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인권침해감시단을 구성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평택미군기지이전반대투쟁이 마무리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인권침해감시단을 제대로 운영할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촛불로 인해 다시금 빛을 보게 된 것이다.

5월 30일은 인권침해감시단의 활동에 대한 합의도 없이 현장에 나간 터라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부터 혼란스러워 일부 회원들은 전경과 시위대 사이에서 연행을 막기 위한 역할을 수행했고, 일부는 대열 뒤에서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 그 날은 우리의 데뷔전에 대한 배려였는지 전경과 시민들간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고, 오히려 시민에게 교통사고를 낸 경찰버스 운전자를 둘러싼 시위대로부터 위 운전자를 보호하는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인권침해감시인가? 촛불집회 참여인가?

인권침해감시단 몸 벽보를 차고 현장에서 활동하다보니 촛불집회 참여자로서 같이 함께 한다는 느낌과 동시에 우리 활동의 정당성을 보장받기 위해 평화집회 감시자로서의 역할만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들기 시작했다. 민변은 공식적으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참여단체이다. 즉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국민대책회의의 이름으로 기획되고 치러진 행사는 원칙적으로는 민변도 주관하는 셈이다. 그런 민변이 대책회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행사에 참여자로서가 아니라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고 그 속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3자적 활동이 주관자로서의 위상과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었다. 당장 추상적인 고민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다. 즉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를 것인가, 차도가 아닌 인도에 있어야 하는가, 강제연행이 이루어질 때 이를 막아야 하는가 등 집회참여자들과 감시자로서 매순간 선택이 요구된 것이다.

처음에는 감시단원 사이에서도 명확한 합의나 고민이 정리되지 않아 시민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보였으나 차츰 우리가 있어야 하고 수행해야 할 일은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함으로써 평화집회가 보장되고 집회참여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 노래를 부르거나 촛불을 들 때에는 가급적 몸 벽보를 입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썼다.

사용될 음향차량을 도로 한복판에서 정차하게 하고, 위 차량을 견인하거나 차량운전자를 귀가하게 하는 것, 음향업자를 소환해서 면허취소와 구속하겠다는 협박으로 집회에 음향을 제공치 못하게 하고 이미 제공한 적이 있는 업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행위, 현행법의 인적 사항 등 조사가 이루어졌는데도 40시간 이상 장시간 구금해 놓는 행위, 시청광장 위 천막을 계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철거하는 행위, 미리 준비해온 돌맹이와 분사가 끝난 소화기를 시민들에게 던지는 행위 등등. 현장에 있지 않고서 기껏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실감할 수 없는 믿기지 않는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통해서 가슴으로 느끼게 된 것이다.

촛불의 현장, 변호권을 돌아보게 하다

촛불 특히 집회현장은 우리 변호사들에게도 변호권이란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던져 주었다.

지금까지 집회에서 연행된 사람들을 접견하는 역할에만 머물러 있던 우리는, 연행되는 시민들을 현장부터 밀착 동행한 느낌으로 현장에 있었다. 그러다보니 이재정, 김광중 변호사가 시위대 맨 앞줄에서 경찰의 물리적 진압을 저지하다가 시위대로 취급받아 연행되기도 했고, 강영구, 이재정 변호사가 인도 위의 시민들을 연행하는 경찰에 항의하다가 연행되기도 했으며, 이준형 변호사는 경찰의 방패에 두개골골절상을 입어 생사의 기로에 놓이기도 했었다.

한편 체포된 시민들을 현장에서 접견하려는 변호사들의 요구를 작전 중이라는 이유로, 경찰서에만 접견해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당하는 일도 있었고, 용산경찰서에서는 모 지능팀장이 변호인접견을 자기 책상 근처의 가청거리에서 진행하도록 하여 변호사가 접견을 그만두는 일도 발생했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의 변호권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너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현장에서의 접견이 가능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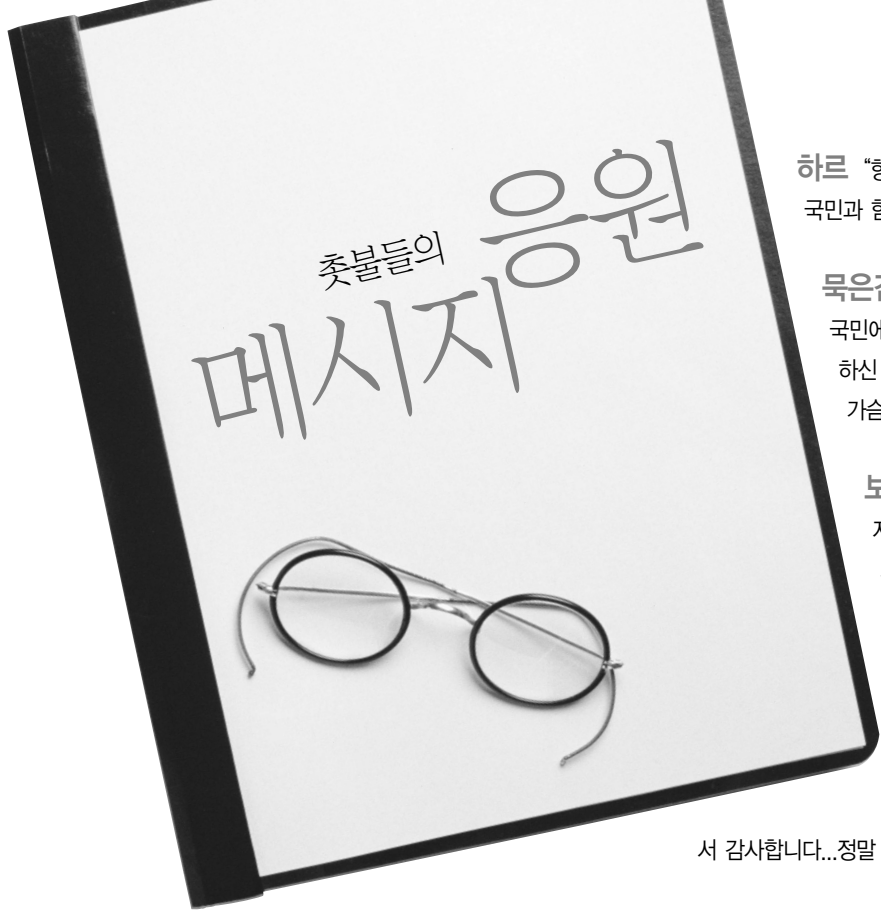
지에 대해서 변호사들도 고민해야 할 정도로...

우리의 변호권이 어떤 경우에 침해되었다고 단정지을 수 있으며,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만한 기회를 갖지 못했었는데, 촛불의 현장이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연행되거나 우리의 신체와 생명을 걱정해야 하는 정도의 변호권 수준에서 보장받고 있고, 이에 대한 대처는 변협과 인권위 진정에 머무는 정도의 대처밖에 고민해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했고, 우리의 변호권을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다.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으로
체득한 현장성과 헌신성을
바탕으로 민변,
다시 국민 속으로...

민변은 헌법소원 국민청구인단 모집과 촛불에 관한 모든

대대



레몬테라스 & 세상을 바꾸는 여자들 응원메시지

꼬물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헤젤 변호사님들 짱 사랑합니다 ^^

나네프 변호사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들은 변호사님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파이팅!! 해주세요^^

난나야 참..송변호사님한테만...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송기호 변호사님이요...꼭이요...

상상예찬 ㅋㅋ 제 친구가 자기 송씨라고 갑자기 기세등등하더라구요.. 민변에 유명한 송씨성을 가진 두분 때문에^^ 마스크에서 자주 빌 기회가 없어 다른 훌륭한 변호사님들 성함을 잘 모르지만~ 혹시 지씨성을 가진 분 있으시면 가문의 영광으로 알겠다고 좀 전해주세요^^저희는 민변을 열렬히 지지하며 민변은 민주 시민들이 지킨대!!!라고도 꼬옥 전해주세요

하르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해주세요. ^^”

묵은감자 민변에서 활동해주시는 한분 한분이 국민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렵고 험한 길을 택하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러분께 가슴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보상심리 민변신기! “앨범”은 언제 내실지? “화보집 예정은 있으신지?” 대신 물어봐 주세요^^*

별님들 민변 변호사님 들께... “항상 정의와 편에 서 주셔서 고맙습니다...계속 저희 촛불들을 지켜주세요.”

프리즐 국민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정말 정말.....

애니로즈 언제나 국민들의 곁에 함께 해 주세요.

배움 민변 변호사님 도와주셔서 어쩌면 경찰서 출두 요구서 잘 해결될 거 같아요^^ 경찰에서 공문보내줘봐야 할지만ㅠ.ㅠ 민변이 있어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늘 감사하다고 ㅠ.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결사반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민변이 있어 든든하다고 전해주시구요...마미맘 꼭 전해주세요.....송변호사님 멋 멋찌다고....우헤헤헤.....꼭이요.....결사반대가 그러더라고 꼭 전해주세요...왕팬이라고..헤헤

쏘피아 지금까지(or 앞으로도) 다치신 분들, 억울하게 구속된 분들, 수배 중인 분들...또... 여기저기서 말도 안 되는 험한 기사와 말로 상처 입으신 분들에게 정의의 힘!로 맞서 싸워주셔서,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엠제이 우리 동글이 꼭 도와주시고... 민변이 없었으면 국민들이 초들고 어찌 버텨들고... 싶어요 감사드립니다.

레민 민변도 파이팅! 세바여도 파이팅!



민변 사무실로 날아온 글들 중에서

1. 민변 여러분 ! 여러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마음 같아서는 찾아가서 허드렛일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출세, 연줄대기, 명예, 돈만 아는 썩어빠진 법조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분명 우리 사회는 더 나아질 것입니다. 힘 내십시오. “민변 아재! 아재!” -부산에서-

2. 민변 변호사 여러분!! 촛불시민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은 민변도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사랑합니다. 감사^^**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님들께, 하나의 촛불로써, 시민을 위해 밝은 등불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빈다. 국화차, 홍화차, 카네이션화차, 인삼차, 유자차와 종이컵 소량을 드리고 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기 깨어있는 지성. 행동하는 양심. 이유 있는 소신에 응원 보냅니다! 기꺼이 배후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WHYSO 여러분 덕분에 제가 좀 더 살만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가슴으로 감사합니다.

마미마미 민변이 있어 든든합니다! 덕분에 법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스토리 민변은 흔히 길에서 채이는 돌이 아닙니다. 귀하게 갈고 닦아 정제되어 나오는 최고의 보석 다이아몬드처럼 귀하면서도 값지고 또 드물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길..민변의 길목마다 마다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큰 힘, 그리고 아름다운 용기를 가진 민변! 항상 존경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영원하세요~

맹글이 많이 드시고, 힘내시라고! 멋지다고! 전해주세요! 넘 친절하세요!^^

수린맘 사서 고생하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현수아 고맙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민변이 되길 바랍니다..

향기 댁에 가까운 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곁에 있어주세요!!!

아따맘마 민변 여러분의 배후는 저희들입니다!! 힘차게 나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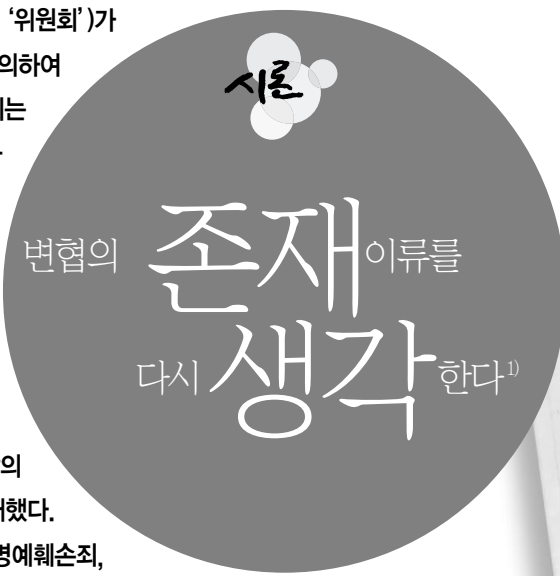
토깡이 여러분 때문에 더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울쏘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가시밭길 함께 걸어주시는 여러분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7월 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포털사이트 다음 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총 80건을 심의하여 그 중 58건에 대해서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정보의 삭제'의 시정요구를 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은 7월 3일 관련 전문가를 추천하여 위원회의 판단에 도움을 주었다고 밝히면서 "보수언론 광고 중단 네티즌 압박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 대한변협은 보고서를 통해 광고불매운동 글의 게시가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협박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위원회가 엄격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 보수언론과 정권의 편에 선 것은 지극히 개탄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변협의 보고서와 변협추천 전문가의 자문이 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점에서 필자가 변협의 일원인 변호사라는 사실이 심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1) 이 글은 7월 3일자 오마이뉴스에 "방송심의위, 공무 중 해리"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글을 변협의 보고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중심으로 대폭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2) 게다가 업무방해죄 및 협박죄의 성부 판단에서는 두 행위를 같은 선상에 놓고 판단하고 있다.)

광고불매운동의 원인부터 알아야 한다

우선 변협은 이번 촛불시위가 왜 시작되었고, 그 시위가 왜 광고불매운동으로 진화했는지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해봤는지 묻고 싶다. 참여정부 시절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에 대해 무섭게 따지던 조중동이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한다. 쇠고기 협상에서 여실히 드러난 정부의 대미굴종, 무능과 무지, 오만과 독선, 계속되는 거짓말과 협박에 비폭력으로 저항하는 시민들을 폭도로, 빨갱이로 매도한다. 정부의 무자비한 불법진압에 눈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한 진압을 노골적으로 주문한다. 시민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중동이 진실보도라는 언론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명조차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저버리는 사이비 언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조중동에 분노하고 그 분노가 구체적으로 광고불매운동으로 발전한 것이다. 시민들의 조중동에 대한 분노는 지극히 정당하다. 변협은 우선 이것부터 알아야 한다.

변협은 광고불매운동 글을 게시하는 행위와 그 글을 본 사람이 보수언론에 광고를 실은 기업에 전화를 해서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서론에서는 "네티즌들의 광고중단 압박"의 문제점을 검토하겠다고 하고서는 구체적인 판단에서는 "광고불매운동 글의 게시"가 업무방해죄 등의 범죄행위이므로 해당 글이 불법정보로서 삭제대상이 된다고 쓰고 있다.²⁾ 그러나 광고불매운동을 권유하는 표현행위와 그 표현을 보고 직접 행동을 하는 행위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자, 즉 광고불매운동 글의 게시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권리로서 보호해야 할 대상인가, 아니면 불법정보로서 규제되어야 할 대상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후자는 구체적으로 과도한 폭언이나 욕설, 혹은 정당한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을 사용한 것인지를 따져 범죄성립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 점에서 변협의 검토는 시작부터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광고불매운동 글의 게시행위와 광고중단 요구행위는 구분해야 한다



3) 6월 25일에 개최된 제8차 임시회의에서 이 번 안건을 시의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7월 1일 제9차 회의를 내렸다. 현재 7월 1일 제9차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변협은 보고서에서 “위원회의 법률해석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익 차원에서 게시글 삭제 등 임시조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위원회 제8차 회의록을 보면 한 위원이 “모든 심의규정은 결과적으로 법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법적인 것을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은 어느 정도 지속적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재량에 속한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은 우리 위원회가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변협의 전제와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대단히 잘못되고 위험한 전제가 아닐 수 없다. 먼저 그러한 전제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헌법이론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표현의 자유와 같은 정신적 자유권은 재산적·경제적 기본권보다 우월하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되지 않되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도 이른바 이중기준의 원칙(헌법재판소 2001헌바71 결정 등)에 따라 그 제한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경제적 기본권에 대한 그것보다 엄격해야 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관해서는 사전억제의 금지, 명확성의 원칙,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범위 등과 같은 보다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해 이러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무수히 많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해서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도 경고하고 있다(헌법재판소 99헌마480 결정). 그리고 헌법의 하위규범인 법령은 헌법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즉 기본권을 최소한 제한하도록 입법되고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본권의 최대보장의 원칙과 최소제한의 원칙을 기본권보장의 2대원칙이라고 한다(헌법재판소 89헌가106 결정).

또한 기본권은 모든 공권력적 국가작용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이를 공권력 국가작용의 기본권기속성이라고 하며 우리 헌법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0조 제2문)고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위원회의 심의근거가 되는 법령과 위원회의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은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게다가 사법부가 아닌 행정권이 불법성을 판단하여 대상 글을 삭제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위헌성이 상당히 크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위헌성마저 큰 법률은 더욱 엄격히 적용·해석해야 한다. 그럼에도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성 판단의 폭이 넓다는 변협의 전제나 법적인 것을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은 위원회의 재량에 속한 사항이라는 발상은 헌법무시, 기본권 경시의 극치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명예훼손죄의 성부

변협은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보수언론에 광고를 한 기업의 담당자 성명, 부서,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것이 허위사실의 적시라고는 할 수 없다. 변협은 담당자 성명 등을 기재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하나 이는 하나 마나한 소리다.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인 명예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이다. 그리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기업이 어떤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업의 담당자가 누구라는 사실의 적시가 도대체 어떻게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이 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는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달리 비방의 목적을 필요로 한다. 비방의 목적이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려는 가해의사나 목적을 말한다. 변협은 게시글의 의도, 반복성, 게시자의 성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최소한 글들을 반복적, 조직적으로 올리는 소수의 네티즌들의 비방의 목적은 쉽게 인정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반복적, 조직적으로 글을 올리는 것과 비방의 목적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광고불매운동 글을 게시하는 목적은 왜곡보도를 일삼는 보수언론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항의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를 기업 내지 그 담당자를 비방할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광우병주의보!
견

또한 변협이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공공의 이익과 비교형량하여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비방의 목적은 인정되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명예훼손죄의 성부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의 판단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변협은 공공의 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원칙론만 들고 대상 글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 대상 글은 왜곡보도를 일삼는 보수언론에 기업들이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여 해당 언론이 반성하고 진실보도라는 언론의 최소한의 사명을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백보 양보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다.

광고불매운동
네티즌수사

업무방해죄의 성부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변협은 대상글들의 상호연관성, 반복성 등의 특성에 비추어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연락이 인정되어 공범이 성립한다고까지 한다. 섬뜩하다. 물론 우리 판례가 공범의 성립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형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을 넘어 지나치게 공범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변협으로서는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비판함이 마땅하다.

변협은 마치 해당 글을 올리는 네티즌과 이를 보고 해당 기업에 항의전화를 하는 네티즌을 무슨 조폭처럼 보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소비자운동의 일환이다. 해당 글을 본 사람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항의전화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전화를 받은 기업 역시 그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기업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뿐이다. 그럼에도 대상글이 위력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그것도 공범이 된다는 변협의 판단은 위력에 대한 해석의 한계를 넘은 유추해석이라 할 것이다.

협박죄의 성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이 공포심을 가질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한다. 변협은 대상글들을 전체적으로 보아 해악의 고지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별다른 논거 없이 협박죄의 성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보수언론에 광고를 실은 기업과 담당자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이 대상 기업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당연히 안 되는 것을,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해야 하는 판이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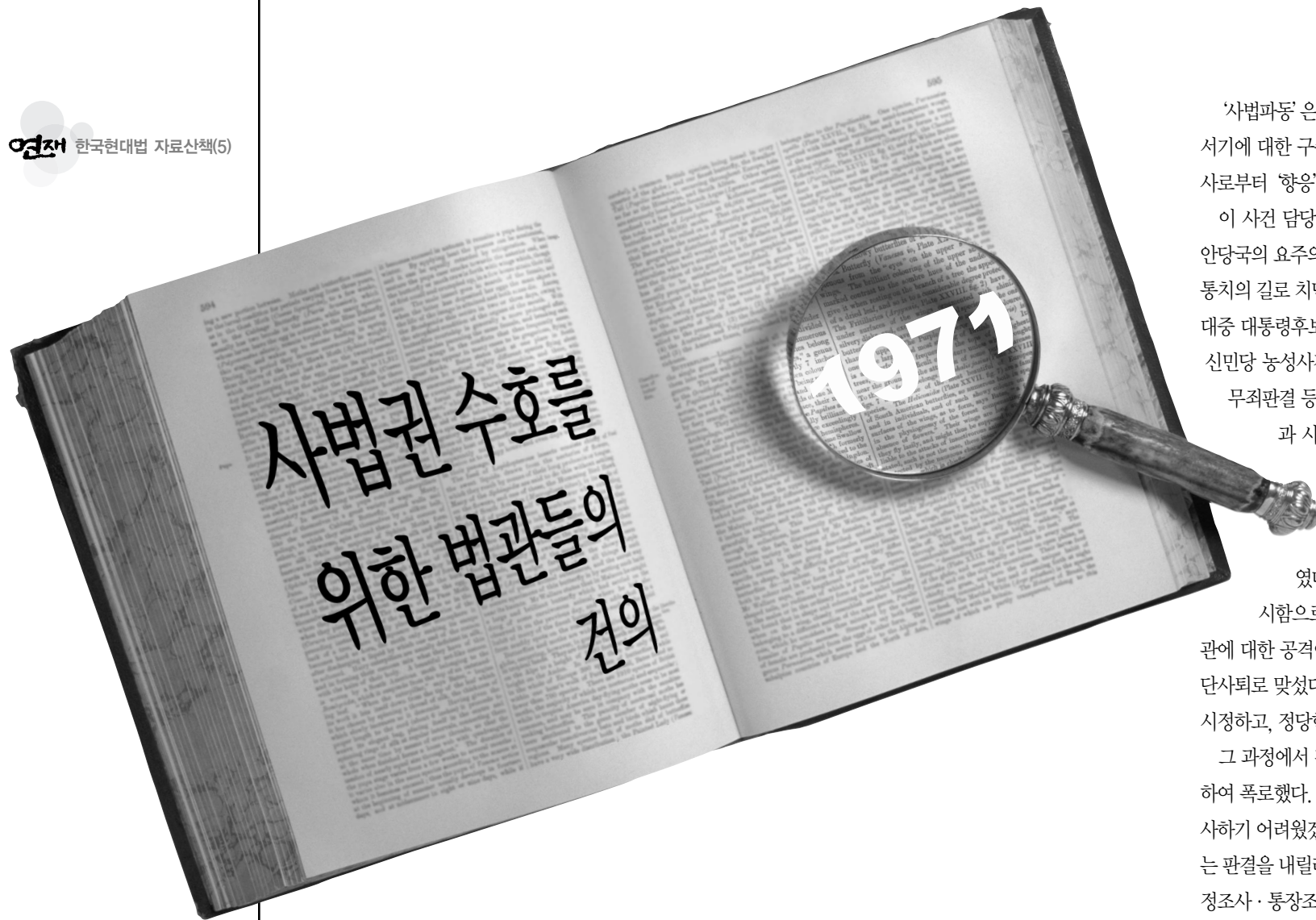
광고불매운동글의 게시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로서도 인정된다.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적절한 유통구조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소비자의 권리를 구체화한 법률인 「소비자기본법」은 물품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할 권리,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해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도대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될 수 있는가?

네티즌들의 행동은 정당한 소비자주권의 행사이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그렇다면 변호사단체인 변협의 사명은 무엇인가. 변협의 홈페이지에는 회원 모두가 위 사명을 가슴에 품고 실현시킬 수 있는 창구가 되겠다고 쓰여 있다. 업무소개에서도 1번이 인권옹호사업, 2번이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정부정책감시사업이다. 그런데 지금의 변협은 이러한 변협의 사명을 저버리고 있다. 쇠고기 협상에서부터, 아니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서부터 대한민국에는 인권과 정의가 설 자리가 없다. 거대한 불의와 불법이 만연하고 있다. 모든 공권력이 총동원되어 국민을 협박하고, 잡아가두고 족쇄를 채우며 억압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 위기상황에서 변협은 법률이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정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인권과 정의를 짓밟는 도구가 되는 현실에 동조하고 있다. 변협의 존재이유에 대해 깊은 회의가 든다.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전체회원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전문가 단체의 권위를 빙자하는 행위를 그만 두기를 촉구한다.

변협의 존재이유를 다시 생각한다

글 류제성 회원



사법권 수호를 위한 법관들의 건의

1971년 7월말과 8월 초는 한국 사법사에서 가장 뜨거운 여름이었다. 당시의 용례를 따라 '사법파동'이라고 명명되었지만, 한국의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뜨거운 결의를 집단적으로 보여주었던 사건을 '파동'으로 부르는 것은 정치적으로 올바른(politically correct) 명명이 아니다. 1980년 광주의 움직임을 '사태'로 부르는 것이 부당하듯이 말이다. 이를 '1971년 사법민주화운동' 혹은 '제1차 사법민주화운동'으로 성격지우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시대의 역사를 그대로 음미하기 위해 '사법파동'으로 쓸 수는 있겠다.

'사법파동'은 1971년 7월 28일 서울지방검찰청이 서울형사지방법원의 두 법관과 입회 서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들의 피의사실은 출장신문 중 변호사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다.¹⁾

이 사건 담당재판부는 국가배상법 위헌판결과 시국사범에 대한 일련의 무죄판결로 공안당국의 요주의 사찰대상으로 꼽히고 있었던 터였다. 더욱이 1971년 즈음해서 이미 파쇼 통치의 길로 치달던 박정희 정권의 의도에 어긋나게도, 일련의 무죄판결들이 쏟아졌다. 김대중 대통령후보의 조카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의 석방, 국가배상법 위헌판결, 서울대생 신민당 농성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월간 <다리> 지 편집인에 대한 무죄판결 등. 정권의 입장에서 사법부 길들이기는 눈앞의 숙제였다. 법관에 대한 위협과 사찰이 빈번했다. 바로 그런 분위기에서 서울지법의 주요 재판부가 걸려든 것이다.

법관 피의자에 대한 영장심사에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을 재청구하였다. 그 재청구된 영장의 피의사실 속에는 법관의 비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인격살인적 효과를 가져왔다. 판사들은 이러한 검찰의 행태가 개별 법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전체 사법부 및 법관들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했다. 판사들은 집단사퇴로 맞섰다. 판사들은 "중전 검찰이 ... 취해온 사법권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처사를 시정하고, 정당한 검찰권 행사를 촉구"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판사들은 "재판의 공정과 사법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례"를 수집하여 폭로했다. 7개 항목으로 정리된 내용을 보면 당시에 참으로 판사하기 어려웠겠구나 하는 느낌이 절로 든다. 권력의 구미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릴라치면 판사들은 용공분자로 비난받고, 신원조사·가정조사·통장조사 등 각종 사찰에 시달리고, 인신공격 모욕과 폭언 앞에 노출되었다. 최악의 사례는 법관의 영장기각을 둘러싸고 군대가 법정에서 난입한 일까지 있었다.

사법파동에서 보여준 소장판사들의 기개는 암흑시대의 직전에 보여준 마지막 불꽃이었다. 여론의 공세와 함께 그들은 일시 승세를 탔다. 야당과 여론의 지지에도, 각지의 판사들도 합류하고, 마침내 고법 판사들도 가세했다. 그러나 그들이 촉구했던 대법원장의 결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생을 양지로만 살아간 민복기라는 인물²⁾이 대법원장으로 있는 한, 사법부 수뇌의 대통령에 대한 도전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대통령은 자신의 중복이 된 검찰을 향해 인척할 생각은 아예 없었다.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정권은 1년 뒤 폭압적인 유신헌법을 공포하면서 '사법파동'의 주도자들의 법관직을 아예 박탈했다. 100명 이상의 법관숙청을 단행한 권력의 그 서술에 유신과 5공의 법원은 현저히 위축되었다. 1973년 대량숙청된 그 판사들은 변호사가 되었다. 그 중 일부는

1) 사법파동에 대한 잘 정리된 글로 이돈명, "사법파동," 신동아 1988년 1월호, 별책부록 「현대 한국을 흔든 60대 사건, 180~185쪽 참조.

2) 민복기(1913~2007)는 1939년 경성지법 판사로 출발하여, 검찰과 법원을 넘나들며 고위직책을 향유했다. 검찰총장을 거쳐 최장수 법무부장관(1963~1966), 최장수 대법원장(1968~1978)의 기록을 갖고 있다. 개인적으로 '놀라운 관운'을 누렸지만, 그 개인의 '관운'이 이 나라의 민주화와 인권신장, 사법부 독립과 위상제고에 무슨 기여를 했던가를 묻는다면 최악의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서전이나 회고록을 남긴 바 없다.





암흑기의 재판정에서 변호인단의 중추가 되었다. 아마도 유신체제는 대량의 사법피해자 시대를 열면서, 그들을 조력할 변호인단의 인력풀도 넓혀주었다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래 소개하는 글은 1971년 7월 30일에 발표된 <서울지법 건의문>이다. 당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형사지법 및 민사지법 법관들이 연석하여 신중한 의논 끝에,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시정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 위해 정리한 것이다. 문장의 길이가 편안한 읽기를 방해하지만, 어려운 시대에 신중히 표현하려는 마음가짐이 느껴지기도 할 것이다. 이 글에 이어 1988년, 1993년의 <사법개혁을 위한 소장판사들의 성명서>와 함께 읽으면 사법개혁의 역사적 흐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³⁾ 현재의 사법부에 대해서도 비판할 거리가 적지 않지만, 온갖 고난의 역정을 겪어서 이 정도까지라도 도달했다는 자부심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전문의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구했다. 한편 동아일보 1971년 7월 31일자 1면에 그 전문이 나와 있는데, 제목은 <司法權守護 건의 全文>이라고 되어 있다. 동아일보는 편집과정에서 위의 제목을 고른 것으로 보인다. 법관들의 신중함을 생각해 보면 필자가 본 것이 더 정확한 제목이 아닐까 짐작된다. 양자의 차이는 내용 면에서는 거의 없으나, 마지막 부분에 사법권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례를 동아일보본은 언급하고 있다. 아래 문건에서 【】처리된 부분은 동아일보본에 들어있는 것이다. 필자가 본 것에는 【】된 부분이 아니라 <>>의 부분이 들어 있다. 【】부분이 초안이고 <>> 부분이 최종안으로 짐작된다. 후자가 전자보다 더 신중하다. 그러나 당시 상황과 법관들의 결의를 볼 수 있는 사료적 가치는 【】이 더 낫다. 아래에서는 둘 다 다 포함시켰다. 독자는 이 두 부분 중 어느 한 부분만 읽어도 문장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글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서울지법 건의문

대법원장께서 휴가로 안 계시는 7월 28일 돌연한 사태가 발생, 긴장된 가운데 저희들 서울형사지법 법관들의 사표제출 문제가 나자 서울민사지법 법관들 40여명 역시 이 사태를 중시, 신중한 논의 끝에 이번 검찰의 태도는 그 동기가 사법권의 독립을 위협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의 사태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만일 저희들이 우려하는 방향으로 사태가 계속 진행된다면 저희들의 신분상 극한적인 사태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 합의를 보아 그날 참석자 전원내 내부적으로 합의를 본 사표제출 문제에 관하여는 일일 함구, 사태의 원만한 수습만을 주시해 왔다. 그간 재판실무자로 재판권 행사에 관해 검찰측으로부터 겪어온 작용 또는 압력은 성질상 배제 내지는 시정요구를 표면상으로 내세울 수는 없는 처지였다. 그런데 서울형사지법 법관들의 사표제출 동기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간 재판실무자로서 공정한 재판행사에 관해 종전의 일부 검찰측으로부터 내부적으로 작용해온 모순된 간섭 또는 압력등의 자율적인 배제 내지는 시정이 있도록 검찰측의 양식 있는 자숙자세를 촉구하는 취지에서였다.

이와 같은 시정은 공공연히 외부로 들추어 내세울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해 사표제출 동기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을 일부러 하지 않았는데 검찰측은 이런 취지의 사표제출 의도에는 아무 배려 없이 형사지법 판사들의 사표제출을 본 뜻과는 달리 동료 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 동료법관을 비호 동정하는 동료의식에서 나온 감성적인 처사라는 인상을 질게 하는 방향으로 처리 방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고 이에 따라 일반국민의 여론 또한 사표제출 계기가 검찰과 법원간의 단순한 갈등에서 벗어난 감정적 대립으로 넘기려는 동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빈축까지 사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진전은 법관들이 애당초 우려를 표시했고 바라지도 않은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상태의 진전으로 현재 위기에 당면하고 있는 사법권 독립을 위해 형사지법 및 민사지법 법관들은 당초 합의에 따라 30일 오전 오후에 걸쳐 연석하여 신중한 의논 끝에 그간 법관들이 공정한 재판권행사에 있어 검찰측으로부터 종종 겪은 시정될 사항에 속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몇가지 사례의 시정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합의했다.

무릇 사법권의 독립이란 입법권 또는 행정권에서 분리 독립하여 조직되고 기능하는 것으로 사법부의 자주성을 말하고 한편으로는 개개의 재판이 다른 어떠한 권력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하여지는 것으로서 재판관의 직권의 독립 또는 신분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재판이라는 국가작용이 정치나 행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을 선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법권 독립에 관한 논의는 구체적 사건을 계기로 촉발, 전개되고 깊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종래 법관이 자칫하면 독선적이며 관료적이라는 비난을 받아 온 점을 저희들도 스스로 반성하고 자계하여 소신에 의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을 기하는데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태 진전이 사법권독립의 수호를 위해 장애되는 사항이나 사례가 시정내지 배제되는 좋은 계기가 된다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형사지법 법관일동이 사표를 제출케 된 것은 동료법관에 대한 영장신청의 반발 내지는 비호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종전 검찰이 법원의 재판권행사에 관해 취해온 사법권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처사를 시정하고 정당한 검찰권의 행사를 촉구하는 한편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 상황아래서는 도저히 재판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였다.

이와 같이 재판의 공정, 나아가서는 사법권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례를 저희들 민·형사지법 법관들이 검토한 바에 따라 <7개 항목을 지적했건만 이에 대한>【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 내용은 형사지법법관들이 별도로 대법원장에 대한 건의에서 밝히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적시를 생략키로 했다.

①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영장발부로부터 선고에 이르는 과정까지 검찰과 견해를 달리할 때 담당법관을 용공분자로 취급, 공공연히 압력을 가하고 신원조사를 하는 등 심리적 압박작용을 조성한 사례 ②행정부에서 관심있는 사건의 담당법관에게 검사 자신의 명맥이 걸려있다는 말까지 하며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처사를 하고 있는 사례 ③일반 형사사건에 검사가 무죄 또는 공소유지가 곤란한 사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공소를 제기하고서 영장청구가 기각되거나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났을 때 그에 관한 상소심 판단도 받기 전에 법관이 부정판을 한 양 공공연히 비난을 하고 그 책임을 법관에게 전가하는 사례 ④사건 담당법관을 미행하거나 함정수사 가정조사 예금통장을 조사하는 등 방법으로 은밀히 재판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사례 ⑤구속영장을 법원 청구에 접수시키지 않고 검사가 직접 판사실로 가져와 발부를 강청하는 등 영장발부에 부당한 작용을 가하려는 사례 ⑥법원 내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그 진상을 조사하기 전에 무고한 법관을 피의자 취급하여 모욕 혐박 폭언 등을 서슴지 않는 사례 ⑦이번 사건의 경우에서 미행과 함정수사, 피의사실의 공표, 영장의 계속청구 등 일련의 사실은 종전에 취해온 사법권 내지 법관의 재판권 행사에 대한 위압적 작용을 거듭 노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구체적 내용은 형사지법 법관들이 별도로 대법원장에 대한 건의에서 밝히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적시를 생략키로 했다. 비단 이와 같은 상황은 서울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에도 있을 것이기에 앞에 적은 사법권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황아래서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기하기 어려운 만큼 대법원장께 시정조치를 건의하는 한편 이번 사태에 관한 검찰 관계자의 인책추구에 한하여도 아울러 언급있기를 첨원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시정과 보장이 없는 한 저희들은 종전과 같은 상황 아래서는 재판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제출된 사표에 의하여 사퇴하기로 결의했다.

1971년 7월 30일

서울형사지법민사지법 법관일동
위 대표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 俞泰興
서울민사지법 수석부장판사 朴勝浩

6월 거리월례회 촛불집회 1달 ‘집단지성을 말하다’

일시 : 2008. 6. 6. 저녁 5시 시청광장
참여 : 송호창, 진중권, 이재정
정리 : 김진

» 송호창 (이하 ‘송’) : ‘집단지성’은 사전적으로 “다수의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을 통해 얻는 집단적 능력”으로 정의하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를 이번에 우리가 보여주었던 이 행복하고 합리적인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진중권 선생님께서 집회의 상황, 시민들의 다양한 모습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면 거기에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한다.

» 진중권 (이하 ‘진’) : 그동안 세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참여해 왔다. 일반 시민으로서 집회에 참가하고, 리포터로서 집회를 중계했으며, 미디어 미학 학자로 관찰해 왔다. 그동안 많은 토론을 제안 받았으나, 상황이 아직 지나지 않고 관찰이 끝나지 않아 성급하다는 생각에 거절해 왔다. 그런데 이번 집회에서 활약한 민변의 요청에 코가 꺾여서 나오게 되었다 (웃음). 이 시위에 흥미를 느낀 첫 번째 이유는 지도하는 사람이나 주도하는 사람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점이다. 보면 알겠지만, 지도부나 지휘부도 없지만 시위보다 훨씬 컨텐츠가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예술적이다. 참여하여 항의하는 것도 좋지만, 집회를 즐기는 것에 쓸쓸한 재미가 있다. 굉장히 기발한 것이 많다. 마이크 잡은 경찰서장에게 “노래하면 해산한다”고 하는 등의 패러디, 희화들이 굉장히 진지하면서도 유쾌한 행사가 된다. 누가 지휘하거나 프로그래밍하지 않고, 각자가 플래카드나 몸자보, 조형물을 만들어 나오는 것이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다. 미리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를 기대하고 나오고, 그 기대가 충족된다. 마치 공연을 보는 것 같은 행사가 이루어진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개별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는 가운데, 행사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효과가 나오면서, 이것이 정보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뻘한 내용으로 진행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행진하면 끝나는 프로그램된 기존 집회와는 달리, 시작도 끝도 목적지도 안 정해져 있고, 개별자들이 그때그때 아무도 모르는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창발(emergence) 효과’라고 부르고 싶다. 지금 시민들이 하는 것은 천수만의 철새들이 보여주는 매스게임 - 충돌을 피할 것, 일

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장애물이 있으면 피했다가 다시 모일 것 등의 몇 가지 규칙(에티켓)만 공유하는 - 과 같다. 그 결과 하늘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바로 이번 촛불집회의 모습이다.

» 송 : 대중의 지도, 창발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다소 혼란스럽다거나, 정치투쟁으로의 변질 과정이라거나 이문열씨처럼 ‘내란’이라는 사람도 있다.

» 진 : 정치투쟁을 왜 하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정치가 잘못되어 그에 싸우는 것이 정치투쟁일 뿐. 그들이 말하는 정치투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정권타도나 탄핵 구호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런 자기네들도 다 했던 말이다. 우리가 한다고 내란이라고 하는 것이 우습다. 시민들이 하는 말은 화가 났다는 분노의 표현이지, 정말 정권을 타도하겠다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군사정권 때는 정당성이 없는 정부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민주정권 수립의 프로젝트가 있는 것이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럴 거면 내려와라”는 표현이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IMF 파국을 가져왔지만, 지금은 정치적 파국이다. 3개월 만에 7%의 지도도라니. 그 7%도 전무 HDD 아저씨들이나 할렐루야 아주머니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21세기 디지털 사회를 같이 가겠느냐. 시민들이 이러한 정치적 파국에 항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문열 씨에서 이야기하자면, 위대한 17세기 작가라고 할 수 있다. 400년 먼저 태어났다면 좋았겠지만, 너무 늦게 태어나서 혼자 ‘시대와의 불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21세기에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왜 나오는가. 흥경래의 난이라니... 디지털 대중 앞에서 은유법 자체가 너무 낡았다. 전에 “정치는 원래 대보에 속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적이 있다. 그러니 시민들에게 ‘민란’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대한민국 헌법 이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20년 전부터 고전 리사이클해서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소설이 안 나올 정도로 문학적 생명은 끝난 사람이다. 그런 분들이 과도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토론하자면 나오지도 않고, 조중동 뒤에서만 말한다. 걱정할 것 없다.



좌중박수

» 송 : 속은 통쾌하지만 소송으로 연결되어 저희가 바빠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웃음) 연관해서 조선일보가 광고반대운동을 하는 네티즌에게 고소고발을 하는 일이 있었다.

» 진 : 검찰이 정권에게 아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봤다. 황우석 사태 때 MBC 당할 때 손 놓고 있었던 검찰 아닌가? 그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 MBC는 해도 되고, 조중동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고소할 건덕지가 없다. 내가 안 사 먹겠다는데, 그게 협박인가?

» 송 : 조선일보의 광고반대 운동이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되는지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이걸 사실 조선일보가 독자를 상대로 고소한 것이다. 독자를 고소해서 어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 진 : 저 사람들이 저러는 건 그게 효과적이어서 그런 것 같다. 광고가 40~50%가 줄었다고 한다.

죄중박수

» 진 : 10년 전부터 했던 안티조선 운동에 눈 하나 깜짝 안했는데, 이번에 정색을 하는 것 보니 효과가 있긴 한가보다. 지면도 대폭 줄었다. 10면 이상 준 것 같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이러면 또 내가 선동한다고 할 테니 ... 바람직하다 (웃음). 광고주들이 한겨레·경향의 광고 계약도 같이 줄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러한 파편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관해 아이디어도 발전하면 집단지성의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한다(웃음). 이 정도 되면 언론은 “왜 우리가 이 꼴까지 왔는가”를

반성해야 한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정부에게 이야기해서 구속수사하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다. 인터넷에 대해서 “구속수사”라는 것을 남발하면서 억압적 분위기를 보여서 열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심리전이다.

» 송 :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미국산 쇠고기를 청와대부터 먹어라”는 사실이 나오자마자 조선일보 식당에 붙어 있는 “미국쇠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문구가 인터넷 UCC로 올라왔다. 이러한 참여의 구체적인 진행방식을 설명해 달라.

» 진 : 여기 나오신 분들이 더 잘 안다. 어떤 경로로 나왔는지 나는 잘 모른다 (웃음).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이 나오는 듯하다. 싸울 드

레서, 레몬 테라스, MLB, 이종격투기까지 다양하다. 과거처럼 주도단체가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자율적 양식이다. 아마 나온 사람들도 얼굴을 처음 보는 사람들일 것이고, 아이디어를 말하면서 인사하는 장면도 많이 봤다.

» 송 : 주성영 위원이 방송토론회에서 그런 소통방식을 ‘천민적’이라고 한 적이 있다.

» 진 : 그런 것 아니다. 이 사람이 내 글을 읽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더라(웃음). 네그리(Antonio Negri)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는 자율적인 것이었는데, 천민적으로 되었다”는 것이 정확한 워딩이다. 그런데 네그리는 극좌 이론가다. 네그리를 인용하면서 그런 말을 하기에 속이 뒤집어져 방송에서 피식 웃어 버렸다. 그 사람이 말한 ‘천민 민주주의’는 정치학에 없는 용어다. 누가 만들어 쓴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직접민주주의 요소들에 대해 거부감이 많은 것 같다. 이문열도 그렇고, 이문열은 지난 번 총선시민연대에도 시비를 걸었다. 대중이 그러한 의사표명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 송 : 질문과 답, 수정과 정정이 반복되면서 다양한 정보가 만들어지는 인터넷의 소통방식이 대통령의 소통방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 진 : 대통령은 소통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 자기가 CEO고 국민들은 사원이며, 내각이나 비서진은 심복이라고 생각한다. 소통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국민이 무식하다고 보고 계몽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광고를 때리는 방식으로 소통한다고 한다. 무엇보다 인터넷 소통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괴담’은 일상이다. 구글에 치면 수천 가지가 나온다. 인터넷은 쌍방향 소통을 바탕으로 한 2차 구술문화이기 때문에, 재밌지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걸러지고, 그 과정에서 진실로 다가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보지 못하고 몇 개만 뽑아내 따로 보면서 ‘구속하겠다’고 하는 걸 보면, 그 본질을 전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네트워크 소통과 자율적 행동방식이 바로 21세기의 생산의 패러다임인데, 이것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60-70년대 사고방식으로 농경사회의 사람들의 신체를, 군사적 규율을 동원하여 기계적 속도에 강제로 뜰 때의 패러다임, 리더십을 가지고 이 대중들을 상대하려다 보니 황당한 거다. 혼자 70년대 가서 혼자 잃어버린 10년, 아니 30년을 찾고 있는 것이다. 소통방식이 아니라 아예 소통의 패러다임이 문제다. 21세기적인 소통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하니, 대항 자체도 70년대식이다. ‘유언비어 유포죄’ 같이 죄목도 없는 것으로 탄압하려는 것처럼. 저런 마인드로 21세기, 세계적인 IT 인프라를 가진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지 걱정이야. 심뜩하다. 4년 9개월이나 남았는데.

» 이재정(이하 ‘이’) : 수다 떨고 싶어서 넘죽 마이크를 받았다. 나는 민변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법률가, 지성인 이미지 보다는 ‘집단’ 지성 중에서 ‘집단’ 속에 있다고나 할까. 네티즌의 소통방법 중 대통령이 배워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보았다. 댓글 문화를 이명박 정부가 배워야 할 듯. 카페에 글을 써놓고 하루에도 여러 번씩 들어가 본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댓글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고 있다. 이 정부가 댓글 정치를 한번 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 송 : 촛불집회는 처음에는 여중생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촛불소년들의 수다가 정국을 주도했고, 앞으로도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 같다.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것인가?

» 진 : 중고생들을 나오게 한 기폭제는 PD 수첩인 것 같다.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중고생이 민감했던 이유는 급식 문제 때문에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선택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 공포를 많이 느낀다. 자동차 사고보다 원전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훨씬 적지만 원전 사고에 많은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중고생은 선택할 수 없는 신체의 위험을 느낀 것이고, 0교시 자율학습 등을 몸으로 느꼈던 것 같다. 광우병 위험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나왔다기보다는, 신체의 본능적 거부감으로 나온 것이다. 이들이 기폭제가 되어 2~40대가 나오면서 이성적인 담론, 논리적 싸움으로 발전해 나갔다. 광우병 사태는 쇠고기 문제 뿐 아니라 인수위 시절부터 보여준 이 정권의 모든 닭짓에서 받은 국민들의 스트레스 위에 ‘생명권’이라는 원초적 주제가 없어지면서 터진 것으로 본다. 2~40대는 쇠고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과 의료보험 무력화 등 서민생활이 망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같이 가지고 나왔다. 폭탄에서 뇌관의 역할이 중고생의 시위였다면, 그 안의 폭발물은 정권이 만들어 준 것이다. 끔찍한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때를 맞아 터져 나온 것이다.

» 이 : 10대가 촛불집회에 나왔을 때 20대는 윈터걸즈 콘서트 표를 사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 있었다. 그냥 중고생이 아니라 ‘여’ 중고생이 먼저 나온 것은 어떻게 분석되는가?



»» **진**: 감성적인 부분이 있다고 본다. 저 쪽에서는 '선동되었다'고 트집을 잡고 있다. 자기가 설명이 안 되니까 PD수첩을 탓하는 거다. 여성이 더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 **송**: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50여 일 동안 광화문 일대를 누비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었고, 무엇을 배웠는가?

»» **참여자 1 (남)**: 소수자 배제를 느꼈다. 무대를 쌓고 단상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인데, 그 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닌가. 경사로를 한 번도 없었고, 수화통역은 나중에 나타났고... 광장이라기보다는 배제의 매카니즘이었다. 광장 정치 속에 장애인은 없었다. 돈만 있으면 수화통역 센터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데 그 돈을 안 들이려고 했다. 촛불집회도 우리 사회의 자본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구조적인 배제. 소통을 이야기하지만 그들만의 소통이었다. 구호 속에도 '병신'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이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칼라 TV도 자막이나 수화통역이 없다.

»» **진**: 자막이나 수화통역을 넣는 것은 칼라 TV 형태와 자본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분 자원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렵다. 방송에 1일 100만원씩 들어가는데, 전부 후원금 받아서 한다. 당에서 인준받은 것도 아니다. 며칠 전부터 흘러가는 자막이 나올 정도. 노트북, 와이브로로 하는 형편이다.

»» **송**: 아주 소중한 지적이었다. 정당한 구호를 외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분명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지적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참여자 2 (여)**: 민변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초창기 중고생들이 처음 모이는 첫날부터 나와 보았다. 자신이 386세대이고 군사독재와 민주화과정을 지켜왔고, 현재 두 아이들이 대학에 재학 중이다. 처음에는 내가 중고생 때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 괴리감을 많이 느꼈다. 몇 번째부터 딸하고 같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딸과 이야기도 하게 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정부의 대처를 보면서, 군사독재 시대의 경험 때문에 많이 겁을 먹고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집에 가곤 했다. 처음 물대포를 쏠 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날 물대포를 맞고 있는데 비닐과 담요, 옷을 모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 자리에서 딸을 데리고 도망치면서 나의 억눌린 감정에 대해 많은 자책을 했다. 이 국면에서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희망을 느낀다. 요즘 아이들에게 버릇이 없고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어렸을 때도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 **참여자 3 (남)**: 많은 촛불집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것은 반성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도 반성할 것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처음부터 반대했다. 이유는 "어떻게 살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선례를 남기기 때문이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오래지도 않아 강부자 내각으로 그걸 보여주었다.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선거 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 **참여자 4 (여)**: 촛불집회 처음 시작 때부터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다. 교복 입은 촛불소녀라고나 할까(웃음). 가장 많이 느낀 것은 국민들의 힘, 인터넷의 힘이다. 인터넷으로 자발적으로 촛불집회를 만든 것이다. 나도 카페를 보고 나왔는데, 누구에게 선동되지 않은 자발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막상 집회 현장에 나오면 알 수 있다. 집회이기 이전에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이자 문화였다. 자발적이고 자유롭고 폭넓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제일 좋았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광우병 이야기를 매우 웃으면서, 재밌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까지 유쾌하지는 않다. 유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 나오는 사람이 더 다수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재미난 것은 벌써 열세 번째 나오다 보니 여기가 아주 익숙해진다는 것이다. 안양의 모학교 친구들, 광우병을 재미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대통령님에게 이 문제를 제대로 어필해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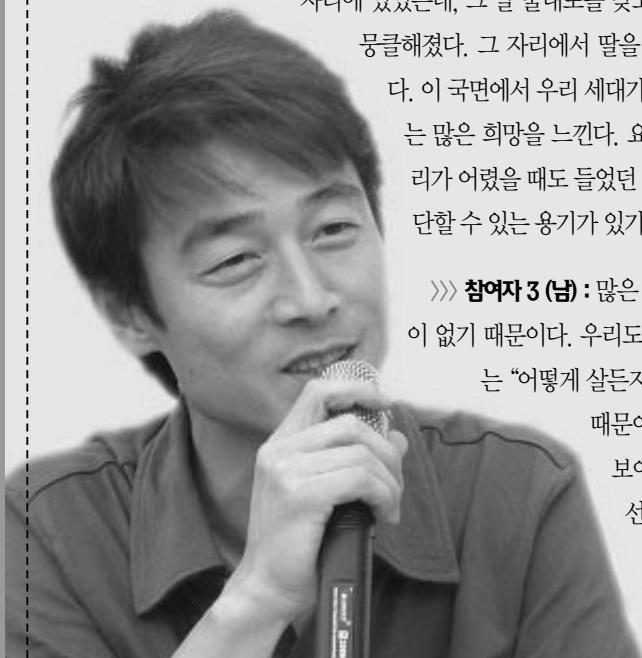
좌중박수

»» **송**: 박정희나 이명박 대통령 모두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문제인데, 이런 학생들을 보면 그 분들이 아니어도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 시민 발언을 잠시 미루고, 촛불집회 과정에서 민변의 활동과 느낌에 대해서 이재정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이**: FTA하면 떠오르는 송기호 변호사님을 필두로 해서, 작년 FTA가 체결되던 당시부터 거리 집회의 현장까지 함께 하고 있다. 시민들이 다소 격양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민변이 창립 20주년 행사를 하면서 20년을 돌아보던 그 시점이었다. 그 때를 계기로 현장에서 '인권침해감시단'이라는 노란 조끼를 입고 거리에 함께했다.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더 많다. 하지만 실정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많아 안타까운 무력감도 많다. 지금은 많이 다친 시민들을 대리해서 경찰청장 등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묻는 활동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공간이 침해될지 걱정인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있어야 할 공간에서 묵묵히 일하고자 한다.

»» **송**: 228명이 연행되었을 때 몇 개 경찰서에 접견을 갔는데, 한 수사관이 했던 말이 인상적이었다. 사고는 정부가 치고 뒤처리하는 시민들과 경찰이 한다는 말이였다. 그 경찰관은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다고 한다. 새벽에 들어오는 연행자들을 조사하느라고, 연행자에게 "석방되면 또 집회 갈 거냐"는 질문을 하면, 열이면 열이 다 "그러겠다"고 한다. "여기서 나가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설득을 하면서 "나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조서에는 '생각해 보겠다'고 적겠다"고 한단다. 집회참가자 - 경찰과의 충돌, 집회참가자들 사이에서의 충돌이 있었고, 특히 이재정 변호사는 변호사 배지를 달고서도 연행되었던 변호사로서 남달리 느낀 바가 있었을 것 같은데?

»» **이**: 변호사이기에 앞서 가슴이 뜨거운 젊은이다 (웃음). 중립적인 지위에서 인권을 감시하는 지위라고는 하지만, 물대포도 방패도 무서웠다. 연행되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는 변호사로부터의 소회보다는 "이 시대가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다"는 생각이 더 컸다. 연행되던 날이 특공대가 처음 투입된 날인데, 연행된 다음 처음에는 그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살수차에 조금만 맞고, 방패에 조금 맞을 수 있어서. 한참이 지나서야 변호사로서의 지위가 생각이 났다. 한참이 지나서야 불법 체포에 항의할 수 있었다. 또한 수사관 앞에서 질문을 받고 보니 많이 위축되었다. 변호사로서 접견을 갔을 때와는 전혀 달랐다. 다그치면 어느새 대답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공권력이란 그런 것인가 보다. 그 힘이 엄청나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필요한 것 같다. 정당하지 못한 공권력이라도 얼마나 시민들이 많이 위축되고 힘없이 날아가 버릴 수 있는지를 실감했다. 변호사의 조력이 간절하고, 공권력에 얼마나 많은 감시가 필요한지를 생각했다. 같이 연행되었던 변호사와 함께 “입건처분 취소”라는 희귀한 소송을 시작했다. 한홍구, 진중권 교수님과 같이 연행되었는데, 저희만 입건이 되고 두 교수님은 불입건이 되었다. 샘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웃음), 입건과 불입건이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신분이 되고나서야 그걸 의심하게 되었다. 그래서 초유의 소송을 시작하였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정당한 권력행사처럼 보이는 것에도 많은 권리를 침해당한다. 무자비한 폭력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빈틈을 메우는 일을 하기 위해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노란조끼를 입고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요청을 받았다. 때로는 전경들이 염려되어 시위대들에게 제안을 했다가 욕을 먹기도 했다. 경찰들로부터는 “시위대와 같은 편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 없다”는 취급을 받기도 했다. 스티로폼을 쌓던 날, 시위대들 속에 몸싸움이 있었다.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해결책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가갔지만, 참가자들끼리 토론을 통해 중재안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청을 받았다. 때로는 전경들이 염려되어 시위대들에게 제안을 했다가 욕을 먹기도 했다. 경찰들로부터는 “시위대와 같은 편이기 때문에 존중할 수 없다”는 취급을 받기도 했다. 스티로폼을 쌓던 날, 시위대들 속에 몸싸움이 있었다.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해결책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가갔지만, 참가자들끼리 토론을 통해 중재안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좌중박수

» **송 :** 집단지성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가자. 과거의 황우석 사태나 디워 논쟁을 보면 꼭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시행착오와 오류가 언제라도 발생하고, 잘못된 정보 속에서는 파시즘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가능성과 함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 **진 :** 정확히 말하면 미디어 이론에서는 ‘집단지성’이 아니라 ‘대중지성’이라고 알고 있다. 두 가지 점이 다 있다. 선형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지를 알 수는 없다. 어떤 때에는 대중이, 어떤 때에는 전문가가 옳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황우석·디워 때는 대중이 틀렸고, 이번에는 대중이 옳았다고 본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사과했고, 추가협상을 했다. 광우병 쇠고기로부터 그만큼 안전해졌다는 면에서는 성과도 있어, 증명도 되었다고 본다. 그것이 지성의 힘이 아닐까. 대중 ‘지성’은 집단 ‘감정’과는 다른 것이다. 인터넷 대중이, 엘리아스 카네티(Elias Canetti)가 말하는 ‘추적군중’ - 파시스트적인 위험성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네그리가 말하는 자율적인 다중(Multitude)의 양면을 다 가진 야누스 같은 존재라고 본

다. 이번에는 자율적인 다중이라고 본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대중지성의 창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소한 폭력도 있다. 상대가 권력집단이나, 무력한 개인인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 폭언이나 폭설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정당하기 때문에 풍자나 해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조심하면 큰 문제는 없다.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의 힘에 도취되기도 하고, 위험성에 놀라기도 하면서, 그렇게 진화해 갈 것이다.

» **송 :** 대중지성의 위험성과 더불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길거리에 있을 수는 없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나 정치권도 다 아는 것이니, 이 정도면 제도 정치권에 넘기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는데, 대중지성의 위험성과 관련해서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인가?

» **진 :** 시민들이 여러 번 토론을 했고, 결정이 나오면 따르게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생업을 팽개치고 계속 나올 수는 없으니 정치권이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받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야당 대표들이 모여서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정부대책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촛불집회 규모에 연연하지 말고 - 그것 자체가 명박스럽다 - 작은 규모라도 창의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장기전 태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정당 활동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는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의 결합으로 이루어져야 하니까. 대의제가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할 때 직접민주주의적인 거리의 정치가 시작되는 것. 하지만 모든 대안을 거리에서 찾을 수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 정당정치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대중의 의지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시하면서, 온·오프라인의 직접민주주의가 함께 가야 한다. 그리고 이 사태의 또 하나의 배경에 있는 언론 문제가 있다. 방송과 인터넷 덕분에 이 정도의 의제화가 가능했는데, 보수정권의 방송 장악이 본격화되고 있다. 쇠고기에 묻혀서, 방송이나 교육처럼 중요한 이슈를 이 정권이 거저먹을 수 있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 이유는 정권이 4-5년이라는 것 때문이다. 그 때까지는 괜찮다는 생각인 거다. 다행히도 ‘서울시교육감 선거’라는 정권 재평가 계기가 있다. 이 미처버린, 돈이면 무엇이든 다 된다는 70년대적 마인드를 가진 정권과 교육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으니 놓치지 말아야 한다.

» **송 :** 이렇게 거리에서 주장하는 바가 제도정치권 내에서 수용되고 정책으로 외화될 때 사회가 나아질 텐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정당이 없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 한편으로는 믿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 정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언제라도 긴장과 경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이나 기성 언론,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의 주장과 감시 활동을 날카롭게 해나가는 기능들이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것이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상화되어야 한다.

» **진 :** 흔히 ‘정치 혐오증’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정치혐오증의 결과이다. 최악의 대통령. 무엇이 나아지지는 않고, 유래 없는 최악의 대통령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게 된 것. 쿨 하다고 생각하는 정치혐오증이 바로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 **송 :** 여러 가능성과 희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리좌담회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진행될 수 있을 것.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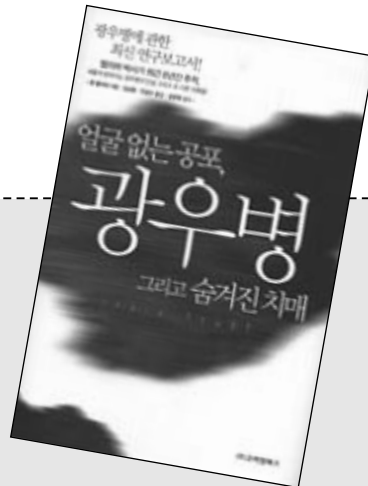
» **이 :** 제도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집시법 때문에 우리 모두 범법자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제도 속에서 고쳐지고 나아져서, 헌법 속 권리인 집회의 자유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얻어내야 할 것이다.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그리고 숨겨진 치매

일 시 : 2008. 7. 15.(화) 19:00

참석자 : (가나다순)김선수, 송호창, 이오영, 좌세준, 최병모, 한택근, 황희석, 사법연수생(정00)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그리고 숨겨진 치매』
콜 켈러허(Colm A. Kelleher) 지음, 김상윤 옮김
고려원북스(2007. 2. 27)



민변 공부모임이 시작된 것은 2007년 3월입니다. 벌써 1년 반이 되었습니다. 격주로 진행되는 공부모임에는 10여 명의 회원들이 고정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읽은 책을 꼽아보았더니 30권 가까이 됩니다.

“연수원이나 신입변호사 시절에 이런 책을 읽고 토론할 수 있었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것이다” - 공부모임을 시작할 당시 민변 창립 당시 회원인 선배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이 복간되면서 우리 공부모임에서 함께 읽은 책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연암이 말했다지요. “책은 정해진 주인이 없고, 선(善)을 즐거워하고 배움을 좋아하는 자가 이를 소유할 뿐이다.” - 함께 읽고 이야기하며 ‘앎의 코윈’을 꿈꾸는 여러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좌세준 회원)

» 좌세준 :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모임에서 선정한 책은 「얼굴 없는 공포, 광우병 그리고 숨겨진 치매」입니다.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고 10만 명 가까운 청구인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오늘 발제는 헌법소원을 포함해서 ‘민변 법률지원단’을 이끌고 계시는 최병모 변호사님께서 직접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듯합니다.

» 최병모 : 안녕하십니까. 발제라기보다는 이 책을 포함해서 제가 읽은 광우병 관련한 여러 책들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함께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우병에 대해서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관리들이 “별로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논리를 보면 “명백한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았다. 쇠고기를 먹는다고 다 광우병 걸리는 것도 아니지 않나?” 하는 것인데, 이걸 한마디로 “잘 모르면서 왜 위험하다고 하느냐”는 식의 논리지요. 반면 광우병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쪽은 “감염경로나 발병원인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 더 위험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더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점이지요.

Prion이 발병인자인 질병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광우병의 전염인자를 Prion이라고 명명한 사람은 미국의 프루시너(Stanley B. Prusiner)입니다. Prion이라는 명칭은 단백질protein과 감염성infectious이라는 단어를 결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Prion이 발병인자가 되는 질병을 보면 먼저, 스크래피(scrapie)는 ‘긁다’라는 뜻을 가진 ‘scrape’라는 단어에 ie가 붙은 것인데, 양들이 이 병에 걸리면 양이 가려워서 벽에다가 온 몸을 심하게 비벼 대서 털이 다 빠지고 피가 흐를 정도가 된다는 병입니다. CWD(chronic wasting disease, 만성소모성질환)는 북미의 엘크 사슴에서 발견된 건데 소모성질환이라는 명칭에서 보듯 이 병에 걸린 사슴들은 기운이 빠져서 시들시들 조는 상태에 빠지다가 차츰차츰 쇠약해져 죽게 되는 병입니다. TME(Transmissible mink encephalopathy, 전염성밍크뇌증)는 미국에서 1947년부터 보고된 것인데 양의 시체를 갈아서 먹인 밍크에서 발견된 병입니다. 밍크가 이 병에 감염되어 수 천 마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해면상뇌증), 문제의 광우병입니다. 영국에서 1985년 4월 홀스타인 젖소에서 처음 발견되었고, 젖소에게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육골분 사료를 먹인 것이 원인인 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1993년까지 영국에서만 12만 마리 소가 BSE로 폐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국정부는 처음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11년 동안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부인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영국 정부가 육류가공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이었다는 거지요.

이상은 동물들에게 발병하는 병이고 사람에게 발병하는 질병으로는 sCJD(sporadic CJD, 산발성 크로이츠펠트 야코브 병)와 vCJD(variant CJD,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코브병)가 있습니다. sCJD는 과거부터 100만 명당 1명 꼴로 발생해 온 병이라고 하고, vCJD는 인간광우병으로 알려진 병인데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은 사람이 감염되는 질병입니다. 문제는 두 병의 차이점인데 “sCJD는 전혀 광우병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영국이나 미국 정부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공식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sCJD도 vCJD와 같이 오염된 고기를 먹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연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209쪽) 그리고 sCJD의 발병원인이 ‘자연발생적’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자연발생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질병의 발병원인을 추적하는 역학조사의 경우 “특이성이 없으면 추정이 불가능하다”라는 원칙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발병이 특정한 연령이나 지역, 어떤 음식을 먹은 경우에 발생한다는 추적이나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최근 sCJD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특이성을 추적하는 연구를 하는 학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사망한 사람의 뇌를 먹는 식인풍습에서 발병된 것으로 보고된 파푸아뉴기니 포레부족의 Kuru병과, 가족감염 형태로 일단 감염되면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죽게 되는 FFI(fatal familial insomnia,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 등이 있습니다.

DNA 없이 복제될 수 있는 불멸의 전염인자

스크래피를 연구하던 학자들은 그 전염인자가 포름알데히드나 섭씨 600도의 고온살균으로도 죽지 않으며 심지어는 방사선에 쪼여더라도 살아남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스크래피에 걸린 양을 방목했던 초지에는 3년이 지난 후에도 그 전염인자가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지요. 이 책에서는 ‘불멸의 전염인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114쪽), 종래 분자생물학의 도그마와는 달리 DNA 없이도 복제되는 전염인자를 설명하는 여러 연구들이 진행된 끝에, 스크래피 전염인자가 단백질로만 이루어졌다는 이론이 점점 인정을 받기에 이릅니다.

이와 같은 Prion은 주로 소의 뇌, 척수, 회장원위부, 눈, 비장, 편도 등에서 발견되는데, 사슴의 경우에는 코 점막에서, 그리고 이 책에서는 스테이크 등 고기만 잘라낸 쇠고기 살코기의 경우에도 뇌와 척수만큼은 아니지만 Prion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299쪽)

감염경로와 긴 잠복기

미국의 가이듀섹(C. Gajdusek) 박사는 파푸아뉴기니 포레족에게 발생하는 Kuru병 연구와 함께 Prion 감염연구에서 소, 사슴, 돼지, 닭은 물론 영장류 사이에 광범위하게 교차 감염된다는 실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감염임계량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한 연구결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0.5g의 prion으로 감염된다는 보고가 있고, 외과수술 기구로 전염된다는 사례보고가 있습니다.

영국에서의 광우병과 인간광우병 발생 사례를 놓고 보면, 사람에 대한 경구 전염성은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영국에서는 1985년 최초로 홀스타인 젖소에서 광우병이 보고된 이후, 영국 정부가 계속부인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1996년경에 가서야 인간광우병 감염사례를 인정했지요. 그런데 영국에서 1996년경까지 인간광우병으로 보고된 사람이 약 20여명 정도였는데, 오히려 영국 정부에서는 이런 결과를 보고 “오염된 쇠고기를 먹는다고 다 vCJD에 걸린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죽은 환자들을 부검을 통해 검사한 결과 그 중 5?13% 정도가 CJD로 사망한 것임이 확인되었던 사실, 그리고 긴 잠복기 등을 감안한다면 CJD의 발병사례는 아직 정점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저자의 견해입니다.

유전적으로 감염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연구결과

이 책에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었던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uru병과 파푸아뉴기니 Fore족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Kuru병에 걸린 사람의 뇌를 먹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단백질 염기서열 129번에서 이형접합성(heterozygous)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동형접합성(homogygous)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CJD나 Kuru병에 걸릴 위험성이 더 높았고, 일단 CJD에 감염되면 증상이 빨리 나타났고 사망에 이르는 시간도 짧았다는 것이지요.(137쪽) 그런데 이 책의 번역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유럽인과 미국인의 경우 약 40%가 동형접합성 Met/Met 129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인은 95% 이상이 동형접합성 Met/Met 129를 가지고 있다는 국내학자의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전망과 한국에서의 문제

이 책에서는 영국과 유럽에서는 2010년이 CJD 질병의 정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1970년대 말 또는 1980년대 말 오염된 고기를 먹은 것이 감염의 시작이라면 영국에서 vCJD가 쇠퇴하고 있다는 현재의 발표는 잘못된 전망이라는 것이지요.(209쪽)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경우는 2013년이 그 정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책에서는 미국의 경우 1979년과 2002년의 알츠하이머병 사망자를 비교하면 8,902%가 증가하였는데 그와 같은 이유가 단지 질병 분류의 변화나 진단상의 문제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CJD가 알츠하이머병과 증상이 매우 비슷하고, 현재 CJD의 확진법은 사망한 환자 뇌조직을 현미경 검사하는 방법이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많은 CJD 환자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오진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할까 생각해봅니다만, CJD와 관련한 통계자료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상황인 듯 합니다. 이 책에서도 CWD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우리나라에서 엘크의 뿔을 수입한 사례나(248쪽), 전국에 사슴 사육농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현상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작세준** : 예,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저희들이 선정한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과 자료를 준비하셔서 발제를 해주신 최변호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문제된 이후, 광우병에 대한 정보는 많은데 잘 정리된 자료를 찾기 힘든 면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책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을 잘 정리해볼 수 있는 책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문제 삼고 있고 오늘 밤 ‘PD수첩’이 자체 해명 보도도 한다고 합니다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영국 정부가 10여 년 동안이나 광우병 발생을 옹호하려고 CJD 환자 발생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영국 언론이 보여 준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국의 <선데이 텔레그래프>의 보도나, 광우병 소를 소각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작가 데이비드 잭슨의 사진을 영국 텔레비전과 신문이 보도하면서 대중들이 광우병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반면, 미국에서는 광우병을 주제로 한 토론을

진행한 ‘오프라 윈프리 쇼’ 방영 후 오프라가 미국 축산업계로부터 소송을 당해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이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216-218쪽) 제레미 리프킨이 쓴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 미국 축산업계가 약 150여 년 전부터 강고한 기업 연합을 형성하여 온 역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축산업계 종사자가 미국 농무부 고위 관리가 되기도 하는 사례를 보면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미국 축산업계의 반응을 이해할 만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 책의 저자는 분자생물학 연구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의사나, 생물학 전문가가 이런 대중적인 소개서를 출간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 **최병모** : 이 책의 저자는 대단히 방대한 자료와 20년에 걸친 추적을 통해서 이 책을 썼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 정도 책을 낼만큼 광우병이나 CJD 연구 사례들이 쌓여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 **이오영** : 미국에서도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환자들 속에 CJD 환자들의 숫자가 숨겨져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런 위험성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일까요.

» **최병모** : 물론 그런 위험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산 쇠고기 고시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소 이력추적 추적시스템과 광우병 발생 방지를 위한 광범위한 샘플조사나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황희석** : 지난번에 우리나라 소 도축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소를 도축하려면 수의사들의 도축허가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TV 프로에서는 수의사들이 한 밤 중에 50만원을 받고 도축허가서에 도장을 찍어주고 가는데 차에 실려 있는 상태의 소만 보고 그냥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 중 상당수가 다우너 소도 있었고, 사실상 도저히 식용 고기로 쓸 수 없는 소였던 얘기죠. 도축할 수 없는 소인줄 알면서도 수의사가 도장을 찍어주고 가버린다. 그 이유는 일반적인 고기로서 팔면 4~500만원인데 그렇지 않으면 전혀 가치가 없는 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축산농가업자들이 어떤 방법을 쓰든 도축을 하려 한다는 것이죠. 저는 어느 나라이든 실제 도축될 수 없는 소가 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경제적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병모** : 영국에서의 사례를 보더라도 황변호사 말은 맞아요. 영국에서도 처음에는 광우병 걸린 소를 소각하면서 그 소에 대해서는 시가의 50%만 보상해주었거든요, 그러자 나타난 현상이 축산 농가들이 광우병이 의심스러운 소를 소각처분해서 50%만 보상받느니, 아예 팔아버리거나 도축을 강행해버린 거죠. 결국은 영국 정부가 100% 보상하고 소각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었다고 합니다만, 영국 사례는 반면교사로 삼을 만합니다. 영국에서는 광우병 문제를 계속 은폐하려 했기 때문에 정작 광우병 사태가 터지고 나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이라는 반성이 있다고 합니다. 열린 자세로 충분히 대비했다면 오히려 미리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 **좌세준** : 이 책을 보면 영국에서 최초 광우병이 발생한 후 유럽에 광우병이 광범위하게 퍼진 이유가 영국이 자국의 육골분을 인근 국가에 수출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경제논리가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미국산 쇠고기 문제도 미국 축산업계의 이해관계가 숨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 **김선수** : 미국에서는 축산업자들이 농무부 관료가 되는 사례나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그런 현상이 더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황희석** : 주제를 좀 돌려서 말씀인데, 아까 최변호사님 발제하신 내용처럼 스크래피에 걸린 양들이 방목된 목장에서 3년 이후에도 전염되는 사례가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Prion 질환의 경우 전염 경로는 “특정해서 이런 거다”라고 한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스크래피에 걸린 양이 뜯어 먹었던 초지에 양의 침이

나 피부조직이 남아 있다가 이런 것들이 다시 다른 동물들에게 섭취가 되었을 때에도 그것만으로 감염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 헌법소원에서 광우병 감염경로에 대한 과학적 증거자료들이 제출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 **김선수** : 공개변론이 열릴 것으로 보는데 그런 증거자료 제출도 가능하겠지요.

» **송호창** : 국내외 광우병 전문가가 참고인으로 채택된다면 청구인 쪽으로 나오는 정부측으로 나오는 참고인신문을 통해서도 변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최병모** : 물론 준비하여야겠지요. 그리고 이걸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광우병에 대한 통제는 정부에만 맡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예 민간차원의 단체나 재단을 만들어서 ‘청정 소 인증 시스템’을 도입한다거나 광우병 검역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합니다.

» **황희석** : 한우라든지 외국에서 수입되는 소나 쇠고기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정부가 하지 않는다면 민간 차원에서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 **김선수** : 이 책을 보면 미국 농무부에서는 일본처럼 전체 소 100%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을 때 “모든 소를 검증하는 전수검사를 비과학적이다”라는 이유로 반대한 사실도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한택근** : 광우병이 헌혈을 통해서도 옮길 수 있다는 이유로 영국에 유학하였던 사람들이 헌혈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는데, 인간 광우병을 진단할 수 있는 의학적 방법들도 연구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 **황희석** : 우리나라에서 우유를 수입하지는 않습니다만, 영국에서 홀스타인 젖소에서 처음 광우병이 보도되었다는데 우유를 통한 전염 가능성은 없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좌세준** : 참고로 농림부 자료에 의하면 “우유 및 기타 낙농제품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 **최병모** : 영국의 경우 홀스타인 젖소에서 광우병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젖소의 경우는 우유량을 늘이기 위해서 사실상 착유가능한 기간 내내 육골분을 먹어 왔다는 것이지요. 일명 ‘육골분 케이크’를 우유를 짤 수 있는 기간 동안 계속 먹인 반면, 육우는 보통 때는 다른 사료를 먹다가 출하 전 1개월 전에 집중적으로 육골분을 먹이는 방법 때문에 젖소의 경우 훨씬 더 광우병 감염 사례가 많았다는 거죠.

» **송호창** : 이번 책은 그동안 우리 독서모임에서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시사성을 반영한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읽을 책이나 주제를 이야기해보았으면 합니다.

» **좌세준** : 예. 오늘 독서모임에서 발제를 해주신 최변호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공부모임은 여름 휴가 일정 등을 고려해서 8월 12일로 정했습니다. 다음 읽을 책은 황희석 변호사님이 추천한 「자원전쟁」입니다. 이 책도 최근 석유값 인상 등을 반영한 시사적인 내용을 담은 책이 아닌가 합니다. 황변호사님이 다음 발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부모임에서 올해부터는 일정한 주제를 정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법사상서를 주제로 해서 읽었고, 그 다음 주제로 역사서를 몇 권 읽었습니다. 다음 주제로는 지난 번 모임 때 인물평전을 읽어보자는 김선수 변호사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9월부터 인물 평전을 읽을 수 있도록 도서목록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수** : 8월 마지막 주(8. 26.)에는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서진 미래」를 함께 읽으면 어떨까 합니다. 작가 또한 비슷한 위치에서 형태로 된 책인데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 종사자들을 다룬 책이라 함께 읽기에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 **좌세준** : 예. 그러면 8월 마지막 주에 「부서진 미래」를 함께 읽기로 하고, 9월부터 인물 평전을 읽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모임에 참석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Prion 이 발병인자로 추정되는 질병

Scrapie

18세기 초 이미 북유럽, 오스트리아-헝가리에 양의 전염성 질병으로 존재했다는 자료가 있으며, 품종개량을 위한 양의 지나친 근친교배가 저항력을 약화시켜 18세기 경 대유행을 가져왔다고 주장되고 있다.

CWD(chronic wasting disease, 만성 소모성 질병, 광록병)

북미에서 사슴, 엘크사슴 등에 나타난 질병이다. 1967년, 1974~79년 미국 콜로라도주 등지에서 확인되었고 최근 폭발적인 확산상태가 보고되었으며, Max에 의하면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현존 엘크사슴을 절멸시키고 감염되지 않은 순수종을 이식하려는 계획까지 수립했다고 한다. CWD의 빠른 감염속도에 놀란 미 농무부는 2001년경 이 질환을 '국가적 응급사태'로 선언하였고, 북미에서 CWD 전염범위는 1990년대 초 영국에서 BSE가 최고 정점에 도달했을 때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발병원인은 동물질병연구소에서 실험으로 prion 질병에 감염된 실험동물이 야생으로 도망친 결과, 또는 1960년대 동물질병실험 중 합사 후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야생에 놓아주었던 scrapie에 걸린 양으로부터 감염되었거나 그 밖에 사슴사냥광들에게 건장하고 뿔이 잘 발달된 숫사슴을 제공하기 위해 사슴사냥추천업체들이 야생 엘크사슴을 포획해(downer 소의) 육골분 사료를 먹여 사육한 후 사냥지역에 방사하거나, 그냥 사냥지역에 육골분과 설탕 등을 첨가한 사료덩이(일명 cake)를 뿌린 결과로 prion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

TME(transmissible mink encephalopathy, 밍크뇌증)

이미 1947년대부터 미국에서 보고되었으며, 미국에서 양의 사체를 갈아 먹인 밍크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1963년에는 미국에서 다루너 소를 먹인 밍크에서도 발견되었다고 보고되었다.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해면상뇌증, 광우병 mad cow disease)

영국에서 1985. 4. 처음 확인되었으며 scrapie에 걸린 양의 사체를 육골분으로 만든 사료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젖소의 단백질보충을 위해 육골분 사료를 많이 먹이던 영국에서 1992년 말까지 10만 마리 가까운 소가, 1993년까지 12만 마리의 소가 BSE로 폐사하였고, 1996년까지 24만 마리 이상 폐사했다는 해설이 있다. 영국은 이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200만 마리 이상의 소를 살처분하였다. 2006. 6. 미국은 2005. 6. 텍사스에서 발견한 광우병과 2006. 3. 앨라배마에서 발견한 광우병 소가 전형적인 BSE가 아닌 변종 BSE라고 발표(2006. 6. 27. 자 한겨레신문)하였는데, 그렇다면 또 다른 변종의 광우병 위험도 있다고 보인다.

sCJD(sporadic Creutzfeldt-Jacob Disease,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코브 병)

과거 100만 명당 1명꼴로 자연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진 질병으로, 1913년 폴란드에서 처음 보고되었다(1913년 폴란드의 Alois Alzheimer가 운영하는 병원 의사 Hans Gerhard Creutzfeldt가 발견하고 그 수년 후 독일의 Alfons Maria Jacob가 재확인). 그 후 1984-85년경 인간사체의 뇌하수체에서 성장호르몬을 정제하여 왜소증 소년에게 투입하는 치료법

에서 정제된 성장호르몬이 sCJD 환자의 뇌로 오염되어 다수의 CJD 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따라서 sCJD의 경우도 그 발병인자는 전염성이 있다. 또 미국에서는 CWD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에서 sCJD가 다수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미 농무부, 질병관리센터(CDC)는 광우병 쇠고기로 전염되는 것은 vCJD이고 sCJD는 광우병 소와는 결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나 최근 많은 학자들이 sCJD 역시 발병인자의 전염으로 발생하는 질환인 것으로, 또 CWD, BSE로부터 감염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정해 가고 있다. sCJD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육식을 자주 하는 사람들의 경우 발병율이 3.3배까지 높다는 보고가 있다.

vCJD(nvCJD, (new) variant CJD,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코브 병, 인간광우병)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로 경구감염되는 질병. 1993년경 영국에서 최초로 확인되었고 BSE에 감염된 소를 돌보던 농부도 감염된 바 있다. 현재까지 약 150명이 사망하였고 채식을 하던 소녀에게도 발병되었다. vCJD는 sCJD에 비하여 뇌의 병변에 있어 amyloid 반이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성상(星狀)세포astrocytes가 더 크게(화려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또 증상을 설명한 자료들을 보면, sCJD가 중년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발생하며 기억력감퇴 등 대뇌의 침범 증상을 보여 치매가 먼저 찾아오는 경향이 있는 반면 vCJD는 젊은이들에게 발생하고 소뇌의 침범으로 운동신경의 마비를 1차적 증상으로 하며 치매가 나중에 찾아오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경향일 뿐 명확히 구별되는 특징이 아니라고 한다.

Kuru병

파푸아 뉴기니 포레(Fore)족에서 1950년대에 확인된 Prion 질병의 일종으로 Kuru 에 걸려 사망한 사람의 뇌 등 시신을 먹는 식인풍습으로 전염되었다. 최초 sCJD에 걸린 사람의 시신을 먹는 것으로부터 확산된 것이 아닌가 추정되고 있다.

FFI(fatal familial insomnia, 치명적가족성불면증)

유전성질환으로서 발병가족력이 있는 집안의 2분의 1 가량의 구성원에게 유전적인 원인으로 50대 후반경 발병된다. 초기증상은 동공이 축소되고 목이 이상한 형태로 경직되며 땀이 많이 나고 그 후에는 극단적인 불면증과 환각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며 고도의 만성알콜중독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유전적 원인에 의해 뇌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prion이 뇌의 thalamus(시상 視床)을 침범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현재 전 세계에 40여 가족 정도가 있고 그 밖에 유전성 CJD 또는 GSS를 앓고 있는 가족을 합하면 모두 300가족 정도라 한다.

게르스트만-슈트로이스러-샤인커 증후군 (Gerstman-Str?ussler-Sheinker Syndrome, GSS)

매우 희귀하고, 대체로 가족성이며, 20세에서 60세 사이의 환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치명적 퇴행성 질병이다. 전염성해면상뇌증(TSE)의 일종으로 정확한 발생률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10억명 당 1-1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족성 발생 사례들은 상염색체 우성 유전과 관련이 있다고 하고, 기억력상실, 운동부조화, 때때로 치매증상을 보인다. 뇌부검 소견상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plaque가 발견되나 죽은 신경세포와 성상세포는 발견되지 않는다 한다. ❄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 가입하기



필자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2008. 5.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회의 중 5. 6.과 7. 이틀 동안 열린 두 번째 세션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민변에서는 위원장이신 김병주 변호사님, 한양대의 박찬운 교수님과 제가, 그리고 다른 시민단체들 중에서는 참여연대에서 전은경 팀장님,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명숙씨, 국제민주연대에서 변연식 대표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조시현 교수님, 안선미씨 등이 각 이번 UPR의 NGO 참가단으로 참여하였다.

필자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2008. 5.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회의 중 5. 6.과 7. 이틀 동안 열린 두 번째 세션에 참석하고 돌아왔다.

민변에서는 위원장이신 김병주 변호사님, 한양대의 박찬운 교수님과 제가, 그리고 다른 시민단체들 중에서는 참여연대에서 전은경 팀장님,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명숙씨, 국제민주연대에서 변연식 대표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조시현 교수님, 안선미씨 등이 각 이번 UPR의 NGO 참가단으로 참여하였다.

출국 전 준비사항

제네바로 떠나기 전 이미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부보고서에 대해 민변, 참여연대, 인권운동 사랑방 등에서 반박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DCHR)에 제출한 상태였고, 필자는 보고서에서 언급된 인권이슈 중 현지 로비과정에서 각국 외교관들에게 질문 혹은 권고를 요청할 주요 쟁점을 정리하여 대정부 질문안과 권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러 NGO 단체들이 모여서 위와 같이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대정부 질문안과 권고안을 토의하고, 정리한 내용을 다시 회람한 후에 다시 토의하는 방식으로 수차례 내용을 정리한 후, 영어로 번역하여 각국 제네바 주재 외교관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시청각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쪽방사진, 차벽사진 등 외국인이 사진 없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자료도 준비하였다.

제네바에 도착해서 이동하기

이동화 간사님이 카타르 항공의 항공권과 제네바 꼬르나뱅(Cornavin) 역 근처의 리도(Lido)호텔의 숙박 예약을 처리해 주었다. 카타르 항공 경로는 인천공항에서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한번 거쳐서 카타르 도하공항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제네바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었는데, 19시간을 넘는 것으로 기억되는 여행시간도 길었지만, 밤낮이 바뀌는 그 시간 안에 다섯 번의 기내식을 먹느라 역시 고생했던 기억이 난다.

제네바 공항은 기차역과 연결이 되어 있고, 바로 다음 기차역이 꼬르나뱅에 있는 제네바 역이다. 공항에서 제네바역(꼬르나뱅)까지는 기차, 택시,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데, 기차가 3 스위스프랑(CHF)으로 가장 저렴해 보였다.

제네바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트램(지상전철), 버스 등을 탈 수 있는 1일 단위의 패스를 구입해야 하는데, 제네바에

서는 티켓을 매번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소지만 하고 있다가 가끔씩 제출을 요구받을 때 보여주기만 하면 되고, 대부분의 숙박시설에서 숙박기간 전일(숙박일 및 체크아웃일 포함)에 해당하는 패스를 제공해 주므로 일단 호텔에 도착하여 체크인한 후 패스를 받으면 제네바 시내에서 버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좋았다.

숙소 선택하기

제네바는 버스노선이 아주 촘촘하게 짜여 있고, 패스를 이용하여

무한 환승이 가능해서 꼬르나뱅 역 근처의 호텔에서 머무르면 제네바 곳곳을 방문하기가 아주 편하다. 제네바가 큰 도시가 아니어서 역 근처에 있다는 호텔들은 정말 역에서 가깝다는 점과, 조금만 걸어나가면 아름다운 레만호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꼬르나뱅 역 근처의 호텔에서 머무를 때 누릴 수 있는 큰 장점이다.

또 제네바가 프랑스에 접해있어, 프랑스 국경을 넘어가서 숙소를 잡으면 상당히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니 버스를 약간 더 타는 수고만 감수한다면(게다가 UN 건물은 꼬르나뱅에서 프랑스로 가는 방향에 있다) 바로 UN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타호텔이나 Citadines 호텔은 이용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돌아오기 전날 Citadines 호텔에 머물렀는데, 스타호텔보다 국경에서 먼 편이긴 했지만, 조리도구도 갖춰져 있고 뜰도 있어 일반 호텔보다 훨씬 쾌적하게 설 수 있었다. 공항이나 제네바 역에서 택시를 타면 국경에서 제지하는 경우도 별로 없어 편하게 국경을 넘어 프랑스 쪽 호텔에 도착할 수 있다.

유엔 출입하기

제네바 역(꼬르나뱅)이 교통의 중심지여서 웬만한 버스, 트램 등은 다 꼬르나뱅에서 타면 되고, 유엔으로 가는 버스 역시 꼬르나뱅 역에서 탈 수 있다. 다만, 유엔으로 들어가려면 정문을 통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문 왼쪽으로 10분 이상 걸어가야 나오는 후문으로 입장에 출입증을 받아야 하므로, 정문에서 내리기 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후문까지 가는 버스를 타는 편이 나을 것 같다.

UN 회의장 건물 등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민변 등 UN에서 출입증을 지급하는 협의지위 인정단체의 명의로 출입증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매년 그 단체의 대표를 신고하는 절차 등을 지켜야 한다.

위와 같은 각종 신청서는 팩스로만 수령하므로 팩스가 잘 도달했는지, 협의지위인정단체 대표자 명의 신고 절차(일주일 정도 걸리므로 미리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가 잘 진행되었는지 출국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UPR 참가단 중 일부 단체의 출입증을 민변의 이름으로 신청하기로 하였고, 연초에 민변에서 협의지위인정단체 대표자 명의 신고 서류를 팩스로 보냈는데도, 그 접수가 누락되어 있어, 민변의 이름으로 출입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다행히 제네바 현지 아카시아에서 근무 중인 김기연 국장님의 도움으로 출입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음 UPR 참가시에도 똑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 점은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UN 시설 이용하기

UN 내부에는 여행사, 서점, 기념품 판매점 등이 있고, 지하 식당도 꽤 괜찮은 편이다. 또 회의장 근처에는 NGO 참가단을 위해 여러 대의 컴퓨터와 프린터 시설, 여러 개의 테이블과 의자들이 있고 무선 인터넷을 지원하여 노트북으로도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

복사실은 찾기가 쉽지 않으므로 미리 위치를 확인을 해 두는 편이 안전할 것이고, 프린터 용지도 일부 무료로 제공되나



사용자가 많아 금방 떨어질 수 있고, 복사실도 용지를 그다지 많이 비치해 두고 있지 않으므로 A4 용지 등도 미리 확보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UPR 절차에 참여하기

UPR 워킹그룹 세션이 열리는 회의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매번 소지품을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준비한 요약자료를 들고 가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양해를 구하고 잠깐 밖의 테이블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낫다. 물론, 상대방이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준비해 간 자료를 건네주고 특정 이슈에 대한 설명 부분을 찾아 주고, 그 이슈에 대한 질문이나 권고안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로비를 진행하면 된다.

회의장 안의 각국 명칭이 불어로만 적혀 있어 미리 접촉하고 싶은 나라가 있으면 불어로 그 이름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이슈에 대한 각 국가의 입장, 관심정도 등을 알아두고 로비방향을 정해둘 필요도 있다.

우리 참가단은 집회시위의 자유나 의료권 등에 대해서는 프랑스 외교관을 만나고, 차별금지법 법안에서 성적지향 등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멕시코 등 남미 국가들을 접촉해 보고, 국내의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들의 본국을 접촉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기존 다른 국가들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특정 이슈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을 정리한 후(이 부분은 김기연 국장님이 큰 도움을 주셨다) 필자, 참여연대의 전팀장님, 인권운동 사랑방의 명숙씨 등이 각각 회의장 안에서 혹은 함께 회의장 밖 테이블에서 정리해온 질문안, 권고안을 토대로, 준비해온 사진자료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국내 인권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우리들이 접촉한 외교관들이 모두 요청받은 질문을 해주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외교관들이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 내용이나, 미리 이메일로 보내었던 질문안, 권고안 등을 생각보다는 잘 이해하고 있던 것으로 느꼈다. 다음의 UPR 절차에서도 미리 이메일로 주요 쟁점을 보내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도, 유럽국가들 사이에 초미의 관심이었던 사형제 폐지 등은 반박보고서에 서만 언급하고 특별히 로비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여러 국가들이 사형제 폐지에 대한 권고안을 내주었다.

한편, 반박보고서에서 크게 언급되지 않은 재소자 인권문제, 아동인권 문제 등에 대한 권고안도 있었으며, 북한은 물론 미국과 영국까지 국가보안법의 폐지 혹은 개정에 대한 권고를 한 사실은 UPR 권고안에 대한 국내 기사에서 헤드라인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캐나다 외교관의 경우, 한국에 대한 심의가 오후에 있는 상황에, 점심시간 이후 잠깐 만나서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주민등록번호를 범죄기록, 의료기록, 금융기록 등에서 항상 사용하여 개인에 대한 정보가 집적되고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직접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성년이 되기 이전에 모두 열손가락 지문을 찍고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며,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더니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주민등록제도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주민등록제도 자체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이고 외국인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었는데, 의외로 캐나다 외교관이 맥락을 잘 이해해 주어 우리 참가단도 심의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로비 과정에는 현지 유학생인 김혜림씨가 통역 등을 도와주셨다. 다만, 미리 통역을 해주시던 분이 갑자기 못하시게 되어 급하게 김혜림씨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김혜림씨는 학생신분이어서 수업 등의 관계로 계속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상당부분은 필자, 전팀장님, 명숙씨 셋이서 직접 외국인 외교관을 상대로 내용을 전달하게 되었다.

UPR 자체가 인권상황의 전반적인 이슈를 다루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용어로도 충분히 의사전달이 가능하긴 하지만, 전담통역자를 미리 구할 수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일본도 같은 2차 세션에서 며칠 차이로 심의를 받을 예정이어서 일본의 NGO들 역시 로비를 하고 있었는데, 변호사들의 모임도 있었고, 군위안부 문제로 혼자서 오신 분도 있었다. 일본 변호사 모임은 따로 점심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작은 회의실에서 영상자료 및 인쇄물을 나눠주면서 특정 이슈(선거법 조작 사건)에 대하여 영상도 상영하고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이벤트를 갖기도 하였다. 향후 UPR 참여시 위와 같은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심의 내용에 대한 보도 자료 작성

한국에 대한 심의가 끝난 후, 우리 참가자들은 다시 모여 심의내용, 각국의 질문, 권고안 등을 정리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이를, 길게는 사흘간에 걸친 로비 및 모니터링으로 모두들 지친 상황이었지만, 보도자료 방향을 잡고, 문구를 다듬고 수정하다보니 어느덧 다음날 새벽이 되었다.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

각국 외교관들이 한국의 인권이슈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권고안을 내었긴 하지만, UN의 구조적인 특성상 그 권고안이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국내에 많이 알려지기도 쉽지 않아 UPR 제도의 실효성에는 아쉬움을 표시하는 견해가 많았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틀을 이용하는 것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고, 의외로 각국의 외교관들이 NGO의 문제제기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기도 하는 모습이었으므로 적극적으로 국내 인권이슈를 알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워킹그룹 무렵부터 시작된 촛불집회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촛불집회에 대한 진압과정에서 물대포가 사용되고, '차벽'에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컨테이너벽이 등장하는가 하면, 경찰은 대규모·무차별적으로 촛불집회 참가자를 연행하고 있고 경찰의 물대포, 방패 등의 사용으로 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국제적으로도 큰 인권이슈여서, 우리 참가단은 한국에 대한 UPR 최종보고서 채택이전에 주어지는 NGO 발언기회에 다른 이슈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발언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서 제네바로 보냈다.

우리가 6월 12일 오전에 개최된 본회의 격인 8차 회의에 직접 참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마침 다른 국제회의로 제네바에 가 있는 민주노동총 관계자분들에게 민변 명의로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포럼아시아와 참여연대 명의로 한국의 집회시위의 자유 문제와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발언하도록 부탁드린 후, 8차 회의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첫 UPR 참여절차를 마무리하였다.

UPR이 국내의 인권상황을 제고할 수 있고, 인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의미있는 절차로 점점 발전해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관을 마치며, 참가단 및 준비절차에 관여한 황필규 변호사님, 이동화 간사님, 민가협외 한지연씨 등과 김기연 국장님, 김혜림씨, 성하은씨 등 현지에서 큰 도움을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UPR Universal Periodic Review이란?

UPR은 2006. 유엔인권위원회가 유엔총회 직속기구인 인권이사회로 격상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192개 유엔회원국 각국의 인권상황을 살피는 제도이다.

UPR은 실무그룹 세션(Working Group Session)을 통해 ① 검토대상국 정부가 제출하는 보고서, ②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Office of High Commissioner of Human Rights)이 당사국에 대한 조약기구의 권고사항과 유엔공식문건을 취합해 정리한 문서, ③ OHCHR이 국가인권기구, NGO 등이 제출한 보고서를 요약한 문서 등을 검토하고 이를 정리하는 절차와,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각국에 대한 UPR 워킹그룹 보고서(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를 채택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며, 1년에 2회의 세션을 갖고, 1회의 세션에 16개국의 인권상황을 검토하므로, 4년(= 192 ÷ (2×16))에 한 번씩 각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NGO는 ① 정해진 기한내에 OHCHR에 정부보고서에 대한 NGO의 반박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② 실무그룹 세션에서 발언권이 없으나 세션에 참석할 수 있어, 각국의 외교관들에게 정부보고서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공하거나 인권상황에 대한 질문을 유도할 수 있으며, ③ 이사회 전체회의에서 UPR 최종검토결과 채택 직전에 미리 발언기회를 신청하여 각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다.

한국에 대한 UPR 심사 절차 및 NGO들의 참여

한국에 대한 워킹그룹 세션은 2008. 5. 7.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에서 총 8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① 각국 외교관들을 만나 한국정부에 대하여 특정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질문해주고 권고안을 내어달라고 설득하는 작업, ② 같은 세션에서 질문을 받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세션을 모니터해서 각국 외교관들의 인권 관심이슈들을 파악하는 작업, ③ 한국정부에 대한 심의 과정 모니터링, ④ 보도자료 작성 등의 작업을 마쳤다.

한국에 대한 인권 이사회 전체회의에서의 보고서는 2008. 6. 12.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8차 세션에서 채택되었고, 이 과정에서는 한국 정부 대표, 미리 발언을 신청한 몇 개 국가의 대표, NGO들이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발언하였다.

글 장영석 회원



부산지부

가. 촛불문화제 접견 당직제 운영

2007년 6월 3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촛불문화제 등 집회 관련 연행자에 대한 접견을 대비하여 매일 2명씩 접견 당직제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나. 대구지부와의 등반대회

2008. 6. 21.(토) 대구지부 회원들과 대구 팔공산에서 등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등반대회는 대전에서 개최되었던 지부 대표자 회의에서 두 지부 집행부간 의논이 되었고, 민변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재차 의논을 하여 전격적으로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부산지부에서 8명이 참석하였고, 대구지부에서도 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대구지부 회원분들이 따뜻하게 반겨주셔서 성황리에 팔공산 등산을 마치고 식사까지 하고 내려왔습니다.

등반 당일 비가 상당히 왔음에도 불구하고 팔공산 등반을 완수하여 두 지부 회원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을에는 부산지부에서 대구지부회원들을 모시고 등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향후 지부간 등반대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 2008. 7. 7. 부산변호사회 60주년 기념식에서 부산지부 회원인 강동규 회장과 권혁근 회원이 각 공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전충청지부

1.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은 대전·충청지역에서도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전지역에서만 55차례가 개최된 촛불문화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 수는 7만 여명을 넘어섰고, 특히 지난 6월 10일에는 5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시민들의 함성으로 대전역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촛불을 들고 함께하는 우리 지부 회원들의 모습도 바로 그 촛불시민이었습니다.

6월 16일에는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홍보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위하여 대전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 방문하였는데, 이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대전시민대책회의' 차원에서 정운천 전 장관의 해명을 요구하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겠다고 항의에 참석한 시민대책회의 60여명 중 33명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 지부는 회원 전원인 법률지원단에 참여기로 하고, 그간 촛불문화제에 가장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한 문현웅 회원(연수원 34기)을 책임변호사로 지정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7월 9일 충북 증평 소재 특전사 김 모 중위가 광우병 위험 쇠고기 반대 촛불문화제와 관련하여 부대 내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대학 후배와 전화통화를 한 후 3일 만에 기무사에서 자택 압수수색을 하고, 대학시절 동아리 활동(경희대 단과대 부학생회장)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 최석진 회원(연수원 29기)께서 변호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반대 투쟁으로 인한 대전지역 활동가들이 구속된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갑니다. 재판시 송기호 회원께서 장장 1시간에 걸쳐 한미FTA의 문제점에 대하여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는데, 송기호 회원의 증언을 들은 교도관들이 그 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배우게 되었고 증언을 기회로 한미FTA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고 하는 뒷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한미FTA 반대투쟁을 원인으로 충청남도청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장동환 사무처장께서 수년째 수고하고 계십니다.

2. 우리 지부 이상호 회원(연수원 28기)께서는 건설사들이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공제회 가입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가입절차를 이행하라, 회사는 근로자들에 대한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퇴직공제 증지를 구입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수첩에 소인하여 쥐라'는 취지의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3년여의 기간 동안 재판을 진행하여 왔는데, 대법원은 회사가 공제회 가입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회사에 대한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파기 환송하였고, 2008. 7. 18. 대전고등법원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상호 회원은 건설근로자들의 퇴직 이후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관련법률로 건설사의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공제회 가입 의무제도를 둔 것인데 현실은 건설사들은 퇴직공제회에 가입 하지 않고,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며 법률이 근로자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표현합니다.

안타깝지만 법원마저도 근로자들에게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그렇다면 불안정한 현행 법률을 보완 입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건설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이후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2004년 경부터 약30여명의 현장 노동자들은 민주노동당에 가입을 하여 한국타이어의 노동탄압 근절 및 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회사는 민주노동당 한국타이어 분회원들에 대하여 징계 등의 탄압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위 분회원들은 2006. 12. 사망근로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알게 되었고, 이 때부터 자체적으로 추적하여 2006. 5. 부터 2007. 9.까지 13명의 근로자가 사망(심장질환 7명, 암5명, 자살명)하였고, 그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로, 유해물질 노출 때문이라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2007. 8. 유가족대책위와 대전시민대책위를 결성하여 집단사망원인의 진상규명, 재해보상,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의 요구를 내건 투쟁이 시작되었고, 우리 지부도 법률지원단으로 대전시민대책위에 참여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 대책위의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사건에 대한 역학조사요구의 결과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역학조사를 진행하여 지난 2월 20일에는 집단사망원인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장시간 근로 등의 과로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1차로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유가족 등 종족과 관련하여서는 진상규명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고, 회사 측은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책임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문]

한국타이어 노동집단사망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대책 촉구한다

지난 2월 20일 역학조사 결과 발표로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은 현장의 노동조건 때문임이 명확해졌다. 그런데 노동자 집단 사망의 원인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이도 없고, 미봉책에 불과한 사후 재발 방지 대책만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족들의 억울하고 아픈 마음이 달랠 수 없다. 그리고 한국타이어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무엇보다 먼저 노동자 집단 사망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이번 죽음은 자연사도 아니고 사고사도 아니다. 이번 죽음은 명백한 살인이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은 경영으로 노동자를 죽인 회사의 최고경영자에게 이번 죽음의 책임이 있다. 죄가 있는 곳에 처벌이 있어야 한다. 이는 사회정의의 위해서도 필요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히 기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살인사건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검찰은 한국타이어 경영진을 구속 수사하여야 한다.

정부의 책임도 엄하게 물어야 한다. 1년여 기간 동안 노동자가 집단으로 죽어가는 데도 노동부는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뒤에야 특별근로감독과 더불어 역학조사를 했을 뿐이다. 노동부가 좀 더 빨리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죽지 않을 수 있었다. 노동부의 지도, 감독 소홀 등 노동 행정 부재가 이러한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대전지방 노동청장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 한다.

책임자 처벌 및 문책과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이 근본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타이어 사측은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간의 비민주적 경영 행위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지금부터라도 민주적 노사 관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측은 이 사건의 원인을 단순히 회사내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부재로 돌려서는 안 된다. 건강관리가 부실했던 것도 한 원인이지만, 더 큰 원인은 노동자 건강을 파괴하는 경영 행위와 노동조건이다. 사측은 이러한 근본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 역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몇 가지 제안을 한 것과 특별근로감독에 따른 개선 조치를 명령한 것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사건은 노동탄압과 임권침해를 일삼는 경영으로 인한 것이니만큼, 한국타이어가 민주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도, 감독해야 한다. 더불어 이번엔 문제가 되었던 심장질환뿐 아니라, 암, 유기용제 중독,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에 대한 조사 요구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학조사 결과 노동조건과 사망과의 집단적 관련성이 인정된 만큼, 근로복지공단에 계류되어 있는 개별 사례에 대한 산재보상 여부 판단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것이 그간 억울하고 아픈 마음을 보듬어 안은 채 어렵게 노력해 온 유족들에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일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근로복지공단은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한국타이어 노동자 개별 사례에 대한 산재보상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라.
2. 한국타이어 사측은 사망한 노동자 유가족들에게 공개적으로 정중히 사과하라.
3. 한국타이어 사측은 노동자 집단사망의 원인이 된, 비민주적이고 인권침해를 일삼는 노동자 탄압 경영을 즉각 개선하라.
4. 검찰은 한국타이어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라.
5. 대전지방노동청장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6. 정부는 한국타이어의 비민주적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의 의무를 다하라.
7. 정부는 심장질환뿐 아니라 암, 유기용제 중독,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한국타이어 노동자 건강 문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라.

2008. 3. 6
참여단체 연명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교과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광주노동보건연대,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산업보건연구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생태지평연구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원진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인천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참여연대, 충청지역노동건강협의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환경정의, 한국타이어문제 해결을 위한 대전총남대책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총남지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전총청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전총청지부, 충청지역노동자건강협의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총남녹색연합, 대전경찰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YMCA,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여민회, (사)대전총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총남민주연론시민연합, 대전총남생명의 숲, 시민참여연구소, 민들레의료생협, 민주노동당대전광역시당)

부산지부

1.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대구 집회에 인권침해 감시단 활동

6월 10일, 7월 5일 집중 일정에 회원 변호사 집단 참석.(총 10인 참석)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대구경북 대책회의와 함께 인권침해 감시단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로 인한 법률구조활동.

대구경북 대책회의에 가입한 단체, 활동가에 대한 수사와 대구지역에서 사이버 활동을 했던 네티즌에 대한 경찰의 내사 및 수사에 민변 대구지부에서 법률적 조언과 자문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주성영 의원 사무실 점거농성 관련 (2008년 7월 10일)

- 대학생 5명, 노동자 2명 점거농성 돌입. 2시간 후 대구 동부경찰서 강제연행, 연행과정에서 장애인 2명 부상. 연행항의자 2명도 함께 연행.
- 송해익, 구인호 변호사 연행자 접근 (9명 접근).
- 저녁 9시 30분 연행자 전원석방 및 진압 과정에서 경찰서 측의 사과와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부담 약속을 받았음.

2) 촛불집회 관련 사이버 수사

- 대학생 및 주부 등 촛불집회 관련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했던 대구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세 차례의 수사과정에 피내사자 자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3. 정재형 회원 유학으로 휴업과

박선아 회원 제주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교원 발령으로 인해 특별회원으로 회원 지위 변경이 있었습니다.



민변 20주년, 행복충전소 1년



如是我聞!

구로공단 2천여 근로자가 1985. 6. 24. 동맹파업을 시작해 5일 만에 진압된 끝에, 43명이 구속되고, 370명이 구류를 살았으며, 700여명이 해고된 사건을 역사는 '85년 구로동맹파업 사건' 이라고 기록한다. 정의실천법조인회(정법회)는 위 구로사태의 변론을 계기로 조직되었다.

1988. 2.에는 야권분열의 자책과 정권교체 실패의 패배주의 극복을 위해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던 젊은 변호사들이 청년변호사협의회(청변)를 조직하였다. 청변은 기존 정법회와의 관계 정립에 관해 독자 조직 강화, 동화적 통합 등 양론이 갈려 치열한 토론 끝에 후자를 택하였고, 4. 30. 신록사 1박 2일 MT에서 빙 둘러앉아 각자의 과거와 미래를 고해성사하면서 진한 동지애를 확인하였다.

결국 정법회의 명망성과 청변의 순수성이 합쳐 결성된

조직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곧 민변이다. 당시 명칭에 관하여 '민주변호사협의회'와 민변이 복수 제출되었으나, 표결 결과 故 조영래 변호사의 민변이 채택되었다. 때는 1988. 5. 28.이다.

민변의 창립은 70년대 개인적 성향에 따라 인권변론 활동을 하였던 제1세대 인권 변호사(유현석, 이돈명, 한승현, 조준희, 황인철, 홍성우 등), 80년대 5공 탄압의 반작용으로 인권변론 활동을 하였던 제2세대 인권 변호사(조영래, 이상수, 박원순, 박성민, 안영도 등), 그리고 사법시험 300명, 13기 이후의 젊은 제3세대 변호사의 통합과 융섭을 뜻한다.

주지하다시피 그 동안 민변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권인숙 부천시 성고문 사건과 같은 시국사건은 물론, 김포 공항 소음 피해 소송, 호주제 위한 소송, 불심검문 손배소송, 군산 집창촌 화재피해 국가배상소송, 미군 장갑차 여중생 희생사건, 송두울 교수 사건, 한미 FTA 협정 반대집회 지킴이 등 공익 및 민생 사안에도 관여하여 왔다.

한편 우리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박승욱, 민경한, 이건영, 정채웅, 임선숙, 이상갑, 임태호 변호사 등이 1999. 9. 7. 민변 광주전남지부를 결성하였고, 9년째에 접어 든 현재 16명의 회원(김덕은, 김도형, 김상훈, 김용채, 김정호, 김현, 나양명, 박승욱, 이건영, 이병주, 이상갑, 이철원, 임선숙, 임태호, 장경진, 정채웅)이 활동하고 있다.

如是吾等同!

受諾

백승헌 민변 회장은 작년 겨울, 전국 7개 지부를 순회하며 당시로서는 내년인 올 5월에 있을 민변 20주년 기념행사를 홍보하면서, 20년사 백서 등 발간을 위한 10억원 목표 기금 조달 차원의 혹독한 가렴주구(苛斂誅求)를 자행(?)하였다. 우리는 본부 회장단의 비장함과 당시 계획한정식 술자리의 흥에 자아도취되어, 과분한 기금 출연과 무모한 기념식 공연 한 꼭지를 약속하고 말았다.

準備

당장 2007. 12. 월례회의에서 공연 종목에 관해 통기타 합주와 북 공연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인 끝에, 근소한 차이로 통기타 합주설이 채택되었다. 우리는 이번 공연 준비를 계기로 통기타를 1년 혹은 2년 정도 배우면서 딱딱한 일상의 일탈과 함께 행복지수를 높여 보기로 하였다. 결의 장소가 복숭아 정원이 아니라 식당 낙지한마당이었으니, 도원결의(桃園結義)가 아니라 식당결의(食堂結義) 정도나 될까. 우리는 모임의 이름을 행복충전소(happiness station)로 짓고, 필자가 그 영업소장으로 임명되었다.

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기타 선생님 후보 3분을 섭외한 후 오디션을 거쳤다. 통상 후보자가 오디션 장소에 찾아와 자신의 기량을 간절한 마음으로 뽐내는 것이겠지만, 필자는 직접 선생님들 각자를 찾아가 강사료, 출장 여부 등을 상의하고, 경력 등을 물었을 뿐, 정작 기타 연주를 청해 보지는 못했다. 따라서 그 3분은 자신이 오디션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이 필자를 오디션하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이런 '쌍방' 오디션을 거쳐 영입된 분이 현재 라이브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최모 선생님이다.

練習

2008. 1. 14. 첫 연습이 시작되었다. 첫 연습곡은 3/4박자 왈츠곡 웅달쌔이었다. 민변 창립 20주년 기념식 공연을 위한 첫 選曲치고는 너무 소박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옴기 8장 7절의 말씀을 위안 삼았다. Your beginnings will seem humble, so prosperous will your future be(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1시간 연습 끝에 찾아 온 왼쪽 각 손가락의 통증은 심하였지만, 모두들 새로운 도전에 신나 했고, 돌아올 것을 예정한 일탈에 행복해했다.

그러나 오심을 바라보는 나이에 기타를 연주하게 되었다면서 넉넉한 웃음을 짓는 이견영 변호사는 행복충전소 모임 소출의 열의를 보여 주셨고, 음악도 학구적으로 접근하셨던 정채웅 변호사는 너무 연습을 과하게 한 나머지 오른쪽 손톱이 뽑힐 위기에 처하는 무식함을 보여 주었다. 물론 임선숙 변호사 같은 경우, 결석이 너무 잦은 나머지 기타 합주에 끼지 못하고, 에그 셰이크(egg shake)를 흔들어야 하는 굴욕을 당하셨다. 그러나 임선숙 변호사는 그 청아한 여성 보컬로서 한낱 기타의 합주가 따라 올 수 없는 큰 기여를 했다고 본다. 이상갑 변호사는 평소 성품과 같이 결석과 출석을 적절히 배합한 절묘한 균형감각으로 연습에 임하셨고, 임태호 변호사는 기타 연주보다 합창 때 목소리를 높이는 한국인의 흥으로 분위기를 이끄셨으며, 김현 변호사는 서서 하면 품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독 혼자서 앉아서 연주하는 독심을 보여 주었다.

더구나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지부는 애초 공연 약속을 하지 않았거나, 공연 준비를 취소한 결과, 지부에서는 광주 1곳만 공연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뒤늦게 듣고 우리의 배신감과 부담감은 배가되었다. 우리는 단기 속성 과정으로 전환했다. 5월 광주를 비유하는 '바위섬'과 젊음과 사랑을 상징하는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두 곡을 본부에 보고한 후, 우리는 만나면 위 두 곡만 연습했다. 5월 중순부터는 연습량을 매주 3회로 올려 맹렬히 연습하였고, 5. 26.과 28.에는 본부가 내려 준 행사 시놉시스(synopsis)에 따라 리허설까지 마쳤다. 우리는 마지막 리허설 날 짜장면과 짬뽕을 시켜 먹으며 결전의 의지를 다졌다. 이제 남은 것은 5. 30. 19:00 출격만 남았다. 장소는 종로 수운회관.



연습장소는 애초 변협 6층 사무실을 사용코자 했으나, 월요일에 부정기적 임대 수요가 있을 뿐 아니라, 동호회에 등록되지도 않은 7인의 소수에게 일주일에 1회씩 정기적인 임대는 불가하다는 사무국의 연락을 받고, 부득이 배고픈 예술가에게 딱 어울리는 좁고 비루한 민변 사무실을 사용하기로 했다. 우리는 선생님 추천으로 33만원짜리 기타를 27만원에 일괄 구입하였다. 이로써 모든 준비는 갖추어진 셈이다.

매주 1회 진도는 많은 곡을 진행시켰다. 슬로우락(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슬로우고고(바위섬), 칼립소(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스윙(연가,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등. 문제는 진도와 실력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우리가 합주하는 왈츠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마시' 맑고 영롱한 소리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다. 우리의 슬로우락은 '정말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랑을 연주해 주는 것이었다.

5월 민변 공연과 별도로 행복충전소는 그 만의 長期 목표가 있었지만, 5월에 접어들자 우리는 초조해졌다. '아마 추어리즘'이 용인되는 공연이었지만, 어찌되었든 3~4백 명을 앞에 둔 '공연'인 이상, 우리의 용감함과 무모함이 후회되기 시작했다.

人權展示會 그리고 公演!

필자는 최승재 간사와 함께 선발대로서 17:00경 수운회관에 도착했다. 본부에서 리허설에 참가하라는 전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경한 변호사가 전화를 주셨다.

근처 모란갤러리에서 민변이 개최하는 '사람이 하늘입니다'란 주제의 인권전시회에서 만나자는 것이다. 그 곳에서 약 1년 반만에 민변호사를 만나 뵙고, 함께 신학철의 '모내기', 박불똥의 '나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부끄럽습니다' 등 그림을 감상하였다. 인권전시회는 민변 후원 작가 또는 소장자의 기증품을 판매하였는데, 아직 팔리지 않은 신영복 선생의 '여럿이 함께'란 글이 관심은 끌었지만 너무 고가라서 마음속에만 새겨 두고 발길을 돌렸다.

18:00경 수운회관에 돌아와 집행부 리허설에 참여자 곧 후발대가 도착했다. 공연은 사물놀이, 중창단, 통기타합주, 밴드 순으로 준비되었다. 그런데 사물놀이팀의 주축인 팽과리와 북을 필자의 대학 동기들이 맡고 있었다.

수운회관은 최소한 공연팀에게는 최악의 장소였다. 공연장을 바라보고 섰을 때, 공연장 뒤에는 왼쪽에서 들어가 오른쪽으로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있었다. 4개 공연팀은 위 공연장 뒷 통로에 모두 감금되어, 차례가 되면 공연장 왼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물놀이팀, 중창단팀, 우리 팀, 밴드팀이 모두 공연장 뒤에 감금된 채 호명을 기다리는 식이었다.

우리는 최후의 순간까지 연습을 하려 했으나, 주최자가 우리 연습 소리가 공연장에 들린다고 타박을 해서, 우리는 소리를 죽여가면서 눈빛으로 연습을 계속하였다. 그래서 예술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고 했던가.

바위섬이 끝나고 필자가 멘트할 기회가 있었다. 관중들은 필자가 부탁한 첫째, 박수와 환호로써 우리의 불협화음이 도드라지지 않게 할 것, 둘째 준비된 곡이 없으니 결코 절대 앙코르를 부르지 말 것의 부탁을 모두 잘 따라 주어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 날 기념식의 백미는 지난 20년 동안 활동하여 아직 생존해 계신 민변 가족들에 대한 캐리커처 전달식이었다. 이돈명, 한승헌, 고영구, 조준희, 최영도, 홍성우, 최병모, 박성민, 박용일, 박원순, 김형태, 안영도, 박인제, 유남영, 유종현, 이경우, 이석태, 조용환, 박연철, 백승헌, 김갑배, 김선수, 박주현, 이상중, 정미화, 천정배, 이원영 변호사님과 정은경 간사님 총 28명이 호명될 때, 존경심이 절로 우려나왔다.

公演 後記

공연이 끝난 지 벌써 두 달째를 향해 간다. 행복총전소는 장기 목표를 위해 계속 가동되고 있다. 이제 컨트리(아름다운 사람), 아르페지오 주법까지 나갔다. 물론 진도와 실력이 별개라는 부작용은 아직도 여전하다. 그러나 우리는 올 광주지방변호사회 송년회 공연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물론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우리 행복총전소에 게 위와 같은 공연을 부탁한 바 없고, 아예 행복총전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 이 기회에 말씀드리건대, 행복총전소는 (적당히 pay만 맞다면) 변협 송년회 공연에 나갈 용의가 충만함을 알려 드린다.



그들은 심하게 말해 4년 내내 팽과리와 북으로 문선대 역할을 한 자들이다. 또 듣자하니 밴드팀은 특별히 연습할 필요도 없는 수준급 연주자들이 모였다고 한다. 중창단팀은 한창 촛불집회에 동원되어 공연을 하는 팀이라는 것이다.


당시 필자의 심정은, 마치 새까만 촛놈이 육상빌딩 앞에 발가벗겨 버려져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러나 나머지 우리 팀은 필자와는 달리 씩씩해 보였다. 필자가 보기엔 그것은 자만심에 가까운 자신감이었지만, 그 낙관주의가 필자에게 큰 위안이었다.

이와 같은 배치 때문에 사실 우리 팀은 사물놀이팀과 중창단팀의 공연을 관람할 수 없었다. 공연장 뒤에서 그 소리를 청취하였을 뿐이다.

우리 팀 차례가 되었다. 9명이 등장하자마자 기타(김상훈, 김현, 이건영, 이상갑, 임태호)와 에그 셰이크(임선숙, 박승옥, 김정호, 최승재)로 '바위섬'을 불렀다. 각광(footlights) 속에서, 무대를 주시하는 어둠 속의 관중을 다시 관람하는 느낌, 관중이 우리의 불협화음에도 즐거워하는 것을 함께 호흡하는 느낌, 그것은 환상적이었다.

무대에 난입한 흥세화씨의 막춤 등이 끝난 후, 한승헌 변호사가 '여기 서 있는 우리는 사서 고생한 자들이다, 우리가 사서 고생해서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된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는 사서 고생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 이어질 때 분위기는 자못 숙연해졌다. 우리는 뒤풀이에서 시간에 쫓겨 급하게 술을 마신 후, 운전을 위해 금주해 준 김현 변호사의 희생으로 무사히 광주로 내려왔다.

혹시 여러분 중에 화요일 13:00경 광주 지산동 인근에서 검은색 기타 케이스를 들쳐 멘 무리를 보거든, 멈춰 서서 그들의 등을 두드려 보시기 바란다. 여러분은 아마도 돌아선 그들의 얼굴에서 먼저 나오는 희열감을 목격할 것이다. 필요한 분은 그 행복감을 분양 받아가도 좋다. 더욱 간절한 분은 행복총전소에 채용되어도 좋을 것이다. 채용 자격은 기타 하나와 약간의 도전정신뿐이다.

 글 김상훈 회원(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

사서고생하는사람들

촛불 정국 속에서 예년과 다른 신입회원의 증가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초반기에는 신입회원이 많이 가입하였지만 후반기로 들어서면 신입회원의 수가 몇 명 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예년과 달리 정기총회가 끝난 이후인 6월과 7월 두 달 동안에 무려 15명의 신입회원이 민변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변호사를 시작한 신참이 아니라 변호사 경력이 많게는 10년이 넘게, 적어도 2~3년이 되는 분들이 상당수 신입회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도 촛불집회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벌인 여러 민변 회원들의 값진 노력이 빚어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변 회원이 아닌 변호사들도 촛불집회에 참여한 분들이 많았는데, 변호사이다 보니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벌이는 민변 회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민변에 가입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보인 민변의 어정쩡한 태도에 실망하여 가입을 보류하고 있었다는 분도 있었고, 변호사를 시작하면서 민변에 당연히 가입한 줄로 알았는데 여태까지 가입이 안 되어 있더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준형 신입회원의 경우에는 민변 가입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아직 정식 회원이 아닌 상태에서도 민변 인권침해감시단 조끼를 입고 어느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활동하였는데, 지난 6월 26일 방패를 들고 돌진하는 폭력 경찰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일 앞에서 천천히 뒷걸음질을 치다가 경찰이 무자비하게 내려찍은 방패에 머리를 맞아 자칫 잘못되었으면 생명에도 지장이 있었을 정도로 뇌에 금이 가는 큰 부상을 입게 되는 불행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개인 변호사로 개업 중이던 이준형 회원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변호사 업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어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회원위원회에서는 이준형 회원을 도우는 모금 활동을 벌이고 있는바,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에는 지난 5월 31일 정기총회 이후에 민변에 가입한 신입회원들의 명단을 신습니다. 신입회원들은 민변에 가입하면서 마음먹은 열정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면서 성심껏 활동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존 민변 회원들 또한 신입회원들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진정한 민주사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더욱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입회원 명단

- 송봉섭 법무관 5기 법무법인 한길
- 유병일 연수원 19기 법무법인 헌암
- 김정진 연수원 28기 제일합동법률사무소
- 서동용 연수원 34기 법률사무소 오름
- 정보근 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한결
- 김경희 연수원 35기 국가인권위원회
- 김주관 연수원 35기 김주관 법률사무소
- 이준형 연수원 35기 누리합동법률사무소
- 이현규 연수원 36기 법무법인 태평양
- 김준현 연수원 37기 우리로 종합법률사무소
- 김인중 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정평
- 김호민 연수원 37기 법무법인 보나
- 이정란 연수원 37기 법무법인 바른
- 임신원 연수원 37기 임신원 법률사무소
- 정병욱 연수원 37기 법무법인 베스트



신입회원 MT

지난 7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신입회원 MT가 개최되었습니다. 14명의 신입회원과 17명의 기존회원들이 함께 한 이 자리는 서로를 알기 위한 자기소개로 시작하여 『민변백서』 1,2권을 참조하여 민변의 역사와 현황을 알아맞히기 위한 방석게임과 한승헌 변호사님의 명언인 “우리는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입니다”라는 문장으로 조합 가능한 단어를 맞추는 단어조합게임을 즐기고, 곧이어 민변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방영한 바 있는 15분 분량의 민변에 관한 DVD를 시청하며 민변의 역사를 공유하는 짠 시간도 가졌습니다.

곧이어 민변의 각 위원회별로 위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신입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위원회의 각고의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덕분에 신입회원들의 인기가 드높아진 것 같습니다. MT에서의 위원회 소개를 계기로 신입회원들이 위원회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성명] 인권침해감시 활동중이던 변호사의 무차별 연행을 규탄한다 / 2008. 6. 1.

[논평] 정부는 고시 철회와 재협상방침을 분명히 하라. / 2008. 6. 2.

[공동선언] 6월항쟁 기념식 및 6월 선언 참가 / 2008. 6. 10.

[공동선언]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해 투쟁하는 610인의 6.10선언 참가' / 2008. 6. 10.

[논평] 컨테이너로 세종로를 막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2008. 6. 10.

[공동선언] 6.15공동선언 10.4선언 실천 및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각계 인사 공동선언 / 2008. 6. 14.

[성명] 정부의 고시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 2008. 6. 25.

[성명] 정연주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한 민변 변호인단 입장 / 2008. 6. 26.

[성명] 훗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불법무도한 만행을 중단하라 / 2008. 6. 27.

[성명] 미국서 광우병위험물질발견, 고시를 즉각 폐기하라! / 2008. 6. 27.

[논평]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집시법을 엄격해석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 한다 / 2008. 7. 1.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요구는 월권이며 위헌이다 / 2008. 7. 2.

[성명] 이명박 정부는 이제 법원까지 통제하려 하는가 / 2008. 7. 4.

[성명] 중앙일보의 계속되는 민변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 / 2008. 7. 4.

[성명] 정부는 추가협상결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 / 2008. 7. 8.

[논평]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소환과 출국금지 조치는 명백한 과잉수사이며 언론탄압이다 / 2008. 7. 8.

[논평] 검찰은 PD수첩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 2008. 7. 14.

[논평]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 위장도급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 2008. 7. 14.

[논평]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민변 입장 / 2008. 7. 16.

[논평] 송두율 교수 판결환영, 국가보안법 등 폐지 필요성이 다시 확인되었다 / 2008. 7. 24.

[논평] 검찰의 훗불시위자 기소 방침에 대한 논평 / 2008. 7. 31.